

문서관리번호	A1-12
생산년도	2020. 2. 20.
보존년한	영 구

정관 및 제 규정

<2020. 2. 20. 제1차 이사회 최종 반영본>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KOREA KENNEL FEDERATION

목 차

1. 정관 및 관련 제 규정

정관	1
요금에 관한 규정	17
이사 . 감사선임 규정	22
대의원 규정	23
감사 규정	25
상벌 규정	26

2. 위원회 관계규정

위원회 운영규정	38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	42
심사위원회 규정	45
애견미용사 위원회 규정	50
핸들러 위원회 규정	55
훈련사 위원회 규정	60
종견선정 위원회 규정	65
번식감리 위원회 규정	68
견종 표준 위원회 규정	71
자문 위원회 규정	72
전람회 추진 위원회 규정	73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규정	74
인명구조견 위원회 규정	76
K-9 탐지견 위원회 규정	80
운영 위원회 규정	84
산학협력 위원회 규정	88
정책 위원회 규정	92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규정	96
대외 홍보 위원회 규정	100

3. 조직 관계규정

조직 규정	104
행사 승인 및 운영규정	128
클럽 모델 규정	131
사무처에 관한 규정	137

4. 견적등록 관계규정

견적(犬籍) 등록규정	141
견사호 등록규정	150
개체식별 등록규정	152
챔피언 규정	154

종견선정 규정	161
번식감리 규정	165

5. 전람회 관계규정

전람회 규정	169
전람회 운영 규정	183
전람회 심사위원 선임규정	186
전람회 감찰위원 규정	190

6. 자격 관련 규정 및 FCI 국제 규정

심사위원 규정	194
FCI 심사위원 규정 (국제규정)	201
FCI 도그쇼와 FCI 도그쇼 심사위원 규정 부록 (국제규정)	215
FCI 도그쇼 규정 (국제규정)	216
스튜어드 규정	237
훈련사 규정	240
훈련 심사위원 규정	248
애견미용사 규정	254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규정	267
핸들러 규정	272
핸들러 심사위원 규정	281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	285
WUSV 심사위원 규정	311

7. 훈련시험 관계규정

훈련시험 규정	315
훈련 경기대회 규정	321
훈련시험과목 . 훈련경기과목에 관한 규정	328
어질리티 경기대회 규정	349
※ IGP 규정, BH 규정, FCI 국제 오비디언스 규정, 어질리티 규정 등은 FCI 국제 규정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함.	

8. 기타 관계규정

지정기관(업소) 설치규정	358
훈련소 인정규정	360
산학협력 규정	363
보조비 지원 규정	368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정관

1956. 4. 15 제정
1975. 7. 15 개정
1978. 8. 6 개정
1982. 4. 16 개정
1986. 8. 5 개정
2001. 12. 1 개정
2003. 2. 8 개정
2005. 11. 5 개정
2006. 12. 8 개정
2009. 7. 1 개정
2011. 3. 17 개정
2019. 1. 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 명칭을 KOREA KENNEL FEDERATION (약칭 KKF)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맹은 개의 순수혈통 보존 및 보급, 올바른 애견사육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애견문화 창달, 동물보호정신의 양양 및 애견에 관한 학술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역) 본 연맹의 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연맹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2길 19(용두동)에 둔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전 견종의 혈통 고정 및 보급사업.

1. 개의 육성과 그 혈통 보호를 위한 등록 및 증명에 관한 사항.
2. 국제 표준에 맞는 우수견종의 번식장려를 위한 각종 전람회 개최.

3. 토종견의 발굴과 분포 조사 및 국제 공인에 관한 사항.
 4. 국제 견사호 등록으로 우수 애견 번식자 육성 보호.
 5. 검사사업 (종견, 훈련시험, 기타)
 6. 세계애견단체와의 상호 혈통서 인증 및 교류.
- ② 개를 매개로 한 사회공헌 및 공익활동.
1. 맹인의 활동을 위한 안내견 육성보급.
 2.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 훈련보급.
 3. 장애인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치료 도우미견 육성보급.
 4. 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 국가안보, 범죄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인명구조견, 군용견, 경찰견, 경비견, 탐지견의 육성보급.
 5. 유기견의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홍보.
 6. 애견에 관한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업(광견병 및 각종 질병예방 지도)
- ③ 동물보호 정신의 양양 및 애견문화 창달.
1. 올바른 애견사업의 지도 및 홍보.
 2. 애견 에티켓 홍보 등 동물애호정신을 양양시키는 사업.
 3. 애견 전람회, 애견경기대회, 강습회 개최 등을 통한 애견문화 창달.
 4. 애견관련 잡지, 홍보물 배포를 통한 애견보호 사상 고취.
 5. 국제 애견단체와의 애견문화 교류 및 제휴에 관한 사항.
- ④ 애견에 관한 학술 연구.
1. 우수견의 혈통고정을 위한 육종, 유전공학을 이용한 학술사업.
 2. 애견학과 개설대학과의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활동.
 3. 각종 애견관련 교본 및 출판물 제작.
 4. 주무장관이 지정하는 대행사업, 세계애견에 관련한 연구 발표, “개” 개량에 필요한 번식 및 계통자료 연구.
- ⑤ 애견 전문 인력 양성 · 자격증 발급.
1. 국제 공인된 견의 표준에 따라 우수견을 판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과 이를 보조하는 스튜어드 양성.
 2. 애견의 능력과 기능개발을 위한 훈련사 양성.
 3. 견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전문기술을 가진 애견 미용사 양성.
 4. 애견 전람회에서 애견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전문 핸들러 양성.
 5. 각종 전문 인력의 능력 검증 및 자격증 발급.
 6. 애견 인력의 능력 · 기술 개발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개최.
- ⑥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기구

제6조 (위원회) 본 연맹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조직) 본 연맹은 각 지역별로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건종별로는 협회, 연합회, 클럽을 둘 수 있다. 각 조직별 장은 구성된 회원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며 조직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회원

제8조 (회원) 본 연맹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정회원 : 본 연맹 소정의 입회 신청절차를 마치고 총재의 승인을 얻은 자.
단, 회원이었던 자로서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회원 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 ② 명예회원 : 총재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본 연맹에 공로가 있는 자라고 추천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어야 한다.
- ③ 평생회원 : 요금규정에 명시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총재의 승인을 득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④ 온라인 회원 : 본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는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온라인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소속 및 탈퇴)

- ① 정회원은 입회신청 시 연맹회원으로 관리되며, 회원 의사에 의해 본 연맹 예하 1개 조직에 편성되어 관리 될 수 있다. 단,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은 연맹에서 별도 관리한다.
- ② 모든 회원은 성명, 주소, 또는 소속 조직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 연맹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언제든지 본 연맹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상실)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납입한 회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

2. 동물보호법위반, 기타 반려동물의 학대에 관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때.
- ②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③ 평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연맹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자.
 2. 본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때.
- ④ 온라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연맹의 제 규정 및 운영 방침을 위반한 자.
 2. 본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11조 (제명)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회원이 본 연맹의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손상케 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 (회비)

- ① 회비 또는 각종 등록요금은 이사회가 결의한 요금 규정에 의한다.
- ② 기 납입된 입회금 및 회비는 회원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잔여기간에 비례해 반환한다. 단, 제명 또는 징계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장 임원

제13조 (임원)

- ① 본 연맹에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 3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감사의 직을, 감사는 이사의 직을 각 겸임할 수 없다.
- ④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총재 1명, 부총재 5명 내외를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는다.

- ② 총재 및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총재 및 부총재가 선출될 때까지 총재 및 부총재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 ① 총재는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본 연맹의 회무를 처리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명예직 임원)

- ① 본 연맹에 다음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 1. 명예총재 1명.
 - 2. 명예부총재 3명 이내.
 - 3. 명예 이사, 고문, 자문위원.
 - 4. 명예 홍보대사.
- ② 명예직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 ③ 명예총재, 명예부총재, 명예이사, 고문, 자문위원은 본 연맹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위촉한다.
- ④ 명예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임원이 그 정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는 퇴임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해임) 임원은 본 연맹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연맹의 명예 훼손, 기타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실비 변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부서 및 비치서류)

- ① 본 연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직원의 채용, 업무 분담,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맹 내규에 따른다.
- ③ 본 연맹은 사무소에 민법 제32조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외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 1. 정관.
 - 2. 허가 . 인가 기타 등기할 사항에 관한 서류.
 - 3. 재무제표.
 - 4. 그 외 이사회가 정한 서류 및 장부.

제6장 총회 및 이사회

제21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의 자격 및 총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총재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재,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⑤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한 때.
 - 3.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 4. 감사가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한 때.

제22조 (총회의 소집통지) 총재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① 정관의 변경.

- ②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 ③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⑥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 (의결권) 대의원은 총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5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안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법인 해산은 총회 개의 출석수를 충족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 ① 대의원은 미리 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다른 1인의 대의원을 대리인으로 서면 신고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대리인은 본 연맹이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최 전일까지 본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대의원 또는 이사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본 연맹과 대의원 또는 이사간의 상호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본 연맹과 이사, 대의원의 개인적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사항의 통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본 연맹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 ③ 이사 정수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는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재,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 ⑤ 이사회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 사항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계획 등 총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 및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② 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건.
- ③ 회무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 조직 및 관리 방법.
- ④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 (의사록)

- ① 총회 의사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수, 의안, 의사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총재 또는 의장의 직무를 행한 자 및 출석한 대의원 중 지정하여 기명날인한다.
- ② 이사회 의사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수, 의안, 의사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31조 (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의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결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 ① 총재는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명예를 선양 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각 종 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회원 및 연맹 산하조직과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총재는 본 연맹의 사업목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 또는 건종연합회·지부·지회·클럽을 구성하는 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총재는 제2항의 징계에 대하여 징계를 경감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사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④ 포상 및 징계의 대상과 종류, 유형별 징계기준, 징계절차, 징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징계의 경감·해제·사면절차 기타 상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상벌규정에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 (자산)

- ① 본 연맹 자산은 입회금 및 회비, 등록료 및 제수수료, 찬조금, 조성금, 사업에 의한 수입,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소유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으로 한다.
- ② 본 연맹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 ③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사업년도 및 제출서류)

- ①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 연맹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경비지불의 방법)

- ① 본 연맹의 경비는 자산을 넘어서 지불해서는 안된다.
- ② 매 사업년도 결산에 있어서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 다음해에 이월금으로 처리한다.

제36조 (차입금)

- ① 본 연맹 경영상의 이유로 5년 미만, 5억원 미만의 단기 차입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 후 이사회에 차입금의 액수 및 상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연맹 경영상의 이유로 5년 이상 5억원 이상의 장기 차입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차입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삭제)

제37조 (감사)

- ① 총재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총회의 개최일 20일전 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그 감사를 받아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②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는 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재는 제1항의 서류 및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사무소에 구비하여야 한다.

제8장 해산

제38조 (청산인 및 해산)

- ① 본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본 연맹이 해산할 때는 총재인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총재가 청산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회 의결로 이사 중 1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본 연맹이 해산할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공익 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장 부칙

제39조 (규정) 본 정관의 시행이나 본 연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정관의 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1956. 4.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7.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 개정등)

① 제2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축견협회에서 사단법인 전견등록협회로 명칭 변경

② 정부직제개편 농림부에서 농수산부로 개편에 따른 개정 변경

부 칙 [1978. 8.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변경 등)

① 제1조 (목적) 내용 보완과 제6조 (부서) 보완

② 제14조 (임원) 이사 구성 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변경

부 칙 [1982. 4. 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개정등) ① 제1조(목적)과 제2조(명칭)에서 조항을 제1조(명칭)과 제2조(목적)으로 조항변경 개정을 함.

제3조 내지 생략

부 칙 [1986. 8.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개정등) ① 제1조(명칭) 사단법인 한국전견등록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 애완동물보호협회로 개칭 변경 등록함.

제3조 내지 생략

부 칙 [2001.12.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03. 2. 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09. 7.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1. 3. 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일부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4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41조, 제42조)

부 칙 [2019. 1. 2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별지] 기본재산명세서 1부.

기 본 재 산 목 록

(2018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평)	금액 (가액)	비 고
임차보증금	117평	100,000,000 원	
【합 계】		100,000,000원	

-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 · 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총재



(인)

보통(운영) 재산목록

(2018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坪)	금액 (가액)	비 고
집기 및 비품	-	1,088,371,189	정기예적금, 입출입통장, 현금
	5	300,576	어질리티 장비 1
	1	15,616	인터넷전화용 NAS
	5	21,756	인터넷 전화기 1
	3	23,492	사무용의자 1
	1	9,238	사무용의자 2
	1	8,561	사무용의자 3
	1	8,561	사무용의자 4
	1	96,941	회원카드 발급용 카드프린터기
	1	27,685	컴퓨터 1
	1	27,685	컴퓨터 2
	5	392,120	어질리티 장비 2
	1	40,995	컴퓨터 3
	1	11,086	모니터 1
	1	82,852	카드프린터기
	50	438,942	미용테이블 2
	1	7,896	외장하드 1
	4	80,586	사무용의자 5
	1	20,479	사무용 프린터
	1	82,845	컴퓨터 4
	1	83,427	컴퓨터 5
	1	144,478	TV
	1	83,984	컴퓨터 6
	1	75,430	컴퓨터 7
	1	19,035	블라인드 1
	2	11,117	원형 테이블
	2	28,602	사무용책장 1
	1	13,466	사무용서랍장 1
	5	72,898	회의실비치용 의자
	1	148,884	프린터 1
	1	151,198	총재실 의자
	1	60,281	사무용 책상 1
	1	18,567	인터넷 전화기 2
	1	70,671	모니터 2
	1	416,228	컴퓨터 8
	1	133,176	사무용의자 6
	1	73,114	사무용의자 7
	1	58,020	모니터 3
	1	162,456	컴퓨터 9

보통(운영) 재산목록

(2018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坪)	금액 (가액)	비 고
집기 및 비품	1	162,456	컴퓨터 10
	1	57,080	모니터 4
	1	217,462	컴퓨터 11
	1	162,456	컴퓨터 12
	1	79,119	모니터 5
	1	56,679	모니터 6
	1	59,979	모니터 7
	1	159,442	컴퓨터 13
	2	37,133	인터넷 전화기 3
	1	278,992	노트북
	4	220,325	사무용의자 8
	1	180,841	사무용책상 2
	3	450,993	컴퓨터 14
	1	53,771	모니터 8
	1	148,860	프린터 2
	1	36,234	프린터 3
	1	111,025	사무용책상 3
	1	82,241	사무용책상 4
	1	109,654	사무용서랍장 2
	1	135,697	안내 데스크 1
	1	27,414	사무용책장 2
	1	42,218	인터넷 전화기 4
	1	54,496	유리장 1
	1	121,707	사무용책상 5
	1	23,615	사무용책상 6
	1	182,382	컴퓨터 15
	1	74,285	모니터 9
	1	182,382	컴퓨터 16
	1	74,285	모니터 10
	1	50,500	사무용 의자 9
	1	50,500	사무용 의자 10
	1	363,301	마이크로칩 리더기 1
	1	24,327	전자레인지
	1	74,877	냉장고
	1	363,301	블라인드 2
	100	3,186,653	미용테이블 3
	1	111,459	마이크로칩 리더기 2
	1	61,896	모니터 11

보통(운영) 재산목록

(2018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坪)	금액 (가액)	비 고
집기 및 비품	1	109,618	벽걸이 에어컨
	1	73,114	사무용의자 11
	1	95,899	유리장 2
	1	50,566	사무용책장 3
	1	50,566	사무용책장 4
	1	50,566	사무용책장 5
	1	97,062	사무용책상 7
	1	66,575	사무용책상 8
	1	45,335	사무용서랍장 3
	1	87,181	안내데스크 2
	1	278,978	회의실 테이블 1
	1	290,603	회의실 테이블 2
	1	482,928	사무용의자 12
	1	45,335	사무용서랍장 4
	70	1,997,227	미용테이블 4
	1	32,548	인터넷 전화기 5
	1	412,127	블라인드 3
	1	20,924	사무용책상 9
	1	49,572	TV 스탠드
	1	406,843	컴퓨터 17
	1	98,800	모니터 12
	1	76,085	사무용의자 13
	2	2,550,654	냉,난방기
	1	717,792	번호표 발급용 프린터
	1	411,483	컴퓨터 18
	1	225,221	모니터 13
	1	43,079	인터넷 전화기 6
	1	647,961	컴퓨터 19
	1	129,385	사무용의자 14
	1	400,814	모니터 14
	1	104,904	외장하드 2
	50	276,531	미용테이블 1
합계		1,110,190,446	

-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총재



(인)

요금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 및 제12조에 의해 입회비 . 연회비 및 각종 등록료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입회비) 회원(단체)은 구성원 회원(개인)으로 1인당 30,000원 이상의 입회비를 징수하여 본 연맹 또는 연맹 예하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연회비) 회원(단체)은 구성원 회원(개인)으로 1인당 30,000원의 연회비를 징수하여 본 연맹 또는 연맹 예하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유효기간과 지속) 회원(개인)의 회비 유효기간은 납입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이 동안 연회비 계속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자격의 상실) 연회비의 납입이 지체된 회원(개인)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연회비 기한이 끝난 다음 6개월 이내에 납입된 자는 입회비가 면제된다.

제6조(각종 등록료) 본 연맹 각종 요금의 구분 적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요 금
회 비	입 회 비	30,000
	연 회 비	30,000
	2 년 연 회 비	50,000
	3 년 연 회 비	60,000
	평 생 회 비	1,000,000
혈통비	단 독 건 (내 산) 등 록 료	20,000
	단 독 건 (외 산) 등 록 료	40,000
	타 단 체 전 환 등 록 료	20,000
	수 출 용 혈 통 서 등 록 료 (수출용혈통서:30,000, 출국 소유자 회원가입비:60,000, 소유자 변경:20,000,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 사항임)	110,000
	일 태 자 건 등 록 료	20,000
	일태자건 등록료 (121일 이상 1년 미만)	25,000
	일태자건 등록료 (1년 이상 2년 미만)	35,000
	일태자건 등록료 (2년 이상)	55,000

혈통비	혈 통 서 재 발 행 수 수 료		20,000
	혈 통 서 교 체 수 수 료		10,000
	개체식별번호(마이크로칩,DNA등록) 신청 수수료		10,000
	5 대 혈 통 서 (기 존 혈 통 서 +10,000)		-
	소 유 자 변 경 등 록 료		20,000
	콜 네임 등록료		10,000
	국제공인 혈통서 교체 등록료 (철저한 서류검토 후 요건 미비시 교체발급 불가)		30,000
	우선발급 수수료		100,000
	인 터 내 셔 널 (F C I / A K U) 챔 피 언 등 록 료 (챔피언등록 15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 등록 의무 사항임)		150,000
	코 리 아 주 니 어 챔 피 언(Kor.J.CH) 등 록 료 (챔피언등록 5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 등록 의무 사항임)		50,000
	코 리 아 챔 피 언(Kor.CH) 등 록 료 (챔피언등록 7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 등록 의무 사항임)		70,000
	코 리 아 위 너 챔 피 언(Kor.W.CH) 등 록 료 (챔피언등록 7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등록 의무 사항임)		70,000
	코 리 아 프 리 미 어 챔 피 언(Kor.PM.CH) 등 록 료 (챔피언등록 10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등록 의무 사항임)		100,000
	내셔널 그랜드 / A2O CS 그랜드 / A2O CS 서프림 챔피언 등록료		100,000
	귀색인 등록료	1 ~ 5두	30,000
		6두 이상일 때 추가 1두당	6,000
	마이크로칩	등록료 (번식감리위원을 통한 등록시 추가비용 1두당 1만원)	10,000
		일반형	15,000
		고급형	30,000
견사명	국 제 견 사 호 등 록 료		60,000
종 견 선정료	종 견 (수, 암) 심 사 료		40,000
	종 견 등 록 료		50,000
등 록 료	C D 등 록 료		40,000
	B H 등 록 료		30,000
	O B (복 종) 등 록 료		50,000
	I G P (I) 등 록 료		50,000
	I G P (II) 등 록 료		60,000
	I G P (III) 등 록 료		70,000
	지 구 력 시 험 등 록 료		50,000
	인 터 내 셔 널 어 질 리 티 챔 피 언 (INT.AG.CH) 등 록 료		100,000
	코 리 아 어 질 리 티 챔 피 언 (KOR.AG.CH) 등 록 료		50,000
	FCI AG I 마 스 터 등 록 료		30,000
	FCI AG II 마 스 터 등 록 료		30,000

	KOR AG I 마스터 등록료	30,000
	KOR AG II 마스터 등록료	30,000
	지정기관(학원,훈련소)등록료	3,000,000
자격증 발급비	자격증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50,000
	훈련사명예사범	400,000
	훈련사심사위원	200,000
	훈련사사범	300,000
	훈련사 1 등	300,000
	훈련사 2 등	200,000
	훈련사 3 등	100,000
	애견미용사명예사범	400,000
	애견미용사심사위원	200,000
	애견미용사교사/사범	300,000
	애견미용사 1 급	300,000
	애견미용사 2 급	200,000
	애견미용사 3 급	100,000
	AGF 국제 애견미용 심사위원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International Judge)	200,000
	AGF 국제 애견미용사 마스터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Master Grade	300,000
	AGF 국제 애견미용사 A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A Grade)	300,000
	AGF 국제 애견미용사 B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B Grade)	200,000
	AGF 국제 애견미용사 C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C Grade)	100,000
	핸들러명예사범	400,000
	핸들러심사위원	200,000
	핸들러교사/사범	300,000
	핸들러 1 급	300,000
	핸들러 2 급	200,000
	핸들러 3 급	100,000
	전견종심사위원	200,000
	그룹심사위원	100,000
	단견종심사위원	100,000
	반려동물종합관리사	100,000

출진비 / 검정료	전 랑 회 출 진 료	KKF 도그쇼	베 이 비 클 래 스	40,000
			퍼 피 클 래 스	40,000
			주 니 어 클 래 스 이 상	50,000
		FCI/-삭제-/A2O CS/ 베 스톱오브베 스톱 도그쇼	베 이 비 클 래 스	40,000
			퍼 피 클 래 스	50,000
			주 니 어 클 래 스 이 상	60,000
	자 격 검 정 료 및 콘 테 스톱 응 시 료			50,000
	A G F 자 격 검 정 료			50,000
	A G F 콘 테 스톱 응 시 료			50,000
	C D 검 정 료			40,000
	B H / I G P 검 정 료			50,000
	I G P (Ⅱ) 검 정 료			60,000
	I G P (Ⅲ) 검 정 료			70,000
	반 려 동 물 종 합 관 리 사 검 정 료			50,000
	어질리티 출진료	KKF / FCI 대회	비기너	10,000
			노비스	20,000
			점핑/어질리티	40,000
번외 경기		비기너	5,000	
		노비스	10,000	
		점핑/어질리티	20,000	
디스크독 출진료			30,000	
교육비	심사위원 후보 교육비			300,000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 교육비			30,000
				20,000

(’20. 8. 1.부터 적용)

부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년 2월08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

개정 2008년 2월 23일

개정 2009년 4월 11일

개정 2010년 2월 27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

일부개정 2012년 3월 22일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

일부개정 2016년 2월 17일
일부개정 2016년 3월 8일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 (제6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 (제6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일부개정 2019년 3월 14일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이사 . 감사선임 기준

제1조 (선임의 기준) 이사 . 감사 선임은 다음 선임기준에 의거하여 이사 . 감사의 후보자를 선임한다.

1. 정관 제15조 '임원의 직무'에 비추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맹 정회원 중 본 연맹의 운영에 유능한 식자로 한다.
2. 사회적 지위 및 덕망을 갖춘 자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과거 10년간 정관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2조 (이사 .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추천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기준의 개폐) 이 기준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 반영)

대의원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에서 규정된 대의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대의원 목적) 정관 제 22조에 의하여 대의원은 본 연맹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을 대표하여 제반사항을 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의원 조직) 본 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유효한 자로 구성한다.

제4조 (대의원 자격)

1.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
- 2) 협회장.
- 3) 견종연합회장.
- 4) 지부장.
- 5) 지회장.
- 6) 클럽회장.
- 7) 각 위원회 위원장.

다만, 견종연합회장, 협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 회장은 총회 소집 전 해당 조직 소속에 속한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회원자격상실 사유 없이 자격이 유효한 정회원과 평생회원수의 합이 총 5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을 가지며, 자격을 갖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시 연맹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여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검직 시에는 그 중 1개 직에 한하여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5조 (대의원의 자격 상실)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 2) 해임자.
- 3) 대의원으로서 본 연맹 명예를 훼손케 하여 상별위원회에 회부된 자.

- 4) 협회, 건중연합회, 지부, 지회, 클럽 소속의 유효 정회원과 평생회원 수의 합이 50명 이하인 협회장, 건중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회장인 자.
2. 제5조 1항 3)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직책의 임기로 한다.
2. 보결(증원을 포함)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5년 3월 19일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4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4조 4항, 제5조 4항)

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 반영)

감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근거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시기)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계 종료 후 익년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감사 범위) 감사범위는 업무 및 자산, 회계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4조 (감사 보고) 감사 결과는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은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통고) 감사를 실시할 때는 피감사 부서에 2주(14일)전에 미리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예고 없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협조) 공식적인 감사로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 부서는 감사 중 감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사임기 및 자격)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는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금치산자를 감사로 선출할 수는 없다.

제8조 (개정) 본 감사 규정은 이사 3분의 2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 반영)

상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근 거) 이 규정은 제39조 (규정) 및 제31조 (포상 및 징계)에 근거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 상

제3조 (포상의 대상)

1. 본 연맹의 직원 및 회원, 연맹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 할 수 있다.
 - 1)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연맹의 명예를 선양한 때
 -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때
 - 3)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하에 진행된 각종 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때
2. 총재는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외부 인사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 장 : 각 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수여
2. 표 창 :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
3. 근속상 : 연맹 근속년수 10년, 20년, 30년 근속자에게 수여
4. 공로패 : 헌신적인 봉사로 연맹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수여
5. 감사패 : 연맹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연맹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

제5조 (포상시기)

1. 정기포상은 연맹 창립기념일 및 베스트 오브 베스트 도그쇼 때 행한다.
2. 수시포상은 총재가 필요에 따라 각종 행사시에 수시로 행한다.

제6조(추천과 심사)

1. 포상자는 견종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회장, 각 종 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등에서 상벌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자는 제3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자 3주(21일)전에 상별위원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단, 각종 공적조서는 집행부에서 취합하여 상별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별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취합된 공적조서를 토대로 상별위원회를 소집하여 포상 대상자 및 포상의 종류를 의결한다.

제7조 (포상 통고) 포상 대상자에게는 포상일자 1주(7일)이내에 본인에게 서면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통고한다.

제8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9조 (포상의 기록) 포상자에 관해서는 연맹사무처의 상별 대장에 포상 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포상 장소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3장 징계

제10조 (징계의 대상)

1. 본 연맹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1) 본 연맹의 사업 목적을 방해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1) 회원 상호간에 비방과 분쟁을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 (2) 각종 행사장에서 항의,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거나 동조한 자.
 - (3) 이유 없이 출진을 거부하거나 기권하며 평가에 불복종, 항의한 자.
 - (4) 각종등록, 신청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이를 방조, 비호, 동조한 자.
 - (5) 혈통서를 허위 발급, 신청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자
 - (6) 본 연맹등록 요금 및 각종 검사비, 광고비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 (7)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이사, 위원장, 협회장, 견종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회장, 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로 본 연맹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내 타 단체에 출진 또는 공개적으로 협력하여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단, 인명구조, 동물매개치료 등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행사는 예외로 한다.
 - (8) 본 연맹 총회나 이사회에서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여 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
 - (9) 도그쇼 심사위원 배정 공지 후 심사위원의 SNS에 출진건을 홍보한 자.
 -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연맹 이미지를 실추 시킨 자.
 - (11) 본 연맹을 사칭하여 금품, 금전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자.
 - (12) 본 연맹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욕설 또는 폭언, 폭행을 자행한 자
 - 2)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연맹 제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4)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5)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 6) 강도, 강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자.
2. 전항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3. 본 연맹 회원이 다른 회원의 징계를 요청할 경우, 징계요청 사유를 명시한 징계요청서와 함께 징계 요청 1건당 50만원의 징계 담보금을 본 연맹 사무처에 담보로 예치하여야 한다 단, 사무처가 직접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징계 담보금은 징계확정 시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며, 징계 요청이 기각될 경우 담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연맹에 귀속된다.
 - 2) 본 연맹 회원이 아닌 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警告)
 - 2) 자격정지
 - (1) 본 연맹에 대한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
 - (2) 자격정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3) 제 명
 - (1) 제명은 상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2) 상벌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자는 상벌규정과 동일하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별도 연맹 내규에 의한다.

제12조 (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징계절차 및 추가징계)

1. 총재가 징계에 관한 내용을 상벌위원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상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은, 총재의 재가를 얻어 집행한다.
2.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 기간 중 동일한 징계 사유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재는 추가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진술권)

1.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상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전화 통지로 갈음할 수도 있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상별위원회에 증빙자료, 기타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상별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이를 상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 신청 등)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에 불복하였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별위원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은 이의 이유를 붙여서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이의 신청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토록 하고,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이의 신청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총재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심의, 제명 의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제척 및 기피)

1. 상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신청인을 제외한 후 상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징계해제 및 경감)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연맹 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계를 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징계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징계해제 및 경감은 상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재가 확정한다.
3. 총재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사면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의 통지) 상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면 총재에게 통지하고, 총재는 징계결과를 해당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총재 명의의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9조 (퇴장) 각종 행사장에서 출진자가 항의 및 심사에 불복종할 경우 즉석에서 심사위원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담당 심사위원은 퇴장시킨 사유서를 10일 이내에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고) 상·벌에 관한 처리 내용은 본 연맹회지 또는 홈페이지에 직위, 성명,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효력정지 및 임무수행의 제한)

1. 징계자는 징계 기간 동안 본 연맹 회원의 자격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정지 된다.
2.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인 이사, 위원장, 협회장, 건총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 회장, 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과 지정기관의 장 중 직책을 사임 하거나 지정기관을 탈퇴한 자는, 다시 연맹 활동을 원하는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책 또는 지정기관장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회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는 제한받지 않는다.

제22조 (직책의 상실) 본 연맹의 직책을 가진 자 중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직책이 상실된다. 단, 본 연맹 임원의 해임은 정관 제19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상벌위원회의 운영) 상벌위원회의 운영은 본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2년4월2일부터 시행한다.
2. 이규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이유에 의한 징계도 이 규정에 의해 행한다.
개정 2001년12월01일
3. 이 규정은 2003년3월12일 부터 시행 한다
4. 일부 개정 2005년11월 5일 (제12조, 13조)
5. 일부 개정 2010년 2월 27일 (제9조, 제13조, 제19조)
6. 이 규정(전면 개정)은 2011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7. 일부 개정 2013년 6월 25일 (제10조, 제11조, 제15조, 별표1)
8. 일부 개정 2015년 2월 25일(제 10조)
9. 일부 개정 2015년 12월 16일(제21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일부 개정 2017년 2월 15일(제10조, 제11조, 별표1)

11. 일부 개정 2018년 2월 21일(제10조 1항, 별표1)
12. 일부 개정 2019년 1월 21일(정관개정 사항 반영)
13. 일부 개정 2019년 2월 20일(제10조 3항, 별지 제3호)
14. 일부 개정 2020년 2월 20일(제10조 1항, 별표 1)

【별표1】

유형별 징계기준

1) 본 연맹의 목적을 방해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1) 회원 상호간에 비방과 분쟁을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 (2) 각종 행사장에서 항의,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거나 동조하는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 (3) 이유 없이 출진을 거부하거나 기권하며 평가에 불복종, 항의하는 자
: 자격정지 1년 이하
- (4) 각종등록, 신청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이를 방조, 비호, 동조하는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 (5) 혈통서를 허위 발급, 신청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자
: 자격정지 5년 이하
- (6) 본 연맹등록 요금 및 각종 검사비, 광고비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 (7)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이사, 위원장, 협회장, 건중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 회장,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로 본 연맹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내 타 단체에 출진 또는 공개적으로 협력하여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 (8) 본 연맹 총회나 이사회에서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여 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 (9) 도그쇼 심사위원 배정 공지 후 심사위원의 SNS에 출진건을 홍보한 자.
: 자격정지 1년 이하
-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연맹 이미지를 실추 시킨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 (11) 본 연맹을 사칭하여 금품, 금전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 (12) 본 연맹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욕설 또는 폭언, 폭행을 자행한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2)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3) 연맹 제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4)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5)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자격정지 1년 이하

6) 강도, 강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자. : 제명

※ 전항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별지 제1호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원 명)														
(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 번 (군인의 경우)						
(4)본 적 국 적									" 기 재 생 략 "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직 위					
(17) 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부족한 경우 공적조서 (을)지 작성			

공 적 조 서(을)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 급		직 위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해야 함.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상별규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상 별 위 원 회 위 원 장 (인) 귀 하							

- - - - - (결 취 선) - - - - -

진술권 포기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 급		직 위	
	주 소						

본인은 상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상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성 명 (인)

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본 연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분) 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상별 위원회.
2. 견종표준 위원회.
3. 번식감리 위원회.
4. 심사위원회.
5. 전람회 추진위원회.
6. 핸들러 위원회.
7. 애견미용사 위원회.
8. 훈련사 위원회.
9. 자문 위원회.
10. 운영 위원회.
11. 종견선정 위원회.
12. 전람회 감찰 위원회
13. 국제 애견미용 기술 표준 위원회.
14. K-9 탐지견 위원회.
15. 인명구조견 위원회.
16. 산학협력 위원회.
17. 정책 위원회.
18.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19. 대외 홍보 위원회.
20. 기타.

제4조 (위원의 선임과 해임)

1. 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단, 위원회 임원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임원 및 위원 선임 규정에 정한다.

2. 상별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직책이 상실된다.

3. 위원의 해임은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제6조 (특별 전문위원) 총재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특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는 각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총재가 의결을 붙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답변한다.

2. 총재 및 이사회는 위원회의 답신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마다 별도의 규정으로 규정한다.

4.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써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소속 위원의 타 단체 출진 금지 의무화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 삭 제 -

제9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개최일 10일 전까지 일시 . 장소 . 의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조직구성)

1. 각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내외.
- 3) 총무 1명.
- 4) 회계 1명.
- 5) 감사 1명.

2. 위원회 조직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3. 총무와 회계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의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의결권) 위원은 위원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 삭 제 -

제14조 (위원회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1. 위원은 미리 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다른 1인의 위원을 대리인으로 서면 신고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리인은 본 연맹이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연맹과 위원간의 상호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위원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연맹 소유의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의사록) 위원회 의사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수, 의안, 의사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 자 및 출석한 위원 중 지정하여 기명날인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해산) 위원회의 해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4년 7월 16일(제8조 1항)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4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조, 제10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3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3조 16항, 17항, 18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상별 위원회.
 - 1) 표창에 관한 사항.
 - 2) 징계에 관한 사항.
2. 견종표준 위원회.
 - 1) 각 견종의 스탠다드에 관한 사항.
3. 번식감리 위원회.
 - 1) 견적(犬籍)에 관한 사항.
 - 2) 번식에 관한 사항.
4. 심사위원회.
 - 1) 심사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 2) 심사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 3) 스튜어드 자격에 관한 사항.
 - 4) 스튜어드의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5. 전람회 추진위원회.
 - 1) 전람회 제도에 관한 사항.
 - 2) 전람회 사업에 관한 사항.
6. 핸들러 위원회.
 - 1) 핸들러 자격에 관한 사항.
 - 2) 핸들링에 관한 사항.
 - 3) 핸들러 및 핸들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 4) 핸들링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5) 주니어 핸들러 자격에 관한 사항.
 - 6) 주니어 핸들러 양성에 관한 사항.
 - 7) 주니어 핸들링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7. 애견미용사(trimmer) 위원회.
 - 1) 애견미용사 자격에 관한 사항.
 - 2) 애견미용(trimming)에 관한 사항.
 - 3) 애견미용사 및 애견미용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 4) 애견미용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8. 훈련사 위원회.

- 1) 훈련사 자격에 관한 사항.
- 2) 훈련사, 훈련사 시험위원 및 훈련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 3) 가정견 . 경비견의 훈련시험 . 훈련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4) 지정 훈련소에 관한 사항.
- 5) 동반견 훈련시험에 관한 사항.
- 6) FCI 국제 훈련시험(IGP)에 관한 사항.
- 7) FCI 국제 훈련시험(IGP) 심사위원의 교육 . 시험에 관한 사항.
- 8) FCI 국제 훈련시험(IGP)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9) 어질리티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10) 어질리티 심사위원의 교육 . 시험에 관한 사항.
- 11) 공인 재해구조견 육성 훈련소 . 재해 구조견 지도사에 관한 사항.
- 12) 재해 구조견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13) 재해 구조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9. 자문 위원회

- 1) 연맹의 전반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총재의 임명에 의해 위원회 성립이 가능.
- 2) 자문 위원장은 총재의 요청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할 수 있다.

10. 운영 위원회

- 1) 연맹 사무처 운영 실무, 경영 효율성 개선 및 대외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2) 운영 위원장은 연맹 사무처 운영 실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총재의 임명에 의해 구성한다.

11. 종견선정 위원회

- 1) 순수 혈통 보존 및 우수 종견의 육성에 관한 사항.
- 2) 종견선정에 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12. 전람회 감찰 위원회

- 1) 도그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
- 2) 도그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금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3. 국제 애견미용 기술 표준 위원회.

- 1) 글로벌 애견미용 국제 기구와 본 연맹 간 상호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 2) 애견미용 관련 기술표준 연구에 관한 사항.
- 3) 국내 및 국제 애견미용 기술의 표준 정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K-9 탐지견 위원회.

- 1) 탐지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 2) 탐지견 활용 안전사고 예방,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

15. 인명구조견 위원회.

- 1) 인명구조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 2)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명 구조견을 활용한 인명 구조 활동, 재난 현장 출동, 수색, 사체 탐지 등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16. 산학협력 위원회.

- 1) 고교 및 대학과의 공동 연구, 강사 및 교수진 파견에 관한 사항.
- 2) 산학협력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컨설팅 및 전문 자격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정책 위원회.

- 1) 동물 보호법을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신규 입법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2) 국회, 행정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참석에 관한 사항.
- 3) 정책 홍보 및 캠페인, 서명운동에 관한 사항.
- 4) 연맹 소속 브리더 및 전문 자격 보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18. 기타

제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 (제2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 (제2조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 사업과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심사위원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의 소속) 심사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1. 본 연맹의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기술지도 및 양성)
3. 견종표준 제정에 대한 본 연맹에 신청 . 답신에 관한 사항.
4.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5. 심사위원에 대한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6.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심사위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8. 심사위원 규정 제정에 관한 협조.
9. 심사방침 수립.
10. 심사위원(스튜어드 포함)의 상벌 징계의뢰.
11. 심사위원 해외출장 및 제외국의 심사요청 시 파견 등을 심의하여 총재에게 건의.
12. 기타.

제5조 (회비의 징수)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심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무 1명.
 - 4) 회계 1명.
 - 5) 감사 1명.

2. 심사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장은 클럽 . 지부 . 지회 . 건종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제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임원의 선임)

1. 심사위원회의 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은 각각 선임된 시점부터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제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해임은 심사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 3) 단견종 심사위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 1) 심사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 2) 심사위원회 임시총회의 소집을 총재 명으로 행할 것.
- 3)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청구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 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룹별 심사부장, 총무로 구성한다.
단, 그룹별 심사부장의 임명 및 해임은 심사위원장이 행한다.
2. 상임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6.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심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4조, 7조, 9조, 22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22조, 25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0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1항, 4항, 제14조)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8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4조 4항)

애견미용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설치)

1.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애견미용사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규정하는 애견미용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애견미용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애견미용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애견미용사의 소속)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애견미용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애견미용 콘테스트 개최에 관한 사항.
5.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6. 애견미용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애견미용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애견미용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 . 지부 . 지회 . 견종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임원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애견미용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 3) 애견미용사 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본 연맹 지정학원의 학원장이면서 애견미용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4) 애견미용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5) - 삭 제 -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 2)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 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2조, 6조, 8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1항,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0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0조, 제32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10조)

핸들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핸들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핸들러 위원회의 설치)

1. 핸들러 위원회는 핸들러 규정 제2장 제5조 5에서 9까지 규정하는 핸들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핸들링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핸들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핸들러의 소속) 핸들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핸들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핸들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핸들러 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핸들러 자격검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핸들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핸들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핸들러 위원회는 핸들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핸들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핸들러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건중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 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핸들러 위원회의 임원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핸들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핸들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핸들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핸들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 3) 핸들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4) 핸들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5) - 삭 제 -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 1) 핸들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핸들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5)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핸들러 위원회의 기능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핸들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핸들러 위원회 사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 위원회)

1. 상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 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 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핸들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핸들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핸들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6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 10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훈련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훈련사 위원회 규정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훈련사 위원회의 설치)

1. 훈련사 위원회는 훈련사 규정 제2장 제4조 4에서 7까지 규정하는 훈련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훈련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훈련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훈련사의 소속) 훈련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사업과 업무)

1. 훈련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훈련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훈련 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훈련사 자격검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훈련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훈련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훈련사 위원회는 훈련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훈련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훈련사 위원회의 임원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훈련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훈련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훈련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조건을 전부 구비한 자로 한다.

1) 훈련사 위원.

-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2) 훈련사 1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3) 훈련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삭제)

- 3) 기존 위원 중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취소토록 한다.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 1) 훈련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훈련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5)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훈련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훈련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훈련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 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훈련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훈련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6조, 8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0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10호 1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종건선정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종건선정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종건선정 위원회의 설치)

1. 순수혈통 보존 및 우수종건의 육성을 위하여 종건선정 위원회를 둔다.
2. 종건선정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종건선정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종건선정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종건선정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종건선정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종건선정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종건선정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종건선정 위원회는 종건선정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종건선정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종건선정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종건선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건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종건선정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종건선정 위원회의 임원은 종건선정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종건선정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종건선정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종건선정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종건선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종건선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종건선정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 1) 본 연맹 정회원인 자.
 - 2) 종건선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 1) 종건선정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종건선정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종건선정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종건선정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종건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건선정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종건선정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건선정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종건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번식감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번식감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번식감리 위원회의 설치)

1. 개의 순수혈통 보존과 정확한 혈통등록 확인을 위해 번식감리 위원회를 둔다.
2. 번식감리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번식감리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번식감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번식감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번식감리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번식감리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번식감리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번식감리 위원회는 번식감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번식감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번식감리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번식감리 위원회의 임원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번식감리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번식감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번식감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 1) 본 연맹 정회원인 자.
 - 2) 번식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 1) 번식감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번식감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번식감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번식감리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번식감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번식감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건종 표준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건종표준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건종 표준 위원회의 설치)

1. 각 건종의 건종표준(스탠다드)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건종 표준 위원회를 둔다.
2. 건종표준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건종표준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건종 표준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건종표준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국내 토종건의 건종 표준 확정을 위한 연구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세계애견연맹(FCI)에서 공인된 건종 표준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건종표준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건종표준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건종표준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건종 표준 위원회의 운영) 건종 표준 위원회의 운영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건종표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자문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자문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자문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둔다.
2. 자문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연맹 사업 목적에 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갖춰 총재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자문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자문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조언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자문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자문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자문 위원회의 운영) 자문 위원회는 본 연맹 총재의 요청시 자문에 응하는 특성상 위원회 소집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회의 소집이 필요할 경우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본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전람회 추진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전람회 추진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전람회 추진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 주최 전람회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전람회 추진 위원회를 둔다.
2. 전람회추진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도그쇼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전람회 추진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전람회추진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수도권 및 지방의 균형적인 전람회 개최를 위한 장소섭외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세계애견연맹(FCI) 도그쇼 규정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람회추진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전람회추진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운영)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운영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국제 애견미용 기술 표준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설치)

1. 글로벌 애견미용 국제 기구와 본 연맹 간 정보 교류 및 애견미용기술의 국제 표준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를 둔다.
2.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은 본 연맹 애견미용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본 연맹 산학협력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교수, 지정 학원장 중 애견미용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한다.

1. 애견미용 기술 표준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AGF(아시아애견미용연맹)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애견미용 국제 규정에 관한 사항.
3. 애견미용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 애견미용 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술 조연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특별 전문 위원 및 임무) 국제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 전문 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 전문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기술위원'은 애견 미용 산업 현장에서의 숙련된 애견미용사로 견종별로 특성화된 최신 애견미용 기술을 분석한다.
2. '연구위원'은 애견미용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개발 연구하며, 전문교재의 집필 및 검수를 담당 한다.
3. '표준위원'은 국제 애견미용 규정과 경기대회 규칙이나, 국내 및 국제 애견미용

기술의 표준에 대한 발전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4. '자문위원'은 10년 이상의 애견미용 전문가 또는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에 애견미용 기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제6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7조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운영)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하여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인명구조건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인명구조건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인명구조건 위원회의 설치)

1. 각 종 재난과 실종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수색 등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명구조건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인명구조건 위원회는 본 연맹 소속 훈련사 및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앙 119구조본부, 국민안전처, 군 관련 기관(이하 '정부 유관 기관' 이라 칭한다.) 등 에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인명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공익 실현에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인명구조건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인명구조건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인명구조건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건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명 구조건을 활용한 인명 구조 활동, 재난 현장 출동, 수색, 사체 탐지 등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인명 구조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우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인명구조건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인명구조건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인명구조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인명구조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인명구조건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인명구조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인명구조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인명구조건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 1) 본 연맹 소속 훈련사 중 인명 구조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공익 실현 의지를 가진 자.

- 2) 정부 유관 기관에 재직 중 이거나, 인명 구조, 마약, 폭발물 탐지 등 특수 목적건의 교육 및 운용과 관련한 경력을 보유한 자.

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에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위원의 선임

-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인명구조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위원의 해임

-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인명 구조와 관련한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건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인명구조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K-9 탐지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K-9탐지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K-9탐지견 위원회의 설치)

1. 각 종 마약, 수입금지품목 또는 폭발물 탐지 등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K-9 탐지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K-9 탐지견 위원회 위원은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앙 119구조본부, 국민안전처, 군 관련 기관(이하 '정부 유관 기관' 이라 칭한다.) 등 에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중 탐지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사회 공익 실현에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K-9탐지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K-9탐지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K-9탐지견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탐지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탐지견을 활용 안전사고의 예방,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정부 유관 기관 소속으로 K-9탐지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K-9탐지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K-9탐지견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K-9탐지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K-9탐지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K-9탐지견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K-9탐지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K-9탐지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K-9탐지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 1) 정부 유관 기관에 재직 중 이거나, 마약, 폭발물 탐지 등 탐지견의 교육 및 운용과 관련한 경력을 보유한 자.
- 2) 탐지견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확고한 신념과 사회 공익 실현 의지를 가진 자.

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회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위원의 선임

-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K-9 탐지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K-9탐지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K-9탐지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K-9탐지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탐지견 관련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9탐지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K-9탐지견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9탐지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K-9탐지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운영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운영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운영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 연맹 사무처 과장급 이상으로 전문 지식 및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정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운영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운영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연맹 사무처 운영 실무, 경영 효율성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및 기타 대외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우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운영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운영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운영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 1) 본 연맹 사무처 직원으로 재직 중 이거나, 퇴직한 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 2) 정부 및 유관 기관 또는 기업에 재직 중 이거나, 퇴직한 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

무 경력을 보유한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에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운영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 단, 상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사업 실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운영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산학협력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산학협력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산학협력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과 학교간 학술 공동 연구, 세미나의 개최,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본 연맹에 산학협력 위원회를 둔다.
2.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은 교육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반려동물 관련한 풍부한 강의 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전문 인재 양성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산학협력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산학협력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산학협력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관련 전문 분야의 학술 연구 및 세미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본 연맹과 산학협력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학교,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산학협력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산학협력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산학협력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건흥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산학협력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산학협력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산학협력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산학협력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산학협력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 1) 반려동물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 2)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확고한 사명감을 갖춘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회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회 선임

- 1) 위원회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회 해임

-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 단, 상설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산학협력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산학협력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사업 실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산학협력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산학협력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정책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정책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정책 위원회의 설치)

1. 동물보호법 등 유관 법률 및 제도 개선 제안 및 정책 제안과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의 참석 또는 개최를 위해 본 연맹에 정책 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 반려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전문 지식 및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정부, 국회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애견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정책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정책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정책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법 및 유관 법률의 개정, 입법 제안 및 각 종 정책 연구 및 제안
4. 정부, 국회, 언론사 및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동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및 국회, 언론사,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법률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정책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정책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정책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정책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정책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정책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정책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 1) 반려동물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맹 회원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자.
 - 2) 정부, 국회 및 유관 기관 또는 언론사에 재직 중 이거나, 퇴직한 자로 전문적인 정책 제안 능력 및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회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위원의 선임

-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 2) 총재의 직권으로 정책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정책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
 - 2) 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사업 실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정책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정책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설치)

1.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 정부,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 제안을 위해 본 연맹에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를 둔다.
2. 반려동물 산업위원회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 반려견 산업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전문 지식 및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연맹 산하 조직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업 및 협력 제의 및 공동사업
4.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및 지자체, 기업 관계자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2.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정책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 1)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맹 회원으로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2)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퇴직한 자로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에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설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사업 실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대외 홍보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대외 홍보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대외 홍보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의 사업과 도그쇼 및 각 종 대회에 대한 대외 또는 국제 홍보를 위해 본 연맹에
대외 홍보 위원회를 둔다.
2. 대외 홍보 위원회 위원은 본 연맹 홍보 대사, 회원 중 대외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
고 홍보와
관련한 전문 지식 및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본 연맹에 우호적인 외국인 또는 현지
교민,
본 연맹 산하 조직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대외 홍보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대외 홍보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대외 홍보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그쇼 및 각 종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후원 유치 또는 대외, 국제 홍보
업무
4.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대외 홍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홍보대사, 홍보 전문가의 경우 본 연맹
사업 홍보를 위한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대외 홍보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이내.
 - 3) 총 무 1명.

- 4) 회 계 1명.
- 5) 감 사 1명.
- 2. 대외 홍보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 3. 대외 홍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건중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 4. 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대외 홍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위원회 정책에 대해 감사한다.
 -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 1. 대외 홍보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감사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 3. 감사의 해임은 대외 홍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대외 홍보 위원회 위원)

- 1. 위원의 자격

1) 도그쇼 출진, 브리딩, 미용, 훈련 및 자격관련 업무 등에서 연맹에 종사하고 있는 연맹 회원

으로 홍보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2) 해외 거주 외국인 또는 교민으로 연맹에 우호적이고 홍보에 협조적인 자.

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직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대외 홍보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대외 홍보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대외 홍보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대외 홍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사업 실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외 홍보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대외 홍보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외 홍보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외 홍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조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조직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조직) 이 규정에서 조직이란 다음과 같다.

1. 협회.
2. 견종 연합회.
3. 지부.
4. 지회.
5. 클럽.

제3조 (회원유치 기준)

1. 조직별 회원유치 및 회원별 조직가입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협회 : 협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회원을 유치할 수 있으며 협회가 관할하는 지역별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견종 연합회 : 견종 연합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회원을 유치할 수 있으며, 견종 연합회가 관할하는 클럽을 구성할 수 있다.
 - 3) 지부 : 지부에서 유치한 회원은 지부소속 회원이 되며, 연맹에 직접 등록을 요청한 회원은 산하 조직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회원의 요청에 따라 타 산하조직으로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 4) 지회 : 지회에서 유치한 회원은 지회소속 회원이 되며, 연맹에 직접 등록을 요청한 회원은 산하 조직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회원의 요청에 따라 타 산하조직으로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 5) 클럽 : 클럽에서 유치한 회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클럽에 우선적으로 가입되며 회원의 요청에 따라 타 산하조직으로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2. 회원은 협회, 견종 연합회, 지부, 지회, 클럽 중 한 조직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중으로 중복 가입된 회원은 회원 의사에 따라 한곳으로 가입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하조직 선택 가입 후, 최소 1년간은 소속 변경을 할 수 없다.

제2장 협회

제4조 (협회의 자격과 설치) 협회는 한국애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1. 협회는 연맹 회원수가 50인 이상이며 자체 지역별 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으로 연맹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판단될 때 설립될 수 있다.
2. 협회는 예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 협회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협회 사무소는 다음 서류 및 장부를 회장의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예하 지회 명부.
 - 2) 협회 임원명부.
 - 3) 회계장부.
 -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5. 협회 설치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소속 회원의 본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협회 가입 신청서.
 - 2) 협회 조직도 및 임원 명단.
 - 3) 소속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의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회원 전체명단 제출.
 - 4) 협회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 5) (삭제)
 - 6) 협회장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사진2매)
 - (2) 주민등록등본 1통.

제5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협회장은 연맹의 총회 소집 전 유효 정회원과 평생회원의 합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6조 (명칭)

1. 협회는 그 명칭에 연맹의 공인 명칭과 해당하는 협회 명을 붙여서 사용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 협회
2.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협회의 소속) 협회는 연맹에 소속한다.

제8조 (회비의 징수) 협회는 연맹 규정에 준하여 회비 및 각종 발급 수수료 등을 징구(徵求)하고, 별도 협약에 의해 보조비 지원을 받는다.

제9조 (사업과 업무) 협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협회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할하는 지회에서의 신청 . 보고의 심의와 본 연맹의 신청 . 보고에 관한 사항.
3. 적극적인 회원유치 활동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맹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자체사업과 업무 사항.

제10조 (임원의 인원수)

1.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5명 이내.
4) 총무	1명.
5) 회계	1명.
6) 감사	2명.
2. 협회의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협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협회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13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협회의 임원은 협회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협회 회장은 협회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 2) 제10조 제1항 2)부터 6)까지의 임원은 협회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서면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협회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4. 협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해임은 협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임원회의 구성으로 회장 .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집행한다.
6.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 협회의 회장만이 사무처가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협회 회원의 성명, 회비 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행사 개최) 협회장은 전람회 또는 각종 행사개최에 있어 본 연맹의 [행사 승인 및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5조 (보고)

1. 회장은 협회, 관할하는 지회 및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연맹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맹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 2) 협회 임시총회 소집을 연맹 총재 명으로 행할 것.
 - 3) 이사회 의결에 따라 협회의 기능을 동결 혹은 해산을 명할 것.

제16조 (명예임원)

1. 협회는 명예임원으로 고문 약간 명 . 상담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 상담역은 협회장이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개최)

1. 협회 총회는 협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협회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협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협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협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9조 (상임위원회)

1. 협회 상임위원회는 협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협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 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협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및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협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산의 구성과 관리)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2. 연맹에서의 조성금.
3. 기부금품 · 기타 수입.
4. 여러 시설 · 기재.

제23조 (회계) 협회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 (자격의 상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협회의 회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협회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 1) 협회가 최초 가입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2) 협회가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25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협회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협회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장 견종 연합회

제26조 (견종 연합회의 자격과 설치)

1. 견종 연합회는 한국애견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종(犬種)의 단견종(單犬種) 클럽 활동조직으로 연맹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2. 견종 연합회는 5개 클럽 이상의 단견종 클럽이 모이면 조직할 수 있다.
단, 연맹 회원수가 50인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연맹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3. 견종 연합회는 예하에 단견종 클럽을 둘 수 있다.
4. 견종 연합회는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5. 견종 연합회는 다음 서류 및 장부를 회장의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예하 클럽 명부.
 - 2) 견종 연합회 임원명부.
 - 3) 회계장부.
 -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6. 견종연합회 설치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소속 회원의 본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견종연합회 가입 신청서.
 - 2) 견종연합회 조직도 및 임원 명단.
 - 3) 소속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의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회원 전체 명단 제출.
 - 4) 견종연합회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 5) (삭제)
 - 6) 견종연합회장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사진2매)
 - (2) 주민등록등본 1통.

제27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견종연합회장은 연맹의 총회소집 전 유효 정회원과 평생 회원의 합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28조 (견종연합회의 소속) 견종 연합회는 연맹에 소속한다.

제29조 (명칭)

1. 건중 연합회는 연맹의 공인 명칭과 해당하는 건중 연합회 명을 붙여서 사용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 연합회
2.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 (회비의 징수)

1. 건중 연합회는 소속하는 클럽의 연회비 중 일부가 연맹에서 지원되어 운영비로 충당한다.
2. 클럽이 없는 경우는 회원을 직접 관리하며 운영비는 별도의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31조 (사업과 업무) 건중연합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건중 연합회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할하는 클럽에서의 신청 . 보고의 심의와 연맹의 신청 . 보고에 관한 사항.
3. 적극적인 클럽 유치활동 및 클럽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 (임원의 인원수)

1. 건중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이내.
 - 3) 총무 1명.
 - 4) 회계 1명.
 - 5) 감사 1명.
2. 건중 연합회의 임원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33조 (임원의 임기)

1. 건중 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건중 연합회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35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연합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건중 연합회의 임원은 건중연합회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건중연합회 회장은 건중연합회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 2) 제32조 제1항 2)부터 5)까지의 임원은 건중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그 결과를 서면을 통해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중연합회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건중연합회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4. 건중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해임은 건중연합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35조 (임원의 직무)

1. 건중연합회 회장은 건중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건중연합회 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임원회의 구성으로 연합회장 · 연합회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집행한다.
6.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 건중연합회의 회장만이 사무처가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건중연합회 회원의 성명, 회비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행사 개최) 건중연합회 회장은 전람회 또는 각종 행사개최에 있어 본 연맹의 [행사 승인 및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7조 (보고)

1. 건중연합회 회장은 건중 연합회, 관할하는 클럽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연맹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맹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 2) 건중 연합회 임시총회 소집을 연맹 총재 명으로 행할 것.
 - 3)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건중 연합회의 기능을 동결 혹은 해산을 명할 것.

제38조 (명예임원)

1. 건중 연합회는 명예임원으로 고문 약간 명 . 상담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 상담역은 연합회장이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클럽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9조 (총회)

1. 건중 연합회 총회는 건중 연합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건중 연합회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연합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연합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 (총회의 의결사항)

1. 건중 연합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41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연합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 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중 연합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3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및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연합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 (자산의 구성과 관리) 건중 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구성하고 연합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2. 연맹에서의 조성금.
3. 기부금품 · 기타 수입.
4. 여러 시설 · 기재.

제45조 (회계) 건중 연합회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6조 (자격의 상실) 건중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 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건중 연합회의 회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건중연합회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 1) 건중연합회가 최초 가입 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협조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2) 건중연합회가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47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건중 연합회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건중 연합회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장 지부

제48조 (지부의 자격과 설치)

1. 지부는 행정 구역(도, 광역시, 시, 군 등)별로 해당 지역 및 국내에 거주하는 연맹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맹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단,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부터 보조비 지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지부는 연맹의 공인 명칭과 관할하는 지역 명을 붙여서 사용 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지부
3. 지부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지부 사무소는 다음 서류 및 장부를 지부장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 1) 지부 임원명부.
 - 2) 지부 회원명부.
 - 3) 회계장부.
 -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5. 지부 설치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소속 회원의 본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지부 가입 신청서.
 - 2) 지부 조직도 및 임원 명단.
 - 3) 소속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의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회원 전체 명단 제출.
 - 4) 지부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 5) (삭제)

- 6) 지부장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사진2매)
 - (2) 주민등록등본 1통.
6.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9조 (지부의 소속) 지부는 연맹에 소속한다.

제50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지부는 연맹의 총회소집 전 유효 정회원과 평생회원의 합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51조 (사업과 업무) 지부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지부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전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진행사항.
4.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제52조 (임원의 인원수)

1. 지부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지부장 1명.
 - 2) 부지부장 2명 이내.
 - 3) 총무 1명.
 - 4) 부총무 1명.
 - 5) 회계 1명.
 - 6) 감사 1명.
 - 7) 사무처장(필요한 경우) 1명.
2. 지부의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53조 (임원의 임기)

1.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지부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55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지부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4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지부의 임원은 관할하는 지부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지부장은 지부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 2) 제52조 제1항 2)부터 7)까지의 임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서면을 통해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지부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4. 지부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해임은 지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55조 (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지부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지부장 . 부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6. 감사는 지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7.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8. 지부의 지부장만이 사무처가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지부 회원의 성명, 회비 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 (행사 개최) 지부장은 전람회 또는 각종 행사개최에 있어 본 연맹의 [행사 승인 및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7조 (보고)

1. 지부장은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연맹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 2) 지부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58조 (명예임원)

1. 지부는 명예임원으로 명예회장 .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역은 지부장이 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9조 (총회)

1. 지부 총회는 지부 회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2. 지부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지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하였을 때 지부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0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지부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61조 (의사록의 보고) 지부 총회의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지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 (회계) 지부의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3조 (자격의 상실) 지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지부의 회원 수가 20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지부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 1) 지부가 최초 가입 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 하지 아니 할 때.
 - 2) 지부가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4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지부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지부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장 지회

제65조 (지회의 자격과 설치)

1. 지회는 지역별 조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연맹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맹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단,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부터 보조비 지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지회는 연맹의 공인 명칭을 붙이고 관할하는 지역 명을 붙여서 사용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지회
3. 지회는 지회장 또는 총무의 주소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4. 지회 사무소는 다음 서류 및 장부를 지회장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지회 임원명부.
 - 2) 지회 회원명부.
 - 3) 회계장부.
 -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5. 지회 설치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소속 회원의 본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지회 가입 신청서.
 - 2) 지회 조직도 및 임원 명단.
 - 3) 소속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의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회원 전체 명단 제출.
 - 4) 지회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 5) (삭제)
 - 6) 지회장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사진2매)
 - (2) 주민등록등본 1통.
6.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6조 (지회의 소속) 지회는 연맹에 소속한다.

제67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지회는 연맹의 총회소집 전 유효 정회원과 평생회원의 합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68조 (사업과 업무) 지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지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전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진행사항.
4.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제69조 (임원의 인원수)

1. 지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지회장 1명.
 - 2) 부지회장 2명 이내.
 - 3) 총무 1명.
 - 4) 부총무 1명.
 - 5) 회계 1명.
 - 6) 감사 1명.
 - 7) 사무처장(필요한 경우) 1명.
2. 지회의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70조 (임원의 임기)

1.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지회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72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지부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지회의 임원은 관할하는 지회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지회장은 지회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 2) 제69조 제1항 2)부터 7)까지의 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서면을 통해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회 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지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4. 임원의 해임은 지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72조 (임원의 직무)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지회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지회장 . 부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6. 감사는 지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7.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8. 지회의 지회장만이 사무처가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지회 회원의 성명, 회비 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행사 개최) 지회장은 전람회 또는 각종 행사개최에 있어 본 연맹의 [행사 승인 및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74조 (보고)

1. 지회장은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연맹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 2) 지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75조 (명예임원)

1. 지회는 명예임원으로 명예회장 .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역은 지회장이 지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6조 (총회)

1. 지회 총회는 지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지회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지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지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7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지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78조 (의사록의 보고) 지회 총회의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지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 (회계) 지회의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80조 (자격의 상실) 지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지회의 회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지회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 1) 지회가 최초 가입 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 할 때.
 - 2) 지회가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1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지회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지회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장 클럽

제82조 (클럽의 자격과 설치) 클럽은 다음에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연맹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맹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단,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부터 보조비 지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1. 클럽은 전국적인 모임으로 형성되며 신규 회원 수 10인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정수'라 한다) 단, 10인 미만일 경우에도 총재의 허가에 의해 조건부인가는 가능하다.
2. 클럽은 그 명칭에 연맹의 공인 명칭을 붙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클럽
3. 클럽은 클럽회장 또는 총무의 주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클럽은 다음 서류 및 장부를 회장의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클럽 임원명부.
 - 2) 클럽 회원명부.
 - 3) 회계장부.
 -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5. 클럽 설치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소속 회원의 본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클럽 가입 신청서.
- 2) 클럽 조직도 및 임원 명단.
- 3) 소속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의 연맹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회원 전체 명단 제출.
- 4) 클럽회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 5) (삭제)
- 6) 지회장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사진2매)
 - (2) 주민등록등본 1통.
6.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3조 (클럽의 소속) 클럽은 연맹에 소속한다.

제84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클럽은 연맹의 총회소집 전 유효 정회원과 평생회원의 합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85조 (클럽의 구분)

1. 클럽은 모든 건종 클럽, 그룹 클럽, 단견종 클럽, 훈련사 클럽, 어질리티 클럽 및 기타 클럽으로 구분한다.
2. 그룹 클럽 . 단견종 클럽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그 건종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3. 훈련사 클럽의 회장은 연맹이 인정하는 공인 훈련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86조 (사업과 업무) 클럽은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클럽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단견종 또는 건종군 스페셜티쇼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진행사항.
4.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제87조 (임원의 인원수)

1. 클럽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이내.
 - 3) 총무 1명.
 - 4) 부총무 1명.
 - 5) 회계 1명.
 - 6) 감사 1명.
2. 클럽의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88조 (임원의 임기)

1. 클럽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클럽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91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클럽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9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클럽의 임원은 클럽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클럽 회장은 클럽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 2) 제87조 제1항 2)부터 6)까지의 임원은 클럽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서면을 통해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클럽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0조 (임원의 해임)

1. 클럽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클럽 임원의 해임은 클럽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91조 (임원의 직무)

1. 클럽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고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클럽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클럽회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클럽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클럽회장 . 클럽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6. 감사는 클럽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7.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8. 클럽의 회장만이 사무처가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클럽 회원의 성명, 회비 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2조 (행사 개최) 클럽회장은 전람회 또는 각종 행사개최에 있어 본 연맹의 [행사 승인 및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3조 (보고)

1. 클럽회장은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연맹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 2) 클럽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94조 (명예임원)

1. 클럽은 명예임원으로 명예회장 .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역은 클럽회장이 클럽 총회의 승인을 받아 클럽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5조 (총회)

1. 클럽 총회는 클럽 회원으로 구성하며, 클럽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클럽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클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클럽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클럽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6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클럽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97조 (의사록의 보고) 클럽 총회의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클럽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8조 (회계) 클럽의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클럽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99조 (자격의 상실) 클럽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클럽의 회원 수가 10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클럽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 1) 클럽이 최초 가입 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협조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2) 클럽이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0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클럽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클럽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0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4일

개정 2004년 12월 22일

일부개정 2005년 2월 19일(제2장 9조, 14조)

일부개정 2005년 6월 18일(제2장 14조 2항)

일부개정 2006년 9월 16일(제78조, 81조, 84조, 89조, 90조, 96조, 101조, 138조, 147조, 164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80조)

전면개정 2011년 2월 19일 (정관 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전면개정 2013년 2월 26일 (제3조 2항)

일부개정 2014년 2월 13일 (제4조, 6조, 12조, 13조, 26조, 29조, 34조, 35조, 48조, 54조, 55조, 65조, 71조, 72조, 82조, 89조, 91조, 서약서)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3조, 4조, 26조, 48조, 65조, 82조)

일부개정 2016년 2월 17일(제2장 24조, 제3장 46조, 제4장 63조, 제5장 80조, 제6장 99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4조 5항, 제5조, 10조 1항, 12조 1항, 14조, 26조 6항, 제27조, 34조 1항, 36조, 48조 5항, 54조 1항, 56조, 65조 5항, 71조 1항, 73조, 82조 1항, 89조 1항, 92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4조 5항, 제5조, 제26조 6항, 제27조, 제48조 5항, 제50조, 제65조 5항, 제67조, 제82조 5항, 제84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별지 1]

서 약 서

산하 조직명 : _____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1. 상기 본인은 귀 연맹 산하 조직으로 가입하여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연맹 운영 방침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귀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겠으며, 연맹 소속 산하 조직의 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연맹 산하 조직의 장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 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무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본인은 연맹 산하조직의 장으로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임기동안 산하조직의 활성화와 연맹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5. 본인으로 하여금 연맹과 산하조직에 누를 끼쳤을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퇴하며 본 연맹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산하조직 장으로써 다수 회원들의 원할한 연락 유지를 위해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애견연맹 홈페이지 조직도 상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연맹 산하조직의 장으로써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8. 본인은 산하 조직 구성시 소속 회원 모두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한 후 조직 구성을 하였으며, 추 후 산하 조직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조직 구성을 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_____ (인 또는 서명)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귀중

[별지 2]

행사 개최 승인 요청서

※ 행사 개최 요청서는 행사 개최 일 기준 최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 도그쇼 개최의 경우 개최 수수료를 대회 후 출진두수에 따라 연맹 사무처에 납입하여야 함.

(스페셜티쇼 두당 ₩3,000, 전견종쇼 두당 ₩3,000, A2O CS 개최의 경우 기존 전 견종 도그쇼 승인료 외 출진 1두당 3,000원의 승인료 추가 부과)

※ 행사 승인 허가시 별도 통보함.

구 분	내 용			
행사종류 (해당 ☐ 란에 √표 하세요)	☐ A2O CS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쉽쇼) ☐ KKF 코리안 챔피언십 도그쇼 ☐ KKF 스페셜티쇼 (견종명 : _____) ☐ 각종 경기대회 (행사명칭 : _____) (☐ 훈련경기대회, ☐ IGP, ☐ 애견미용사/핸들러 자격관련대회, ☐ 기타) ☐ 세미나 (명칭 : _____)			
개최희망일자	1안	20 년 월 일	2안	20 년 월 일
개최지역			장소명	
주 최			주 관 (변동없음)	사)한국애견연맹
후 원			협 찬	
장소형태	☐ 실내 , ☐ 실외		면 적	_____ m ² , _____ 평
주차가능대수	약 _____ 대		주차비	☐ 유료 , ☐ 무료 ※ 유료일 경우 1일 종일 주차기준 ₩ _____ 원
대회장 성명			대회장 직책	
초청 심사위원	총 _____ 명 초청희망		초청 희망국 ※복수 기재 가능	
예상 출진두수	약 _____ 두		기타사항	
행사 책임자	성 명 : _____ , 연락처 : _____			

위와 같은 일정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승인을 바랍니다.

승인 요청일 : _____ 년 월 일

성 명 : _____ , 서 명 : _____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귀중

[별지 3]

행사 주최자 의무 이행 서약서

단 체 명 : _____

주 소 : _____

성 명 (행사 주최자) : _____

1. 상기 본인은 귀 연맹 산하 조직으로 KKF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주최 행사의 진행에 있어 연맹 운영 방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본 행사의 진행에 있어 귀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아니 하겠으며, 행사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3. 본인은 도그쇼 행사 종료 후 연맹 사무처에 승인료를 납부하겠습니다.
(스페셜티쇼의 경우 출진 1두당 ₩2,000, 전견종쇼의 경우 출진 1두당 ₩3,000, A2O CS 개최의 경우 기존 전 견종 도그쇼 승인료 ₩3,000외 출진 1두당 ₩3,000의 승인료가 추가 부과됨. ※ 프로그램 책자 출진두수 기준으로 납부.)
4. 본인은 행사 주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행사가 취소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 연맹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_____ (인)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귀중

행사 승인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행사 승인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목적) 한국애견연맹 행사 개최를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 절차,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신청

제3조 (신청 대상) 본 연맹 행사 승인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산하 위원회.
2. 산하 협회, 견종연합회, 지부, 지회, 클럽.

제4조 (승인대상 행사) 제3조의 신청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본 연맹의 행사개최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연맹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2. 본 연맹 전람회 규정 제2조(도그쇼의 종류)에 포함되는 행사
3. 각 종 경기대회 및 세미나 등
4. 그 밖에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신청 절차) 제4조(승인대상 행사)에 해당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제3조(신청 대상은)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사 개최 승인 요청서(별지 1호 서식)
2. 서약서(별지 2호 서식)
3. 행사계획서(수입·지출 포함)
4. 안전대책계획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6조 (검토 및 승인) 행사 개최 승인은 사무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개최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1. 행사 목적이 본 연맹 규정과 합치되는지 여부
2. 본 연맹 주최 행사 및 업무의 지장 여부

제7조 (명칭)

1. 주회는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또는 본 연맹이 행사 주회를 승인한 조직을 말한다.**
2. 주관은 행사를 진행하는 제3조(신청 대상)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본 연맹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별도의 단체명, 브랜드,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신청한 내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연맹은 이를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조 (행사준비) 행사주관은 심사위원·스튜어드·강사 섭외, 장소 대관, 시설 및 물품 등 전반적인 행사 준비를 해야 한다.

1. 행사 준비는 본 연맹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본 연맹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여 공동 진행한다.
3. 제3조(신청 대상)의 단독 행사 운영 시 단독으로 진행한다.
4. 인쇄물(책자, 포스터, 증서, 현수막 등), 제작물(로제트, 리본 등)은 본 연맹 사무처의 사전 확인 후 제작할 수 있다.

제9조 (행사운영)

1. 행사운영은 본 연맹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행사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또는 주관하는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제10조 (승인료)

1. 도그쇼 행사 개최 시 프로그램 책자 출진 두수를 기준으로 본 조 1항부터 3항에 해당되는 승인료를 연맹에 납부해야 한다.
 - 1) 스페셜티쇼의 출진 1두당 ₩3,000
 - 2) 전 견종 도그쇼의 경우 출진 1두당 ₩3,000
 - 3) A2O CS 개최의 경우 기존 전 견종 도그쇼 승인료 외 출진 1두당 3,000원의 승인료 추가 부과
2. 본 연맹 산하조직이 어질리티 행사 개최 시 결과 보고서 상의 출진 두수를 기준으로 본 조 1항에 해당되는 승인료를 연맹에 납부해야 한다.
 - 1) 어질리티 경기대회 점핑, 어질리티 클래스 출진 1경기당 ₩3,000
3. 승인료는 해당행사 개최일 전에 납입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지연 가산금을 부과한다.
 - 1) 행사 종료 7일 이내 미 납입 시 : 지연 가산금 10% 부과
 - 2) 행사 종료 15일 이내 미 납입 시 : 지연 가산금 30% 부과
 - 3)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미 납입 시 : 지연 가산금 50% 부과 및 차후 행사 승인 제한

제11조 (결과보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연맹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차후 행사 승인이 제한된다.

1. 행사 결과 보고서
2. 행사 보고 내용
 - 1)행사 수입 지출 내역서
 - (1) 도그쇼 상력 결과 취합
 - (2) 세미나 교육 이수증 발급 현황
 - (3) 각종경기대회 검정결과 및 수상내역
3.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관련 특이사항
4. 명칭 사용 내용

제12조 (승인취소) 총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행사개최 승인을 불허 할 수 있다.

1. 본 연맹 규정을 위반하는 행사를 운영한 경우.
2. 명칭 변경 및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한 경우.
3.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승인료 미 납입 및 결과보고 미 이행할 경우
4. 행사 결과 데이터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제13조 (지도감독)

1. 연맹은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10조)

클럽 모델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클럽 모델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명칭) 본 클럽은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하 'KKF'라 한다) ○○클럽이라 한다.

제3조 (목적) 본 클럽은 KKF의 목적에 부합하며 그 사업에 협력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동물 애호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본 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KKF 회원의 등록 및 혈통서 등록.
2. 도그쇼 주최 (단견종 스페셜티쇼 . 견종군 스페셜티쇼)
3. 연수회 . 강습회.
4.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
5. 기타 연맹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년도) 사업년도는 1년으로 하고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6조 (사무소)

1. 본 클럽은 사무소를 ○○시○○구(회장 . 총무)에 둔다.
2. 사무소에는 다음 서류 및 문서를 클럽 회장의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회원명부.
 - 2) 임원명부.
 - 3) 금전출납부.
 -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 본 클럽은 KKF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회원

제8조 (입회) 클럽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에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클럽에 제출하고, 클럽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폭력적인 불법행위를 집단적 · 상습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관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입회할 수 없다.
2. 대표는 입회를 승인한 자의 입회신청, KKF 입회금, 회비를 규정에 따라 KKF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비)

1. 회비는 매년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2. 회비의 납입이 지체된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회비 기한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납입한 자는 입회금이 면제된다.
3. 기타 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정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성명 . 주소의 신고) 회원은 성명 .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본 클럽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적)

1. 회원은 지부 및 새로이 소속하고자 하는 클럽의 승인을 받아서 이적할 수 있다.
2. 클럽이 이적 접수를 승인한 회원의 회비 잔존기간은 클럽에서 유효하다.

제12조 (탈퇴 .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으로부터 탈퇴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2. 회비의 납입이 지체되었을 때.
3. 입회 절차 후에 제8조 제2항에 위반하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4. 사망했을 때.

제13조 (규정의 준수) 회원은 클럽의 여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1) 클럽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클럽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3) 클럽의 체면을 손상하고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 4) 연맹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자격정지.
3. 경고 . 자격정지는 클럽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3장 임원 등

제15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1. 클럽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부총무	1명 이상 2명 이내.
5) 회계	1명.
6) 감사	1명.
2. 클럽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16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제19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1. 클럽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 1) 회장 . 부회장 . 총무(이하 '회장단'이라 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제15조 제1항 4)부터 5)까지의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2. 회장은 연령 만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3. 회장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클럽의 임원이 아닌 자로 한다.
4. 선출된 임원 중 클럽 회장은 연맹 총재가 임명한다.
5. 선임된 임원 선출 명단은 애견연맹 사무처에 임원 선출 회의록과, 선출된 회장의 이력서(사진 2매 포함), 주민등록등본, 조직도, 회원명부를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및 상벌규정의 적용)

1. 클럽 회장의 해임은 연맹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클럽 임원의 해임은 클럽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3. 연맹 상벌규정의 적용
 - 1) 클럽의 회원은 클럽의 내부 규정 뿐 아니라, 연맹 회원으로써 연맹 상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2) 클럽 임원 중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직책이 상실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1. 클럽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고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클럽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클럽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지회장 . 부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6. 감사는 클럽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20조 (행사의 인가) 클럽회장은 전람회 또는 경기대회의 개최에 있어 본 연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행사 승인 요청서와 행사 주최자 의무 이행 서약서를 본 연맹에 제출한 후 본 연맹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보고)

1. 클럽회장은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연맹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 2) 클럽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22조 (명예임원)

1. 클럽은 명예임원으로 명예회장 .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역은 클럽회장이 클럽 총회의 승인을 받아 클럽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3조 (총회)

1. 클럽 총회는 클럽 회원으로 구성하며, 클럽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클럽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본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클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클럽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클럽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클럽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25조 (의사록의 보고) 클럽 총회의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클럽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 클럽의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본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하며 클럽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장 자산의 구성과 관리

제27조 (자산의 구성과 관리) 클럽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구성하고, 클럽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2. 본 연맹에서의 조성금.
3. 기부금품 · 기타 수입.
4. 여러 시설 · 기재.

제6장 부칙

제28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클럽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클럽 규정은 본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6년 9월 16일(제1조, 4조)

전면개정 2011년 2월 19일 (정관 변경에 따른 전면개정)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6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사무처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20조에 근거 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하 '연맹' 이라 한다.)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명칭은 사무처라 하며 사무총장 예하에 기획·재정국과 기술사업국을 둔다. 총재는 사무처 예하 업무 부서 및 팀을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각 국 예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 (목적) 사무처는 연맹의 사업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4조 (사업연도) 사무처의 사업연도는 매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임명 및 채용) 사무총장 및 예하 국장, 부장은 총재가 임명하고, 부서의 필요한 인원은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1. 사무총장은 경륜과 인품을 갖춘 연맹 직원 중 총재가 임명한다.
2. 사무처 각 국 예하 부서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재 책임 하에 연맹내규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6조 (임무) 각 직책에 따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 : 총재를 보좌하여 사무처 내 각 국 및 소속 팀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한다. 또한 각 국 및 예하 팀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2. 국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각 국 예하의 팀 내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팀별 업무 진행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직원이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사무총장 부재 시 기획재정국장, 기술사업국장 순으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3. 부장 : 각 팀별 업무 감독자로, 업무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 면밀히 지도 점검한다. 국장 부재 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4. 차장/과장 : 팀장급 책임자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팀을 통솔하여야 한다. 팀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장려하며, 각 팀 중간 관리자 및 팀원의 실무 및 업무 진행과정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한다.
5. 대리, 주임 : 팀 내 중간 관리자로서 실무 업무에 정통하여야 하며, 예하 직원에 대한 교육과 동기 부여를 통해 소속 팀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6. 사원 : 업무 분장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 규정 및 연맹 내규를 준수하며, 담당 업무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편성) 사무처 예하 각 국 및 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사무처 예하 2국(기획·재정국, 기술사업국)을 편성 운영한다.
2. 기획·재정국 예하 4팀(전략기획팀, 재경팀, 국제·홍보팀, 학술교류팀)을 편성 운영한다.
3. 기술사업국 예하 3팀(회원관리팀, 견적등록팀, 자격사업팀)을 편성 운영한다.
4. 상기 직제 외 특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총재의 재가들 얻어 별도 부서나 팀을 임시로 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기획·재정국 및 기술사업국 예하 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부여하며, 업무별 상세 내용은 연맹 내규에 따른다.

1. 기획·재정국

1) 전략기획팀

- (1) 기획 업무
- (2) 조직운영 업무
- (3) 이사회 및 총회 업무
- (4) 인사관리 업무
- (5) 업무분장 업무
- (6) 행사 참여 인원 배정 및 조정
- (7) 문서관리 업무

- (8) 법무 업무
- (9)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업무
- (10)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 재경팀

- (1) 재무관리 업무
- (2) 자산관리 업무

3) 국제·홍보팀

- (1) 국제 업무
- (2) 홍보 업무
- (3) 행사 기획 및 진행 업무
- (4) 공익사업 기획 및 운영
- (5) 챔피언 등록 업무

4) 학술교류팀

- (1) 교육 및 세미나
- (2) 산학 협력 및 교류 업무
- (3) 교재 출판 및 콘텐츠 제작
- (4) 협력기관 신규 유치
- (5) 신 자격 사업 업무
-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응 업무

2. 기술사업국

1) 회원관리팀

- (1) 회원 상담 및 서비스 개선 업무
- (2) 접수 업무
- (3) 각 종 통계 분석 및 결산 업무

2) 견적등록팀

- (1) 혈통 등록업무
- (2) 국제 견사호 신청 및 등록
- (3) 견종 스탠더드 최신화 및 현장 적용 업무
- (4) 견적관련 통계 분석 및 결산 업무

3) 자격사업팀

- (1) 기획 및 결산업무
- (2) 자격관련 산하 조직 관리업무
- (3) 자격관련 실무 업무

제9조 (권한)

- 1. 사무총장 예하 국장 및 업무 부서장과 각 팀의 장으로 임명받은 자는 업무의 처리에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맡은 분야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부여받아 모든 일의 처리는 능동적이어야 한다.
- 2.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정관 및 제 규정과 연맹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1년 12월01일.
- 개정 2004년 7월16일.
- 전면개정 2017년 2월 15일.
-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견적(犬籍) 등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에 근거 견적등록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견적등록) 견적등록은 다음 등록에 따라 행한다.

1. 일태자견 등록

부·모견에서 태어난 자견의 혈통 등록

2. 타단체 혈통서 전환 등록

- 1) FCI 가맹 단체 및 외국 협약 단체에서 발행한 혈통서를 연맹 혈통서로 전환 등록
- 2) 본 연맹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행한 혈통서를 연맹 혈통서로 전환 등록

3. 가견적 등록

국제 공인 혈통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견의 등록

제2장 일태자견(一胎子犬) 등록

제3조 (일태자견 등록 구분) 일태자견 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간내 등록

생후 1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간이 지난 등록

- 1) 생후 1년 이후에 출생한 견을 등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증명서를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필 작성하여야 하며 연맹 사무처에서 검토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 2) - 삭 제 -
- 3) 출생한지 2년 이상 된 견에 대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DNA 검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생후 4년 이하일 경우에 한해 일태자견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제4조 (일태자견 등록의 신청자) 일태자견 등록의 신청자는 그 번식자로 한다.

제5조 (강아지 및 양친견의 조건) 일태자견 등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동일견종의 교배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일 것.
2. 국내에서 태어난 강아지일 것.
3. 모견은 일태자견 등록 신청 시에 본 연맹의 등록견일 것.
4. 부견은 자견 등록 신청 시에 본 연맹 등록견 . 본 연맹이 인정하는 단체 및 외국 공인 단체 등록견일 것.
5. 셰퍼드 견종과 로트바일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견종은 교배 시 생후 12개월 1일 이상이어야 한다.
6. 독일 셰퍼드 견종은 교배 시 생후 수컷은 24개월 1일 이상, 암컷은 18개월 1일 이상의 견이어야 한다. (현재 SV 종견 인정 규정에 의함)
7. 로트바일러 견종은 교배 시 생후 수컷은 20개월 1일 이상, 암컷은 18개월 이상의 견이어야 한다.
8. 국내가 원산지인 견이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국내에서 출생한 견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혈통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행한다.
9. 모견은 전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교배가 가능하며, 출산과 출산 사이에 최소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6조 (번식자) 번식자란 자견(子犬)을 출산한 모견의 소유자로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번식자는 자견 등록의 신청 시에 견사명(犬舍名)이 본 연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번식자는 일태자견 등록의 신청 시에 본 연맹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번식자는 견종간 버라이어티 교배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번식을 자제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상습 신청 및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되는 버라이어티 일태자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부견 소유자 . 교배증명서) 부견 소유자는 교배한 모견 소유자에게 교배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은 생후 120일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후 1년 이내를 한도로 한다.
단, 신분이 분명한 소유자가 혈통 등록과 관련하여 차후 발생 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자필 사실 확인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본 연맹 요금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자건을 등록할 수 있다.
2. 등록 신청은 등록건의 소유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등록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와 교배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부견이 연맹이 인정하는 단체 및 외국공인단체 등록건인 경우는 부견의 혈통 증명서 사본을 필요로 하며, 필히 교배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출생건의 소유자는 본 연맹이 필요로 할 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일태자건 신청 시 동태건이 6두 이상일 경우에는 필히 관련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6. 부견의 동결 . 저온 정액을 통한 교배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관련서류를 검토 후 일태자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7. 정확한 혈통감정을 위해 부견의 동결 . 저온 정액을 통한 교배시 필요할 경우 사무처에서는 해당 부견, 모견, 자건의 DNA검사 결과를 소유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혈통 등록은 불가하다.
8. 부견의 동결 . 저온 정액을 통한 교배로 등록되었으나 차후 혈통관련 부정이나 문제가 적발 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모든 건의 혈통은 즉시 취소될 수 있다.
9. 120개월 1일 이상 부견의 교배확인이나, 108개월 1일 이상 모견의 일태자건 신청시, 교배 및 출산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의사 또는 번식감리위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본 연맹은 혈통 등록 신청에 의심스러운 현상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에게 생식기 사진 또는 DNA, 기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경우 등록을 불허 할 수 있다.

제9조 (자건의 견명)

1. 동일 견사가 동일 견명을 붙여서 신청한 경우는 이 견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2. 견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 견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3. 견명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콜 네임(CALL NAME)의 삽입 및 삭제는 허용한다.
단, 콜 네임의 문자 수는 알파벳 10글자로 제한하며, 위치는 전체 견명의 맨 끝에 위치한다.

4. 견명의 문자수는 견사명을 합하여 알파벳 35문자(스페이스 포함) 이내로 한다.
단, 콜 네임이 기재될 경우 알파벳 45문자(스페이스 포함)까지 허용한다.
5. 삭제

제3장 혈통서 전환 등록

제10조 (혈통서 전환 등록의 구분) 연맹이 인정하는 국내.외 단체에서 발급한 혈통서의 전환.

제11조 (혈통서 전환 등록의 조건)

1. 본 연맹이 인정하는 단체의 등록건이어야 한다.
2. 등록한 견종은 FCI 공인 견종 . AKU 공인견종 . 본 연맹 공인견종으로 한다.

제12조 (공인단체 . 지정단체) 공인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애견연맹(FCI) 가맹단체
2. 아시아애견연맹 (AKU) 가맹단체
3. 아메리칸 켄넬클럽(AKC)
4. 영국 켄넬클럽(KC)
5. 캐나다안 켄넬클럽(CKC)
6. 기타 본 연맹이 인정하는 단체.

제13조 (소유자) 등록건의 소유자는 본 연맹의 회원으로 한다.

제14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은 등록건의 소유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혈통 등록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사용하여 공인단체 또는 지정단체가 발행한 혈통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산 혈통을 등록할 경우, 등록 신청자는 연맹에서 정한 수입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외산 혈통서상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건의 국내 등록에 동의한다는 공동 소유자의 동의서 및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외산건은 등록할 수 없다.
4.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혈통서 상의 소유자가 국내 소유자 1인으로 명시된 혈통서에 한 해 전환 등록이 가능하다.

5. 외산 혈통서의 경우, FCI 회원 단체 및 AKC, KC, CKC에서 발행한 수출용 혈통서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조상권이 모두 상기 단체 등록번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만 국제공인으로 인정된다(FCI 비인증단체 번호가 포함된 경우 웨이팅리스트로 발행).

제4장 가견적 등록

제15조 (가견적 등록의 구분)

1. 4대의 혈통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
2. 연맹이 인정하지 않는 타 단체의 등록견.
3. FCI 회원이 아닌 국가나 연맹 등록 규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단체에서 발행된 견

제16조 (자견의 조건) 동일 견종의 교배에 의해 태어난 자견 일 것.

제17조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은 등록견의 소유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부모 견의 혈통이 불확실한 견의 경우 소정의 신청양식과 전면·측면 사진을 동봉하여 함께 신청한다.
3. 단독견 등록의 경우 해당견의 연령은 9개월 1일 이상 108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며, 108개월 1일 이상일 경우 신청자는 DNA 검사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단, 9개월 1일 이상일 경우에도 성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장 견적 등록 증명서

제18조 (견적 등록 증명서의 발행)

1. 일태자견 등록 . 혈통서 교체 . 가견적 등록은 등록 완료 후 견적등록 증명서를 발행한다.
2. 견적 등록 증명서의 송부처는 일태자견 등록의 경우는 번식자, 혈통서 교체 등록의 경우는 소유자로 한다.

3. 견적 등록은 혈통 보전을 목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훈련경기대회, 어질리티 경기 대회 출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견이 중성화를 완료한 경우, 견명 뒤에 [N] 표기 및 'NEUTERED' 날인 후 발행한다. 여기서 N은 Neutered를 의미한다.

제19조 (견적 등록 증명서의 종류) 견적 등록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공인 견적등록 증명서.

1) FCI 국제 공인 혈통서

국제 공인 혈통서는 FCI 가맹 단체 및 본 연맹이 관리해 온 혈통으로 4대 혈통이 모두 FCI 가맹 국가 및 협약 단체의 혈통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혈통서

2) FCI 국제 공인 5대 혈통서

FCI 국제 공인 혈통서를 5대의 혈통을 표기하여 발급한 혈통서

2. 비공인 견적등록 증명서.

1) KKF 웨이팅 리스트 혈통 증명서

4대 혈통이 모두 채워져 있지 않거나 FCI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내·외 단체로부터 유입된 혈통견에게 발급되는 혈통 증명서

2) KKF 페디그리 혈통 증명서

FCI에 공인되어 있지 않은 모든 비공인 견종에게 발급되는 혈통 증명서

3. FCI 국제 공인 수출혈통 증명서.

본 연맹의 FCI 국제 공인 혈통서가 있는 견을 타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발급하는 혈통서로써 FCI 가맹국과 본 연맹 협약단체로부터 인정받는 국제 공인 혈통서

제20조(기재사항)

1. 국제공인 견적등록 증명서 및 국제공인 수출 혈통서에는 FCI 공인임을 표시하며, 동시에 견종 . 견명 . 견사명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별 . 모색 . 번식자 . 소유자 등록일 . 발행일 . 3대조까지의 혈통 . 출산두수 . 등록두수 . 일태자견 등록번호 . 챔피언 자격 . 훈련자격 . 종견인정자격 .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다.
2. 공인단체 . 지정단체의 등록견은 각 소속 단체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제 15조에 의한 등록건은 공인된 도그쇼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을 때, 그 교배의 4대째부터는 혈통증명서 발부대장에 입적될 수 있다.
4. 혈통증명서에는 경계번식 사항에 대해 표기하여야 한다.
 - 1) 극근친 번식은 1대와 1대, 1대와 2대, 2대와 1대가 번식할 경우에 해당되며, 혈통서 견명 뒤에 '='를 표기한다.
 - 2) 일태자견 등록 시 부모건의 교배 월령은 생후 12개월 1일 이상으로 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혈통 등록이 불가하다.
 - 3) 스탠다드로 규정되지 않은 모색을 가진 혈통건의 경우 모색앞에 [NS]를 표기한다. 여기서 NS는 Nonstandard를 의미한다.
5. 등록건의 기재사항 중 부모건을 포함한 조상건 정보, 생년월일 등 혈통 관련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혈통 등록일로부터 4주 이내 변경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 신청 시 DNA 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재발행)

1. 견적등록증명서의 도난 또는 분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행 한다.
2. 전항에서 재발행된 경우는 기발행의 견적등록증명서는 무효가 된다.
3. 재발행을 신청한 등록건의 소유자는 본 연맹의 회원으로 한다.

제6장 등록건의 양수 등

제22조 (명의변경)

1. 등록건을 양수 또는 상속한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2. 명의변경 신청서에는 양도자의 서명 . 날인을 필요로 한다.
3. 공동 소유는 3인 이내 등록할 수 있으며, 기재 순서는 대표 소유자 성명을 제일 앞쪽에 기재하고 '&' 표시를 한 후 영문 알파벳순으로 공동 소유자 성명을 기재한다. 주소란에는 대표 소유자의 주소만 기입한다.
4. 공동 소유자 등록 시에는 별도의 신청서와 공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증서류에는 신청서에 기재 된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문제가 생길 때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5. 공동소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금 규정에 따라 소유자 변경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자간 소유권 변경을 증빙하는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실종 . 도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등록권이 분실 혹은 도난 등을 당하였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 뜻을 기록하여 당해 혈통 증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등록권의 수출

제24조 (국제공인수출 혈통증명서의 신청)

1. 본 연맹 등록권을 수출할 경우는 제19조 3에서 규정하는 국제공인수출 혈통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국제공인수출 혈통증명서는 국내에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하여 식별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등록권으로 발행한다.

제25조 (마이크로칩)

1. 국제공인수출 혈통증명서는 국내에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하여 식별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등록권으로 발행한다.
2. 마이크로칩 시술 증명서는 국제공인수출 혈통증명서 발행의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새 소유자 등록) 국제 공인 수출 혈통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본 연맹 회원은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국제 공인 수출 혈통 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 연맹에 통보하여 신 소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 받아야 한다.

제8장 건적 등록의 취소

제27조 등록신청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8조 등록신청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총재의 결재에 의해 처리한다.

제9장 각종 등록요금

제29조 (각종 등록요금) 각종 등록요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요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30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번식감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0월 24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5조, 8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3조, 9조, 20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27일(제3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2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9조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3조, 제8조 1항)

일부개정 2014년 2월 13일(제6조 3항, 제8조 9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3조, 17조, 27조)

일부개정 2015년 12월 16일(제3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02월 17일(제20조)

일부개정 2016년 3월 8일(제9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2조 2항, 제3조 2항, 제8조 1항, 10항(신설), 제10조, 제11조,
제17조 3항, 제20조 4항, 5항(신설))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5조 5항, 9항, 14조 3항, 4항, 19조 1항, 20조 4항, 24조 2
항, 25조 1항, 2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0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14조 3항)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14조 5항, 제18조 3항)

견사호 등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견사호 등록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등록

제2조 (견사호 등록의 구분) 견사호 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내 견사호 등록.
2. 국제 견사호 등록.

제3조 (등록의 조건)

1. 견사호 등록은 국제 견사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2. - 삭 제 -
3. 견사호 등록은 한 사람당 한 건이 등록되며, 일태자견 등록 시에는 필히 견사호 보호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본 연맹이나 FCI에 이미 등록을 마친 견사호나, FCI에서 승인이 거부된 견사호는 등록할 수 없다.
5. 견사호의 문자수는 알파벳 20자 이내로 한다(스페이스 포함)

제4조 (신청심사) 신청된 견사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청자가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증명서의 발행) 견사호 등록자에 대하여 국제 견사호 증명서를 발행한다.

제3장 변경, 양수, 말소

제6조 (견사호의 변경) 등록이 끝난 견사호를 변경할 경우는, 현재 소유하는 견사호의 등록말소 신고를 제출, 동시에 새로 등록한 견사호의 신청 절차를 필요로 한다.

제7조 (견사호의 양수 . 상속)

1. 견사호의 양수는 양도자의 승인에 의해 인정된다.
2. 견사호의 상속은 등록자의 양친 . 적자 . 배우자에 한하여 증명 서류의 제출로 인정된다.
3. (삭제)

제8조 (건사호의 등록말소) 건사호는 건사호 등록자가 본 연맹 탈퇴 시, 본인 사망시, 건사호를 (양친, 적자, 배우자에게) 상속치 않을 시 등록 말소한다.

제4장 부칙

제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번식감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9월 16일(제3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3조)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7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9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개체식별 등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개체식별 등록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개체식별 등록

제2조 (등록자격) 등록은 본 연맹 등록권에 대하여 행한다.

제3조 (등록신청) 등록신청은 해당건의 애견 소유자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행한다.

1. 마이크로칩 또는 색인 증명서 또는 DNA 증명서.
2. 해당건의 혈통증명서.
3. 등록료.
4. 개체식별번호(마이크로칩,DNA 등록) 신청서

제4조 (식별방법) 등록은 다음 식별방법으로 실시된 것에 대해 행한다.

1. 마이크로칩.
2. 색인.
3. DNA

제5조 (식별번호의 등록 및 기재) 등록 신청된 식별번호는 해당건의 견적부에 등록하고, 혈통증명서에 기재하여 발행한다.

제6조 혈통 등록 시 공인 또는 지정단체의 혈통증명서에 식별번호가 있을 때는 본 연맹의 혈통증명서에 그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다.

제3장 부칙

제7조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번식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3조 1항, 제4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7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3조 1항, 제4조 3항(신설))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3조 4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챔피언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챔피언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챔피언 자격의 종류

제2조 (챔피언 자격의 종류) 챔피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코리아챔피언 KOR.CH
2. <삭 제>
3.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 INT.CH(CIB)
4. 트레이닝 챔피언 T.CH
5. FCI 인터내셔널 워킹 챔피언 INT.W.CH
6. 필드 트라이얼 챔피언 F.T.CH
7. 내셔널 그랜드 챔피언 NT.G.CH
8.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 A2O. CH
9. 코리아 워너 챔피언 KOR.W.CH
10. 코리아 프리미어 챔피언 KOR.PM.CH
11. 코리아 주니어 챔피언 KOR.J.CH

제3장 챔피언 (CH) 자격의 취득과 등록

제3조 (등록자격의 취득)

1. 코리아 챔피언(이하 'CH'라 한다)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애견에게 주어진다.
 - 1) 4장의 Certificate of Aptitude for Champion(이하 'CAC'라 한다)을 취득할 것.
 - 2) 4장의 CAC 가운데 2장 이상은 견의 생년월일 기준 15개월 1일 이후에 취득된 것 이어야 하며, 4장 중 1장은 Major Certificate of Aptitude for Champion (이하 'M.CAC'라 한다)이어야 한다.
 - 3) 4장의 CAC는 최소 두사람 이상의 각기 다른 심사위원이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
 - 4) 최초 CAC 취득 후 4년 이내에 나머지 3장의 CAC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내셔널 그랜드 챔피언(이하 'NT.G.CH'라 한다)은 코리아 챔피언 등록 후 본 연맹이 직접 주최하는 전건종 도그쇼에서 BIG 1석 이상의 상력을 최소 2회 이상 획득한 견에게 주어진다.
3. 코리아 위너 챔피언(이하 'KOR.W.CH'라 한다) 등록 자격은 본 연맹이 직접 주최하는 전건종 도그쇼에서 위너스 독 또는 위너스 비치 상력을 최소 4회 이상 획득한 견에게 주어진다.
4. 코리아 프리미어 챔피언(이하 'KOR.PM.CH'라 한다) 등록 자격은 본 연맹이 직접 주최하는 전건종 도그쇼에서 BOB 또는 BOS를 4회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단, 4회의 상력 중 KKF에서 프리미어 도그쇼 기간에 개최되는 전 건종 도그쇼에서 수상한 경력이 최소 1회 포함되어야 한다.
5. 코리아 주니어 챔피언(이하 KOR.J.CH라 한다.)등록 자격은 본 연맹이 직접 주최하는 전건종 도그쇼에서 '베스트 주니어 독' 또는 '베스트 주니어 비치' 상력을 최소 4회 이상 획득한 견에게 주어진다.

제4조 (등록요건) 챔피언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워킹 트라이얼을 치르는 견종은 IGP I 이상 또는 연맹이 인정하는(SchH 또는 링 스포츠) 동등 수준 이상의 훈련시험자격 중의 하나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마이크로 칩을 필하여야 한다.
3. 삭 제

제5조 (자격의 등록)

1. CH 자격은 소유자가 본 연맹에 통지하여 CH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맹에서는 신청건의 CH자격이 충족한지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3. CH 신청은 마지막 CAC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신청 건 소유자는 신청 후 2주 이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완료까지의 취급) 제5조의 CH 등록을 필한 날 이후 출전 마감일이 설정되어 있는 전람회에서는 당해견은 CH 클래스로서 출진할 수 있다.

제4장 <삭 제>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9조 <삭 제>

제10조 <삭 제>

제11조 <삭 제>

제5장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 (INT.CH) 자격의 취득과 등록

제12조 (등록자격의 취득)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 (이하 'INT.CH'라 한다) 등록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애견에게 주어진다.

1.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4장의 카십(이하 'CACIB'라 한다)을 취득할 것.
2. 4명 이상의 각기 다른 심사위원으로 부터 4장의 CACIB를 받아야 한다. 단, 심사위원 최소 3명 이상의 심사위원 국적이 달라야 한다.

제13조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삭제 -
2. - 삭제 -
3. 소유자의 국제 견사명이 등록되어 있을 것.
4. 마이크로 칩 혹은 색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5. - 삭 제 -

제14조 제13조의 INT.CH 등록자격을 충족한 애견의 소유자는 본 연맹을 통하여 INT.CH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격의 등록)

1. INT. CH 자격은 소유자의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인정된다.
2. 제14조의 INT.CH를 등록한 날로부터 이후 전람회에서는 해당견은 INT.CH로써 출진하게 된다.

제6장 워킹 챔피언 (W.CH) 자격의 취득과 등록

제16조 (등록자격의 취득) 워킹 챔피언(이하 'W.CH'라 한다) 등록자격은, 훈련경기대회에서 트레이닝 챔피언 포인트 (이하 'W.CH.P'라 한다)를 20포인트 이상 취득한 애견에게 주어진다.

제17조 워킹 챔피언 취득 때에는 IGP I 이상 자격의 등록을 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본 연맹 제16조의 W.CH 등록자격을 충족한 애견의 소유자는 연맹에 W.CH 자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격의 등록) W.CH 자격은 소유자의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인정된다.

제7장 FCI 인터내셔널 워킹 챔피언 (INT.W.CH) 자격의 취득과 등록

제20조 (등록자격의 취득) FCI 인터내셔널 워킹 챔피언(이하 'INT.W.CH'라 한다)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애견에게 주어진다.

1. FCI 인터내셔널 트라이얼에서 2장의 캐시트 (이하 'CACIT'라 한다)를 취득할 것.
2. 2장의 CACIT는 족적추급(足跡追及) . 복종작업 . 방위작업의 각 과목마다 다른 심사위원이 심사한 것.
3. 최종 CACIT 취득은 최초의 CACIT 취득일로부터 1년 1일 이상을 경과한 후의 날짜일 것.

제21조 (등록요건) FCI 인터내셔널 워킹 챔피언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IGPⅢ 훈련시험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지,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베리 굿 이상의 평가를 얻을 것.

제22조 (자격의 등록)

1. INT. W. CH 자격은 소유자의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인정된다.
2. INT. W. CH 등록자격을 충족한 애견의 소유자는 연맹에 INT.W.CH 자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장 필드 트라이얼 챔피언(F.T.CH) 자격의 취득과 등록

제23조 (등록자격의 취득) 필드 트라이얼 챔피언(이하 'F.T.CH'라 한다)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애견에게 주어진다.

1. 필드 트라이얼에서 필드 트라이얼 챔피언 포인트 (이하 'F.T.CH.P'라 한다)를 20포인트 이상 취득할 것.
2. 최초의 F.T.CH.P 취득에서 마지막 F.T.CH. P 취득까지의 기간이 4년 이내일 것.

제24조 필드 트라이얼 챔피언 취득에 대해서 소유자가 국제 견사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격의 등록) F.T.CH 자격은 소유자의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인정된다.

제9장 FCI 아시아 퍼시픽 섹션 챔피언의 취득과 등록

제26조 (등록기준)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 타이틀은 아시아 퍼시픽 섹션 챔피언십 쇼에서 주어지는 A2O CS CAC에 기초하여 수여된다.

제27조 (등록자격의 취득)

1.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A2O. CH) 등록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애견에게 주어진다.
 - 1)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회원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십쇼 (A2O CS)에서 4장의 A2O CS CAC를 취득해야 한다.
 - 2)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 신청 전에 반드시 FCI 국가의 챔피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그랜드 챔피언(A2O.G.CH) 등록 자격을 충족시킨 애견에게 주어진다.
 - 1)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회원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십쇼(A2O CS)에서 8장의 A2O CS CAC를 취득해야 한다.
 - 2)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그랜드 챔피언 신청 전에 반드시 FCI 국가의 챔피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3) 8장의 A2O CS CAC 중 최소 2장의 CAC는 자국이 아닌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회원국 2국가에서 취득해야 한다.
3.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서프림 챔피언(A2O.S.CH) 등록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애견에게 주어진다.

- 1)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회원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십쇼(A2O CS)에서 12장의 A2O CS CAC를 취득해야 하며, 1번의 베스트 인 쇼를 수상해야 한다.
- 2)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서프림 챔피언 신청 전에 반드시 FCI 국가의 챔피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3) 12장의 A2O CS CAC 중 최소 3장의 CAC는 자국이 아닌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회원 3국가에서 취득해야 한다.

제28조 (등록신청)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 타이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FCI의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A2O) 사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등록증 수여) FCI의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사무처는 A2O CS CAC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 증서는 FCI의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사무처에 의하여 수여된다.

제10장 인정자격의 증명

제30조 (인정자격의 증명)

1. 각 종류의 챔피언 자격은 당해 건의 혈통 증명서에 챔피언 자격취득을 본 연맹이 확인 등록 취득 후 취득한 자격의 약호를 기재한다.
2. 챔피언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 1) KOR.CH 코리아챔피언
 - 2) <삭 제>
 - 3) INT.CH(CIB)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
 - 4) T.CH 트레이닝 챔피언
 - 5) INT.W.CH FCI 인터내셔널 워킹 챔피언
 - 6) F.T.CH 필드 트라이얼 챔피언
 - 7) NT.G.CH 내셔널 그랜드 챔피언
 - 8) A2O. CH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
 - 9) KOR.W.CH 코리아 워너 챔피언
 - 10) KOR.PM.CH 코리아 프리미어 챔피언

11) KORJ.CH 코리아 주니어 챔피언

제31조 본 연맹은 각 종류의 챔피언 등록을 완료한 건의 소유자에게 각각 챔피언 등록 증명서를 발행한다.

제11장 부칙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0월 24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5년 11월 5일(제2조, 제8조 2항)

일부개정 2006년 9월 16일(제4조, 5항 삭제)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3조, 12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2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3조 2항, 제4조 3항, 제9조 1항, 2항, 3항, 4항, 제13조 1항)

일부개정 2012년 3월 22일(제4조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2조 2항, 제13조 5항)

일부개정 2013년 6월 25일(제5조 3항, 제8조, 제8조 2항, 제13조)

일부개정 2015년 12월 16일(제 2조 8항, 제26조 6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2조 9항(신설), 10항(신설), 제3조 1항, 2항, 3항(신설), 4항(신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2조, 제3조, 제30조)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4장 삭제, 제10장 2항 삭제)

종견 선정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종견 선정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목적) 체구구성 및 성능에 있어서 건전하고 우수한 견을 작출하여 견종 번식의 향상과 통일적 번식 축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종견의 선정) 본 연맹은 각종 애견의 육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애견을 종견으로 선정한다.

제4조 (선정 시기) 선정 검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 (선정의 자격) 종견의 선정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견으로 한다.

1. 연맹 정회원 소유의 연맹 등록견이어야 할 것.
2. 셰퍼드 견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견종은 교배 시 생후 12개월 1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독일 셰퍼드 견종은 교배 시 생후 수컷 24개월, 암컷은 18개월 이상의 견이어야 한다 (현재 SV 종견 인정 규정에 의함)
4. - 삭 제 -

제6조 (선정인정기간)

1. 종견인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 경과 후 재선정 받거나 선정위원의 인정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2. 선정위원이 종견의 유전적 결함이 없고 건전한 체구 등을 감안하여 수의사의 의견을 듣고 선정위원의 판단으로 번식이 가능한 시점까지 평생 동안 종견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제7조 - 삭 제 -

제8조 (선정 검사)

1. 종견 선정 검사는 당해 견을 소유하는 정회원으로부터 선정 검사를 연맹에 의뢰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에 연맹 종견 선정 위원회 행한다.
2. 종견선정위원회는 본인, 동거 가족 소유견 및 번식한견은 선정검사를 할 수 없다.

제9조 (선정검사의 준비)

1. 입태 검사에 필요한 평평하고 견고한 땅.

2. 권척.
3. 평량대.
4. 권총 및 지방탄.
5. 견체 측정척.
6. 수험신청서 당해견의 혈통서 및 훈련 합격증, 기타.

제10조 (선정 심사비) 종견 선정 심사비는 연맹 요금 규정에 의하며 종견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는 실비로 하고, 종견 선정심사를 의뢰한 회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연맹 행사시 병행하여 종견선정심사를 행할 시는 별도의 교통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제11조 (종견선정 등록) 종견 선정의 심사에 합격한 견을 소유한 연맹 정회원은 종견선정 등록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등록료를 첨부하여 본 연맹에 제출한다.

제12조 (종견으로 선정 받은 견의 증명)

1. 본 연맹은 종견으로 선정 받은 견의 소유자에게 종견 선정 등록증명서를 발행한다.
2. 종견으로 선정된 당해 애견의 혈통증명서 견명 앞에는 *인을 기재한다.
3. 종견으로 선정된 부모견에 의해 번식된 자견의 혈통증명서는 양친번식 선정견으로 기재하여 발행한다.

제13조 (선정 종빈견 소유자의 주의사항) 선정 종빈견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선정 종빈견은 필히 선정 모견에게 교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정 종빈견의 소유자는 종견선정증서에 기재되어있는 배우견에 관하여는 선정위원의 주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선정 종빈견 소유자는 늦어도 교배 1주일 전에 혈통서 및 선정증서 또는 사본을 제시하여 종모견 소유자에게 교배신청을 한다. 이때 빈견의 건강상태가 특히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모견 수유 두수는 가급적 6두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초과할 때는 유모견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생후 10주 이내에 자견을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선정종견 판정의 근본원인) 선종종견 판정에 대하여 지도원칙이 될 완전한 실용견적 체구구성을 갖는 우수한 성능견의 작출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종견은 모든 각도에서

볼 때 명확한 성의 표징을 나타내는 건일 것이며, 대단히 건강하고 우량한 체질을 가진 건이라야 한다. 또한, 중증인 일반질병 혹은 신경병이 아닐 것은 물론 구루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또, 유전적으로 명확히 나쁜 영향을 전하는 계통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편고환 또는 양고환 결여, 완전한 퇴색건 혹은 백색건은 선정건이 될 수 없다. 최후로 선정종건이 될 건은 건종의 품성 및 우수한 성능을 갖고 훈련도 습득한 건이라야 한다. 건강한 사육과 양호한 관리로서 건사사육은 배제하며 자주 소유주를 변경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 모든 특성을 보전하고 지키는 기초가 된다. 종건선정위원의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15조 (판정의 기준) 선정 신청건은 다음 기준에 의해서 개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우선 모건 다음으로 빈건의 순서로 행한다.

1. 혈통지침, 훈련자격증명, 당해건 및 그 계통의 유전력 증명의 검사 또는 사육 및 관리 상태의 조사.
2. 성징, 품성, 건강, 발육, 신경, 체력 및 체질 검사.
3. 입태시 체구 구성의 판정.

전체 판정은 다음 제점에 대하여 행한다. 전체형 및 체구 비율, 균정, 표현 및 품위, 크기(체고, 흉심, 흉위, 체장 및 체중의 계량) 골격의 강약, 근육 및 입태 안정도, 피부와 피모, 모색 및 모양.

4. 상보와 소보의 보용판정 (유부 필요에 따라서 유무) 건의 자유성, 운보중의 제관절의 입태 검사, 각부 결점의 보상 및 강화.
5. 성능의 감정은 선정위원이 행한다.

혈통, 외모, 품성 및 성능상의 제점으로 보아서 여하한 교배건이 적당한가 또는 부적당한가를 기입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수험건은 선정합격, 조건부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불합격으로 판정된 건은 동년도에는 타선정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제16조 (경계번식건의 수험) 경계 번식건(부모와 자, 동태자간에 출생한 건, 규정의 교배 연령 미달된 일방 또는 쌍방의 양친에서 출생한 건)은 종건선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제 17조 (규정의 개폐) 이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5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7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5조 2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번식감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번식감리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목적) 건종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보존하고, 우수번식건의 양성 및 보급 활성화를 기하며, 번식자의 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건종 고유의 혈통고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번식감리

제3조 (번식감리위원회) 번식감리 위원회는 전건종에 대한 번식감리 일체를 관장하며 혈통서의 대조확인과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기술을 하거나 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 (번식감리위원회의 구성)

1. 번식감리 위원장

번식감리에 대한 기술적 업무를 총괄하고 번식감리 기능의 체계화를 추진하며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번식감리 위원

지역별로 번식감리 위원을 두며 연맹 사무처와 협의 하에 번식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귀색인 및 마이크로칩 기술을 하거나 기술 여부 확인 및 우수 번식에 대한 지도 교육과 번식자의 자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번식감리 부위원

번식감리 위원의 감리 및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기술을 하거나 기술 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보좌하기 위하여 번식감리 부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번식감리위원의 직무) 번식감리 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제11조 번식감리사항에 규정된 번식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애견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기술을 하거나 기술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빙서류를 연맹에 제출한다.

제6조 (번식감리위원의 책임) 번식감리위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혈통서 확인 검사와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에 대한 허위, 부정행위, 편법, 자신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벌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7조 ~ 제 10조 - 삭 제 -

제11조 (번식감리 사항) 번식감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등록하고자하는 견이 견종표준과 상이하고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번식감리위원의 판단으로 등록 유무를 결정한다.
2. 자견등록 때 종모 / 종빈견과 자견에 대한 견적등록에 하자 의혹이 발생하면 사진, 종모 / 종빈견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감리위원이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견적등록 때 종모/종빈견의 교배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면 감리위원이 확인한 후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유자는 종빈견을 출산이전에 양도할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교배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5. 연맹은 종모 / 종빈견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감리위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6. 연맹은 경계번식에 의한 자견등록 의혹이 발생한 때 감리위원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7. 연맹은 애견의 번식과 견적등록에 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리위원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제12조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 절차)

1.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거나 시술 여부 확인은 지역별로 위촉된 번식감리위원이 혈통서를 확인 후 실시한다.
단, 지방 지치단체 또는 수의사에 의해 시술된 마이크로칩 내역은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인정토록 한다.
2. 번식감리 위원은 연맹이 지정한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귀 색인의 글자는 연맹이 정한 위촉된 자의 지역별 고유번호를 기초로 한다.
4. 번식감리 위원은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시술 여부 확인 결과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귀 색인은 개의 오른쪽 귀 안쪽에 하고 동배인 경우 수견부터 실시한다.
6. 귀 색인은 8주령이 적정하며 12주령이 지나면 반드시 마취 후 시술하여야 한다.
50일 이전의 자견은 귀색인을 할 수 없다.
7. 귀 색인은 동배의 모든 견을 데려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13조 (적용 견종)

1. 귀 색인은 필요한 경우 사역견에 대해 실시한다.
2. 마이크로칩 시술은 모든 견종에 적용한다.

제14조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 부적격 견) 감리위원은 부적격 견에 대한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부적격견은 불확실한 혈통, 퇴화색, 잡종화된 견, 기형적인 견, 허위로 혈통서를 신청한 견, 견종 표준을 벗어난 견 등을 말한다.

제15조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 확인)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시술 여부 확인은 수시확인과 특별확인으로 구분한다.

1. 수시확인은 번식감리 위원에 문제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실시한다.
2. 특별확인은 연맹 행사, 종견인정 검사, 훈련시험, 견적등록 때 실시한다.

제16조 (추가 귀 색인) 귀색인이 누락된 자견을 추가로 색인할 경우에는 본 연맹 견적등록 규정에 의하며 번식감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귀색인을 할 수 있다.

제17조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 비용)

1. 귀 색인
 - 1) 1두에서 5두까지는 두수에 관계없이 30,000원.
 - 2) 6두 이상은 두당 10,000원을 추가.
2. 마이크로칩 시술
 - 1) 번식감리 위원에 의한 마이크로칩을 포함한 시술비는 1두당 25,000원으로 하며 번식감리 위원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지원한다.

제18조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 중단) 번식감리 위원에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 업무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7일 이내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규제) 연맹에 등록된 셰퍼드견이 귀 색인 또는 마이크로칩 시술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종견 인정 검사를 받을 수 없고 전람회 출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장비관리)

1. 번식감리 위원은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관련 장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2. 사무처로부터 수령한 장비는 임기종료 시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를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벌칙)

1. 번식자 또는 소유자가 허위로 혈통서를 신청하여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였거나 또는 임의로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을 한 경우, 혈통서를 취소하고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규정을 위배한 신청 소유자는 연맹 상벌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귀 색인 및 마이크로칩 시술을 빙자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자는 상벌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제22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칙 이규정은 2008년 2월 23일 부로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7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전람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전람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도그쇼

제2조 (도그쇼의 종류)

1. 챔피언십 쇼의 종류

1) FCI 도그쇼

(1) FCI 월드 도그쇼

1년에 단 한번만 개최되는 도그쇼이며 국제 행사이다.

(2) FCI 대륙별 섹션쇼

FCI 는 전세계를 3개의 섹션(유럽 / 아메리카 & 캐러비안 /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으로 구분하는데, 1년에 한번만 각 섹션별로 도그쇼를 개최할 수 있다.

(3)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CACIB을 수여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도그쇼이다. 이 인터내셔널 도그쇼의 날짜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FCI에 의해 조율된다.

(4) FCI 아시아 퍼시픽 섹션 챔피언십 쇼 (이하 'A2O CS'라 한다.)는 FCI의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A2O)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챔피언십 도그쇼이며 A2O CS CAC(Certificate of Aptitude for Champion)가 수여된다.

(5)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 M.CAC가 부여되는 본부전 이며 KKF 챔피언십 어워드(Championship Award)가 수여된다.

2) <삭 제>

3) KKF 도그쇼

(1) KKF 코리안 챔피언십 도그쇼

CAC가 부여되는 도그쇼이며 KKF 챔피언십 어워드(Championship Award)가 수여된다.

(2) KKF 챔피언십 도그쇼

M.CAC가 부여되는 본부전이며 KKF 챔피언십 어워드(Championship Award)가 수여된다.

(3) 단견종 및 견종군 스페셜티쇼

단견종 및 견종군 스페셜티쇼에는 CAC 또는 M·CAC가 부여되며, 별도의 예외 규정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단일 견종 40두 이상 출진할 경우 CAC가 부여되며, 80두 이상 출진할 경우 M·CAC가 부여된다.

2. 매치쇼의 종류

베이비 및 퍼피 매치쇼는 주최자의 임의에 따라 공동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도그쇼 자격증서)

1. CACIB(Certificate of Aptitude for International Champion of Beauty)

1) 15개월 1일 이상의 출진견에게만 주어지며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이 될 자질이 충분할 만큼 우수함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단, 베테랑 클래스는 제외된다.

2) FCI 도그쇼의 견종별 암 . 수 각각의 CACIB전에서 인터미디에트 클래스의 1석견, 오픈 클래스의 1석견, 챔피언 클래스의 1석견이 경합하여 선발된 위너스 독 및 비치에게 각각 하나씩 수여된다.

3) CACIB을 한번 획득했다고 해서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2. R.CACIB(Reserve CACIB)

1) 각 견종별로 수컷 및 암컷은 최소 생후 15개월 1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베테랑 클래스는 제외된다.

2) CACIB 전에서 CACIB을 수상한 클래스의 2석견과 CACIB을 수상하지 못한 클래스의 1석견들이 다시 경합하여 수상한 출진견에게 수여된다.

3) R.CACIB을 받은 출진견은 CACIB을 받은 출진견이 이미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이거나 3대 혈통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CACIB 승인이 거부될 때에는 R.CACIB을 받은 출진견이 CACIB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삭 제>

4. CAC(Certificate of Aptitude for champion)

1) 각 견종별로 수컷 및 암컷은 최소 생후 9개월 1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주니어 클래스, 인터미디에트 클래스, 오픈 클래스, 챔피언 클래스, 베테랑 클래스의 엑셀런트 1석 견에게 각각 수여된다.

단, 워킹 클래스가 있을 경우, 워킹 클래스의 엑셀런트 1석 견도 받는다.

5. R.CAC(Reserve CAC)

1) 각 견종별로 수컷 및 암컷은 최소 생후 9개월 1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주니어 클래스, 인터미디에트 클래스, 오픈 클래스, 챔피언 클래스, 베테랑 클래스의

엑셀런트 2석견에게 각각 수여된다.

단, 워킹 클래스가 있을 경우, 워킹 클래스의 엑셀런트 2석 견도 받는다.

- 3) CAC를 받은 출진견이 이미 KKF 코리아 챔피언이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CAC 승인이 거부될 때, R.CAC를 받은 출진견이 CAC 승인을 받게 된다.

6. M.CAC(Major CAC)

- 1) 각 견종별로 수컷 및 암컷은 최소 생후 9개월 1일 이상이어야 한다.
- 2) FCI 도그쇼, -삭제-, KKF 챔피언십 도그쇼,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십쇼(A2O CS),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서 주니어 클래스, 인터미디엄 클래스 · 오픈 클래스 · 챔피언 클래스 · 베테랑 클래스의 엑셀런트 1석 견에게 M.CAC를 수여한다. 단, 워킹 클래스가 있을 경우, 워킹 클래스의 엑셀런트 1석 견도 M.CAC를 받는다.
- 3) 단견종 및 견종군 스페셜티쇼에서 80두 이상이 출진하였을 때에는 M.CAC를 수여할 수 있다.

7. R.M.CAC(Reserve Major CAC)

- 1) 각 견종별로 수컷 및 암컷은 최소 생후 9개월 1일 이상이어야 한다.
- 2) FCI 도그쇼, -삭제-, KKF 챔피언십 도그쇼,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챔피언십쇼(A2O CS),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서 주니어 클래스, 인터미디엄 클래스 · 오픈 클래스 · 챔피언 클래스 · 베테랑 클래스의 엑셀런트 2석 견에게 R.M.CAC를 수여한다. 단, 워킹 클래스가 있을 경우, 워킹 클래스의 엑셀런트 2석견도 R.M.CAC를 받는다.
- 3) 단견종 및 견종군 스페셜티쇼에서 80두 이상이 출진하였을 때에는 R.M.CAC를 수여할 수 있다.
- 4) M.CAC를 받은 출진견이 이미 KKF 코리아 챔피언이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M.CAC 승인이 거부될 때, R.M.CAC를 받은 출진견이 M.CAC 승인을 받게 된다.

8. A2O CS CAC(Certificate of Aptitude for Champion)

- 1) A2O CS에서 베스트 오브 브리드와 베스트 오브 아퍼짓 섹스 수상견에게 A2O CS CAC 증서가 부여된다.

제4조 (그룹의 종류) 출진견을 견종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각 그룹에 속하는 견종은 FCI 규정에 준한다.

1. 제1그룹 : 쉽독 & 캐틀 독(스위스 캐틀 독 제외)
2. 제2그룹 : 핀셔 & 슈нау저-몰로세르 견종-스위스 마운틴 독 & 캐틀 독.
3. 제3그룹 : 테리어
4. 제4그룹 : 닥스훈트
5. 제5그룹 : 스피츠 & 프리미티브 타입.

6. 제6그룹 : 센트 하운드 & 관련 견종.
7. 제7그룹 : 포인팅 독.
8. 제8그룹 : 리트리버, 플러싱 독, 워터 독
9. 제9그룹 : 컴패니언 및 토이독
10. 제10그룹 : 사이트 하운드.

제5조 (클래스 구분) 연령별로 각각의 클래스로 나뉘게 되는데, 도그쇼 개최 1일전을 기준으로 연령을 결정한다.

1. 베이비 클래스

생후 3개월 1일~6개월에 해당하는 베이비 클래스 출진건은 베리 굿, 굿 등의 평가 심사와 1석, 2석, 3석, 4석의 석차를 받고, 별도로 “베이비 베스트 인 쇼” 부분을 경쟁한다.

2. 퍼피 클래스

생후 6개월 1일~9개월에 해당하는 퍼피 클래스 출진건은 베리 굿, 굿 등의 평가 심사와 1석, 2석, 3석, 4석의 석차를 받고, 별도로 “퍼피 베스트 인 쇼” 부분을 경쟁한다.

3. 주니어 클래스

생후 9개월 1일~15개월에 해당하는 주니어 클래스 출진건은 엑셀런트, 베리 굿, 굿 등의 평가 심사와 1석, 2석, 3석, 4석의 석차를 받는다.

4. 인터미디에트 클래스

생후 15개월 1일~24개월에 해당하는 인터미디에트 클래스 출진건은 엑셀런트, 베리 굿, 굿 등의 평가 심사와 1석, 2석, 3석, 4석의 석차를 받는다.

5. 오픈 클래스

생후 24개월 1일 이상의 출진건은 모두 오픈 클래스에 출진할 수 있다.

6. 챔피언 클래스

KKF 코리아 챔피언견, FCI 인터내셔널 챔피언견, FCI 가맹단체의 내셔널 챔피언견, AKC·KC·CKC의 내셔널 챔피언견, 내셔널 그랜드 챔피언견, 코리아 워너 챔피언견, 코리아 프리미어 챔피언견만 출진할 수 있으며, 코리아 주니어 챔피언견과 외국에서 취득한 주니어 챔피언견의 경우 챔피언 클래스에는 출진할 수 없다.

7. 워킹 클래스

생후 15개월 1일 이상으로써 워킹 트라이얼을 받아야 하는 견종이며 워킹 클래스의 개설 여부는 도그쇼의 성격에 따라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8. 스페셜티 쇼에서는 셰퍼드 견종에 있어 타 견종과 달리 클래스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단, 오픈클래스(성견) 수조 및 암조에서는 종견 선정검사 또는 IGP I (SchH I) 이상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최고의 평가 및 상력을 부여 받을 수 없다.

- 1) PUPPY C 클래스 : 생후 3개월 1일 ~ 6개월(유견 C)
- 2) PUPPY B 클래스 : 생후 6개월 1일 ~ 9개월(유견 B)
- 3) PUPPY A 클래스 : 생후 9개월 1일 ~ 12개월(유견 A)
- 4) 유스(YOUTH) 클래스 : 생후 12개월 1일 ~ 18개월(약견)
- 5) 영독(YOUNG DOG) 클래스 : 생후 18개월 1일 ~ 24개월(미성견)
- 6) 어덜트(ADULT DOG) 클래스 : 생후 24개월 1일 이상(성견)
- 7) 베테랑 클래스 : 생후 6살 이상.

9. 베테랑 클래스

생후 8살 이상의 견이 출전할 수 있다.

엑셀런트, 베리 굿, 굿 등의 평가 심사, 1석, 2석, 3석, 4석의 석차를 받는다.

단, CACIB전에는 참가할 수 없다.

10. 브리더스 클래스

수컷과 암컷의 구별 없이 같은 견종의 같은 버라이어티를 가진 최소 3마리~ 5마리로 구성된 그룹 클래스로서, 현 소유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식자에 의해 번식되어 동일한 견사호를 가진 견들이 출전하여 경합한다. 브리더스 클래스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출전견 모두 당일 쇼의 해당 클래스에서 최소한 베리 굿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도그쇼의 개최)

1.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도그쇼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쇼는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개최된다.

2.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FCI 도그쇼는 본부에서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3. <삭 제>

4. FCI A2O 챔피언십 쇼 (A2O CS)

1) FCI A2O 챔피언십 쇼는 매년 최대 6회 까지 개최할 수 있다.

2) A2O CS 개최 후 주최측은 대회 출진두수 1두당 2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5회 이상 대회 개최의 경우 출진두수가 300두를 넘지 않아도 1대회 당 최소 300두의 승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같은 주에 2개의 A2O CS는 개최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의 구성은 A2O 소속 심사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KKF 도그쇼

1) 연맹 사무처에서 주최하는 도그쇼는 "KKF 챔피언십 도그쇼"라고 한다.

2) 본 연맹에서 직접 주최하는 전견종 도그쇼 중 일정기간 동안 6회 이상 개최되는 도그쇼는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라고 한다.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 운영 시에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 상력을 부여할 수 있다.

- 3) 지부 및 지회에서 주최하는 도그쇼는 "KKF 코리안 챔피언십 도그쇼"라고 한다.
6. KKF 스페셜티쇼
- 단견종전과 견종군전으로 분류되며 연맹 사무처, 견종 연합회, 클럽 등에서 매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도그쇼의 승인)

1.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도그쇼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쇼의 개최지는 FCI 아시아,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섹션 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 1) FCI 도그쇼의 개최는 총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2) FCI 도그쇼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부 또는 지회장은 개최 예정일이 상반기(1월~6월)일 때에는 전년 3월말까지, 하반기(7월~12월)일 때에는 전년 9월말까지 소정의 도그쇼 개최 신청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삭 제>
4. FCI A2O 챔피언십 쇼 (A2O CS)
 - 1) A2O CS는 A2O의 규정 및 KKF 챔피언십 도그쇼의 규정을 준용한다.
5. KKF 도그쇼
 - 1) KKF 도그쇼의 개최는 총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2) KKF 도그쇼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부 또는 지회장은 개최 예정일이 상반기(1월~6월)일 때에는 전년 3월말까지, 하반기(7월~12월)일 때에는 전년 9월말까지 소정의 도그쇼 개최 신청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6. KKF 스페셜티쇼
본부 주관 하에 개최 시에는 사전 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견종군으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도 있으며, 견종 연합회 또는 클럽 등에서 개최 시에는 전년도 12월초에 연맹 본부에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에 대한 조정을 거친 다음 총재의 승인을 받고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도그쇼의 공시)

본 연맹은 FCI, A2O CS, KKF 도그쇼의 명칭, 개최 일시 등을 연맹 홈페이지에 도그쇼 개최 6개월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제9조 (출진 접수 개시일) 도그쇼 개최일로부터 최소 4주전으로 한다.

제10조 (출진 신청 마감)

1. 출진 신청은 개최일의 최소 9일전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 후 출진 및 당일 출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출진비의 환불은 출진 신청 최종 마감일까지는 신청금액 전액을 환불하며, 최종 마감일 이후 신청시, 2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대회 개최 3일 전까지만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출진비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출진신청은 본 연맹 혈통 등록건과 연맹 인정 단체 혈통서 보유건에 한 한다.

제11조 (기권으로 보이는 행위) 출진건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1. 전람회 당일, 소정의 시간까지 접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때.
2. 심사개시 시간에 늦을 때.
3. 심사종료 전에 도중 퇴장할 때.

제12조 (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출진건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는 행위를 하는 건.(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2. 피부병 등 건강상 위해가 있는 건.
3. 시각 . 청각에 장애가 있는 건.
4. 발정 중인 건.

제13조 (심사의 진행)

1. 전견종 도그쇼

1) 베이비 매치쇼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베이비 베스트 인 쇼가 선발된다.

- (1) 베이비 베스트 오브 브리드는 각 그룹의 해당 견종별로 <수조>.<암조> 1석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2) 베이비 베스트 인 그룹은 각 그룹의 해당 베이비 베스트 오브 브리드 수상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되며 2석견과 3석견과 4석견은 베이비 베스트 인 그룹 2석, 베이비 베스트 인 그룹 3석, 베이비 베스트 인 그룹 4석이 된다.
- (3) 베이비 베스트 인 쇼는 각 그룹의 해당 베이비 베스트 인 그룹 수상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되며 2석견과 3석견은 각각 베이비 베스트 인 쇼 2석, 베이비 베스트 인 쇼 3석이 된다.

2) 퍼피 매치쇼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퍼피 베스트 인 쇼가 선발된다.

- (1) 퍼피 베스트 오브 브리드는 각 그룹의 해당 견종별로 <수조>.<암조> 1석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2) 퍼피 베스트 인 그룹은 각 그룹의 해당 퍼피 베스트 오브 브리드 수상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되며 2석견과 3석견과 4석견은 퍼피 베스트 인 그룹 2석, 퍼피 베스트 인 그룹 3석, 퍼피 베스트 인 그룹 4석이 된다.
- (3) 퍼피 베스트 인 쇼는 각 그룹의 해당 퍼피 베스트 인 그룹 수상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되며 2석견과 3석견은 각각 퍼피 베스트 인 쇼 2석, 퍼피 베스트 인 쇼 3석이 된다.

3) <삭 제>

4) 챔피언십 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베스트 인 쇼가 선발된다.

- (1) 베스트 주니어 독은 해당 견종별로 주니어 클래스 독 출진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2) 베스트 주니어 비치는 해당 견종별로 주니어 클래스 비치 출진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3) 위너스 독은 인터미니어트 클래스 독 1석견, 오픈 클래스 독 1석견, 챔피언 클래스 독 1석견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4) 위너스 비치는 인터미니어트 클래스 비치 1석견, 오픈 클래스 비치 1석견, 챔피언 클래스 비치 1석견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5) 베스트 베테랑 독은 베테랑 클래스 독 출진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6) 베스트 베테랑 비치는 베테랑 클래스 비치 출진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7) 베스트 오브 브리드는 베스트 주니어 독, 베스트 주니어 비치, 위너스 독, 위너스 비치, 베스트 베테랑 독, 베스트 베테랑 비치가 경합하여 선발된다.
- (8) 베스트 오브 브리드 수상견이 선발된 후 다른 성별의 1석 수상견에게 베스트 오브 아퍼짓 섹스를 수여한다.
- (9) 베스트 인 그룹은 각 그룹의 해당 베스트 오브 브리드 수상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되며, 2석견과 3석견과 4석견은 베스트 인 그룹 2석, 베스트 인 그룹 3석, 베스트 인 그룹 4석이 된다.
- (10) 베스트 인 쇼는 각 그룹의 해당 베스트 인 그룹 수상견들이 경합하여 선발되며, 2석견과 3석견은 각각 베스트 인 쇼 2석, 베스트 인 쇼 3석이 된다.

2. KKF 스페셜티쇼

- 1) 베이비 매치쇼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베이비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가 선발된다.

- (1) 베이비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 및 비치는 견종별로 경합하여 암·수 각각 선발된다.
 - (2) 베이비 리저브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 및 비치는 견종별로 베이비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 및 비치가 되지 못한 2석 견에 수여된다.
 - (3) 베이비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는 베이비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과 베이비 베스트 오브 위너스 비치가 경합하여 선발되며 베이비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가 되지 못한 견에게는 베이비 베스트 오브 아퍼짓 섹스가 수여 된다.
- 2) 퍼피 매치쇼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퍼피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가 선발된다.
- (1) 퍼피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 및 비치는 견종별로 경합하여 암 . 수 각각 선발된다.
 - (2) 퍼피 리저브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 및 비치는 견종별로 퍼피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 및 비치가 되지 못한 2석견에 수여된다.
 - (3) 퍼피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는 퍼피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과 퍼피 베스트 오브 위너스 비치가 경합하여 선발되며 퍼피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가 되지 못한 견에게는 퍼피 베스트 오브 아퍼짓 섹스가 수여된다.
- 3) 레귤러 스페셜티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가 선발된다.
- (1)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은 베스트 주니어 독, 위너스 독, 베스트 베테랑 독이 경합하여 선발된다.
 - (2) 베스트 오브 위너스 비치는 베스트 주니어 비치, 위너스 비치 , 베스트 베테랑 비치가 경합하여 선발된다.
 - (3)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는 베스트 오브 위너스 독과 베스트 오브 위너스 비치가 경합하여 선발되며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가 되지 못한 견에게는 베스트 오브 아퍼짓 섹스가 수여된다.

제14조 (단독 시스템이 준용되는 때)

1. 출진 신청 마감일에 동일 견종의 출진이 40마리 이상일 때, 그 견종에게는 단독전 제도 (이하 이를 '단독 시스템'이라 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
2. 단독 시스템 준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회 개최 전, 주최자의 임의에 따라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 (단독 시스템의 심사진행)

1. 단독시스템이 준용되었을 때는 다음 클래스 순에 따라서 암 . 수 각각 4석까지 클래스 수상건을 선출하고 평가 리본 및 석차 리본을 교부한다.
2. 단독시스템의 심사 진행은 전견종 도그쇼에서 제13조 심사의 진행 제2항에 따른다.

제16조 (증서의 교부)

1. FCI 도그쇼
 - 1) 카십전에서 경합하여 선발된 견에게 CACIB 가증서를 교부한다.
 - 2) 리저브 카십전에서 경합하여 선발된 견에게 R.CACIB 가증서를 교부한다.
 - 3) 주니어 클래스 이상의 각각의 엑설런트 1석견에게는 M.CAC를 교부한다.
 - 4) 주니어 클래스 이상의 각각의 엑설런트 2석견에게는 R.M.CAC를 교부한다.
2. <삭 제>
3. FCI A2O 챔피언십 쇼 (A2O CS)
 - 1) A2O CS에서 베스트 오브 브리드와 베스트 오브 아퍼짓 섹스 수상견에게 A2O CS. CAC를 교부한다.
 - 2) 주니어 클래스 이상의 각각의 엑설런트 1석견에게는 M.CAC를 교부한다.
 - 3) 주니어 클래스 이상의 각각의 엑설런트 2석견에게는 R.M.CAC를 교부한다.
4. KKF 도그쇼
 - 1) 주니어 클래스 이상의 각각의 엑설런트 1석견에게는 CAC 또는 M.CAC를 교부한다.
 - 2) 주니어 클래스 이상의 각각의 엑설런트 2석견에게는 R.CAC 또는 R.M.CAC를 교부한다.
5. KKF 스페셜티쇼
 - 1) 주니어 클래스 이상의 각각의 엑설런트 1석견에게는 CAC 또는 M.CAC를 교부한다.
 - 2) 주니어 클래스 이상의 각각의 엑설런트 2석견에게는 R.CAC 또는 R.M.CAC를 교부한다.

제3장 출진 안내서 . 출진 목록(리플렛 · 프로그램)

제17조 (출진 안내서와 출진 신청서)

1. 전람회 주최의 장은 출진 안내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출진 신청서와 더불어 개최

15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2. 전람회 안내에 대한 포스터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8조 (출진 안내서의 기재사항) 출진 안내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람회 명칭.
2. 주최자명.
3. 개최 일시.
4. 개최지 명과 안내도.
5. 출진 접수 개시일과 신청 마감일(마감일 이전이라도 출진 예정 마리 수에 도달한 날에 마감하는 경우는 그 뜻을 기재)
6. 출진 규정.
7. 요금.
 - 1) 출진권(출진 신청과 동시에 지불 취지 기재)
 - 2) 공개 훈련시험을 공동 개최할 경우는 그 요금을 포함한다.
 - 3) 광고를 채용할 경우는 그 요금을 포함한다.
8. 심사규정.
9. 클래스 구분과 진행 예정시간.
10. 심사위원
11. 교부 카드류.
12. 출진자에 대한 주의사항.
13. 퍼피 매치쇼 및 베이비 매치의 동시 개최(행할 때)
14. 공개훈련시험의 동시 개최(행할 때)
15. 소속 조직일람.
16. 전람회 사무소의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17. 후원자명.
18. 협찬자명.

제19조 (출진목록의 배포) 주최자는 출진 목록을 작성하고, 출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진 목록의 광고) 출진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 광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람회 개최의 협찬으로 계약되어 있는 단체.
2. 애견에 관한 용품 및 애견 사료(간식) 등.
3. 본 연맹의 회원이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애견과 관련된 점포 등.
4. 본 연맹 회원의 소유건.
5. 기타.

제21조 (기재사항의 규제) 출진 안내서 . 포스터 . 출진 목록의 내용은 본 연맹의 명예를 손상하는 동시에 전람회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출진건

제22조 (출진건의 자격)

1. 출진건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건으로 한다.
 - 1) FCI 또는 본 연맹의 공인 견종일 것
 - 2) 본 연맹에 등록되어 있을 것.
 - 3) 회원이 소유하고 있을 것.
2. KKF에서 주최하는 도그쇼에서 FCI 및 KKF와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의 출진건에 대해서는 전항 2), 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기재사항) 주최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출진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견종(FCI 견종별 CACIB 수여 기준에 따라 모색, 모종, 체고를 견종별로 별도 표기할 수 있다)
2. 성별.
3. 클래스 구분.
4. 출진번호.
5. 등록견명.
6. 등록번호.
7. 생년월일.
8. 부.모견명.
9. 소유자의 성명.

제24조 (출진목록 기재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1. 출진 신청서에 기재 누락과 본 건이 특정되지 않는 오류(건명 . 등록번호 . 소유자명 등)가 있는 경우는 출진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
2. 출진목록에 본 건이 특정되지 않는 오류가 있을 경우는 당일 출진을 할 수 없다.

제5장 출진자 . 핸들러 . 관람객

제25조 (출진자의 자격)

1. 출진자는 본 연맹 회원으로서 회비 및 요금의 미납이 없어야 한다.
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상관없이 FCI . A2O CS . KKF 도그쇼에서 FCI 그리고 KKF 와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의 출진자에 대하여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핸들러의 자격)

1. 핸들러는 본 연맹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상관없이, FCI . A2O CS . KKF 도그쇼에서 FCI 그리고 KKF 와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의 출진건에 대해서는, 당해국의 핸들러인 경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전람회장에서의 입장제한 및 불만사항)

1. 본 연맹 및 주최자는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전람회장의 규율, 평온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전람회장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출진건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 순위 및 수상과 관련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출진자는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며, 논란의 여지는 없다.
3. 출진자는 쇼 운영방법에 대한 오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도그쇼 조직위원회에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도그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8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 전람회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5년 6월 18일(제4조 1항, 제6조 3항)

일부개정 2005년 11월 5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4조 5조 6조 13조 16조 18조 20조 33조 35조 38조 40조 71조 84조 98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5조, 29조, 33조, 66조, 81조, 96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0조)

전면개정 2012년 2월 11일

일부개정 2012년 5월 24일 (제3조, 제10조)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 (제5조 8항, 제13조 1항)

일부개정 2013년 6월 25일 (제5조 8항, 제16조 1항, 2항)

일부개정 2014년 2월 13일 (제10조 1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 (제6조, 10조, 23조)

일부개정 2015년 12월 16일 (제2조 1항, 제3조 6항, 제3조 8항, 제6조 6항, 제7조 6항, 제 8조, 제10조 2항, 제10조 8항, 제16조 5항, 제25조 2항, 제26조 2항)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조, 제16조, 제29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2조 1항, 제3조 6항, 7항, 제5조 6항, 제6조 5항, 제13조 2항)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4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6조 5항, 12조 1항, 4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13조, 제14조)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25조, 제26조)

전람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전람회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임원의 심사 제한 규칙) 다음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를 담당해서는 안된다.

1. 당해 지부장, 지회장 및 클럽회장 등.
2. 당해 지부에 회원인 심사위원.

제2장 주최자

제3조 (클럽전의 동일 동회장, 동시간대의 개최) 모든 견종 클럽과 단견종 클럽(또는 견종군 클럽)이 동일 동회에서 동시간대에 전람회를 개최할 경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동 회장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견종 클럽전 1개와 단견종 클럽전 (또는 견종군 클럽전) 3개까지로 한다.
2. 단견종 클럽전 (또는 견종군 클럽전)의 당해 견종은 모든 견종 클럽전에 출전할 수 있다.
3. 출전 안내서 . 출전 목록을 합동으로 작성할 때는 주최자별로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한다.

제4조 (클럽전의 동일 동회장에서의 시차에 의한 개최) 모든 견종 클럽 (또는 견종군 클럽)은 동일 동회에서 시차에 의한 전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 경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동 회장에서의 개최는 모든 견종 클럽전(또는 견종군 클럽전) 2개까지로 한다.
2. 한편 클럽의 전람회가 종료된다면 또 한쪽의 클럽 전람회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출진 안내서 . 출진 목록을 합동으로 작성할 때는 주최자별로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 . 용품의 준비)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6조 (개최상의 주의) 주최자는 전람회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람회의 전야제 또는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임원, 심사위원, 스텝에 의한

- 식사회를 제외한다)
2. 관계자에 대한 각종 협력상의 수여를 전람회의 종료 전에 행하는 행위.
 3. 당일 심사위원 . 출장자 . 핸들러로부터 금품 . 기부 등을 수취하는 행위.

제3장 심사위원 . 스튜어드

제7조 (보고서류 . 심사비)

1. 전람회에서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와 심사평가서를 전람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 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은 해외 심사 보고서와 도그쇼 프로그램 책자를 전람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전람회 심사비는 심사비 100,000원과 숙박비 및 교통비의 실비를 주최자 부담으로한다.

제8조 (출진 . 핸들링)

1. 전람회의 심사위원 및 스튜어드의 가족(별거 배우자, 친자 및 형제를 포함), 동거인 및 사용인은 그 담당하는 링에 진출 . 핸들링을 할 수 없다.
2. -삭제-

제9조 (규제) 심사위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거 6개월 이내에 자기 및 가족(별거 배우자, 친자 및 형제를 포함), 동거인의 명의였던 개를 심사(심사한 경우에는 그 개의 입상기록을 취소)하는 행위.
2. 과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훈련, 양도 또는 중개한 개를 심사(심사한 경우에는 그 개의 입상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
3.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람회에 출진 시키는 행위.
4. 출진건의 우열 순위를 부정하게 결정하는 행위.
5. 심사위원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제4장 부칙

제10조 (규정의 개폐) 이 규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7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3년 6월 25일(제9조 1항, 2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0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5조 1항, 2항, 3항, 8조 2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전람회 심사위원 선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전람회 심사위원 선임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심사위원의 선임

제2조 (선고 . 선임)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국내건 심사위원)
2. <삭제>
3. KKF 챔피언십 도그쇼.
4. 견종 연합회전.
5. 지부전.
6. 지회전.
7. 클럽전.
8. 전견종 클럽전.

베스트 인 쇼 저지는 주최자 측에서 선고한 제1후보로부터 제5후보까지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 기타 심사위원은 주최자가 선고한 필요한 심사위원의 2배 후보자로부터 심사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장이 선임한다.

제3조 (심사위원)

1. 전람회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규정, 전람회 규정 및 전람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2. FCI전 및 -삭제-에서는 총재의 승인으로 국외에서 초청한 베스트 인 쇼 심사위원이 브리드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3. 모든 견종 클럽전의 주최자는 브리드 심사위원의 후보자 수를 1인당 심사 마리 수가 100마리 이내가 되도록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둔다.

제4조 (동일 주최자의 전람회 연속심사)

1. 동일 주최자가 개최하는 전람회의 베스트 인 스페셜티 쇼 심사위원을 동일 심사위원이 연속하여 담당할 수 있는 것은 2회까지로 한다.

제5조

1. 다음 각 호의 심사위원이 실제로 심사를 행하려면, 스튜어드 업무 3회 이상 또는 심사 실무를 위한 특별연수를 수강하여야 한다.
 - 1) 특별 심사위원 또는 유지 심사위원에서 복귀한 자.
 - 2) 심사 미경험자.
 - 3) 과거 3년 이상 심사경위가 없는 자.
2. 전항 1)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복귀원을 제출하고, 심사 실무를 위한 특별 연수회의 다음날에 복귀한다.

제6조 (FCI전 . -삭제- . KKF전의 베스트 인 쇼 심사위원의 자격) FCI전 . 클럽 연합회전의 베스트인 쇼 심사위원의 과정은 모든 견종심사위원 자격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 (과거 3년 이내에 아시아전 또는 FCI전의 심사 1회 이상으로 모든 견종 클럽전의 베스트 인 쇼 저지를 5회 이상 상담)한 자 가운데, 각기 심사위원 선고 때에 전람회 감찰 . 심사위원 선고위원회가 선고 (과거 3년 이내에 징계규정 제2조에 해당하고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선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고, 총재가 인정한다.

제3장 전람회 심사위원회

제9조 (전람회 심사위원회의 개최)

1. 전람회 심사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5월에 다음해의 전기(1~6월) 개최분의 심사위원을 선고한다.

이 경우 전람회의 주최자는 전년 3월 말일까지 '전람회 개최신청서'를 본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11월에 다음해의 후기(7~12) 개최분의 심사위원을 선고한다.

이 경우 전람회의 주최자는 전년 9월 말일까지 '전람회 개최신청서'를 본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람회 심사위원회의 선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0조 (전람회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의 및 지도)

1. 전람회 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경우에 전견종 지부전의 주최자 또는 심사위원회에 의해 선고된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선고, 선임할 수 있다.
 - 1) 같은 날에 연속된 4곳의 개최로 베스트 인 쇼 저지의 제1후보자로부터 제3후보자까지가 모두 중복해 있는 경우.
 - 2) 심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전람회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선고된 심사위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때는 주최자에게 다시 선고하도록 지도한다.

제11조 (심사위원 선고 후의 업무) 본 연맹은 심사위원의 선고 후 다음 통지를 행한다.

1. 주최자 및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통지.
2. 지부, 지회, 견종 연합회, 클럽 등에 통지.

제12조 (심사위원의 변경 또는 취소)

1. 심사위원의 변경 또는 취소가 생긴 경우 다음과 같다.

선고된 심사위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 등이 생겼을 경우 주최자가 선고하여 선임한다.
2. 심사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부득이한 이유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의 담당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 2) 사고 또는 질병 등의 경우.
 - 3) 관혼상제.
 - 4) 심사위원 자격의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3. 전견종 도그 쇼 및 지역별 도그 쇼에서는 마리 수 증가에 따른 심사위원의 추가는 행하지 아니한다.
 - 1) 특정 그룹의 진출 마리 수가 증가하여 브리드 저지의 담당 내용에 치우침이 생긴 경우.
 - 2) 예정 마리 수를 크게 웃도는 진출 마리 수가 된 경우.

제4장 규제사항

제13조 (심사위원) 전람회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선고된 심사위원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3회 이상 거부한 경우는 1년간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4조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4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전람회 감찰위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전람회 감찰위원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감찰위원

제2조 (감찰위원) 본 연맹은 전람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람회 감찰위원을 둔다.

제3조 (감찰위원의 선임) 감찰위원은 덕망있는 연맹 회원 중 총재가 임명한다. 단, 감찰위원장의 경우 감찰 위원회에서 선출 후 총재가 임명한다.

제4조 (감찰위원의 해임) 총재는 감찰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특별 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1. 감찰위원장 및 감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6조 (인원 및 운영) 감찰위원 수는 전람회 감찰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1. 전람회 감찰위원의 배정은 감찰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총재가 행한다.
2. 전람회 감찰위원회의 운영은 본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감찰위원의 파견)

1. 총재는 필요한 각종 전람회에 감찰위원을 파견한다.
2. 감찰위원의 파견비용은 본 연맹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전람회 감찰위원증 . 휘장의 교부)

1. 본 연맹은 감찰위원에 전람회 감찰위원증(이하 '감찰위원증'이라 한다) . 휘장을 교부한다.
2. 감찰위원은 직무에 종사할 때는 감찰위원증을 휴대하고, 전람회 관계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제시하여야 한다.
3. 감찰위원은 직무에 종사할 때는 감찰위원증을 착용해야 한다.

제9조 (전람회 감찰위원증 . 회장의 반환) 감찰위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시 감찰위원증 . 회장을 본 연맹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직무

제10조 (직무의 수행과 보고) 감찰위원은 지정된 전람회의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찰위원의 복무시간은 전람회 개시 1시간 전부터 종료까지로 한다.
2. 감찰위원은 전람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람회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찰내용) 감찰위원은 당일 행사장에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감찰하고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가능한 한 개선하도록 주최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1. 전람회의 운영에 대하여
 - 1) 출진목록 필요사항의 기재 . 광고내용 등이 규정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 2) 전야제 또는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는지 여부.
 - 3) 주최자의 책자, 현수막 등에 행사 명칭과 주최, 주관자의 명칭 사용은 적절하게 행해졌는지 여부.
2. 전람회장의 시설운영(施設運營)에 대하여
 - 1) 출진 두수에 대응한 링 배치와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2) 주차장의 공간과 관리는 적절한지 여부.
 - 3) 옥외의 전람회장은 우천 . 직사광선 등 기후를 배려하여 텐트 등의 준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 4) 전람회장 환경 정리를 위한 규격 쓰레기 봉투 또는 휴지통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제12조 (감찰 보고서) 감찰위원은 전람회 감찰 보고서 작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람회 주최자에 관한 사항.
2. 심사에 관한 사항.
3. 진행에 관한 사항.
4. 핸들러(출진자)에 관한 사항.
5. 갤러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4장 권한

제13조 (권한) 감찰위원은 핸들러, 출진자, 갤러리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 . 스튜어드에 대한 폭력행위.
2. 심사위원 . 스튜어드에 대한 폭언.
3. 출진견에 대한 폭력행위.
4. 심사 중에 관계자에 대한 항의 행위.
5. 심사 예의에 대한 불미스런 행위 (링 내에서의 흡연 . 입상하는데 부적절하게 방해 행위를 하는 것.)
6. 전람회장 환경 정리를 저해하는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 동반견의 배변 방치, 흡연 등)
7. 전람회의 적정한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부적절한 행위. (지정된 주차장소 이외의 주차행위, 허가되지 않는 장소내의 물품 판매, 텐트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등)

제14조 (사안별 조치)

1. 감찰위원은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 1)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 (1) 구두 주의.
 - (2) 구두 권고.
 - (3) 시말서 제출.
 - 2)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 (1) 해당자의 퇴장.
 - (2) 해당자의 출진견 당일 수상 취소.
 - (3) 해당자의 소유견 출전 정지.
 - (4) 해당자의 전람회장 출입 금지.
2. 전항 2)의 (1)부터 (4)의 조치기간에 대하여는 추급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3. 감찰위원은 전람회장에서 조치를 행하지 못한 사항을 전람회 감찰 보고서에 의해 총재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전면개정 2011년 2월 19일 (정관 변경에 따라 전면 개정함.)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심사위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도그쇼 심사위원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KKF 심사위원

제2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며 본 연맹이 그 자격을 인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속) 심사위원은 본 연맹에 소속한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간 동안 심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종류)

1. 심사위원의 종류와 각 전람회에서의 담당할 수 있는 심사는 각 각 다음과 같다.

1) KKF 견종 심사위원

- (1) KKF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견종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2) KKF 견종별 클럽 및 연합회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받은 견종의 베스트 인 스페셜티쇼(best in specialty show)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3) KKF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견종의 베스트 오브 브리드(best of breed)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2) KKF 그룹 심사위원

- (1) KKF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그룹에 속하는 견종들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2) KKF 스페셜티쇼 도그쇼 · KKF 견종별 클럽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그룹에 속하는 견종들의 베스트 인 스페셜티 쇼(best in specialty show)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3) KKF 그룹별 클럽 및 연합회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받은 그룹의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4) KKF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그룹의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3) KKF 전견종 심사위원

- (1) KKF 도그쇼에서 전견종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2) KKF 도그쇼에서 전견종의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4) FCI 견종 심사위원

- (1) FCI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견종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2) FCI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견종의 베스트 오브 브리드(best of breed)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5) FCI 그룹 심사위원

- (1) FCI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그룹에 속하는 견종들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2) FCI 도그쇼에서 심사자격을 승인 받은 그룹의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3) FCI 그룹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그룹 심사가 가능한 FCI 그룹 심사 위원으로써 소속된 애견단체와 초청 국가가 승인한 경우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심사를 할 수 있다.

6) FCI 전견종 국내 심사위원

- (1) 국내에서 개최되는 FCI 도그쇼에서 견종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2) 국내에서 개최되는 FCI 도그쇼에서 전견종의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출진 견종이 100견종이 넘지 않을 경우 가능.
- (3) 외국에서 개최되는 FCI 도그쇼에서는 FCI 심사자격을 승인받은 그룹 및 견종에 한하여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7)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

- (1) FCI 도그쇼에서 전견종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 (2)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FCI 도그쇼에서 전견종의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까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2. 베이비 매치 쇼 및 퍼피 매치 쇼에서도 상기 1)~3)에 준한다.

제5조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본 연맹의 규정 및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국내·외 우호단체에서 심사를 행할 경우는 사전에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자격기준)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최소 2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2. 본 연맹에 정회원으로 등록한 자.
3. 번식자로 아래 1)~3)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 1) 자국 FCI 단체의 공식 스퍼드 북에 개를 등록하여 혈통서를 발급 받은 자.
 - 2) 5년 이상 쇼 출진자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자.
 - 3) 5년 이상 개와 관련된 활동적이고 책임 있는 일을 해 온 자.
4. 사무처 주최 도그쇼에서 스텐더드 경력 또는 도그쇼 운영 및 진행 총괄 등의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으로 5회 이상 참여한 자. 단, 스텐더드 경력의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스텐더드 1회, 서브 스텐더드 2회, 메인 스텐더드 2회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 - 삭 제 -
6.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제7조 (자격의 취득) 심사위원의 자격은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총재의 재가를 얻어 취득한다.

제8조 (심사위원 시험 및 과목)

1. 심사위원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본 연맹 주관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자격 및 승급시험
 - 1) 단견종 심사위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이 주관하는 소정의 심사위원 후보 교육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견종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연맹 요금 규정에 의거한다.
 - 2) 단견종 심사위원이 견종 추가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견종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단, 견종 추가 시험은 한번에 2개 견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3) 단견종 심사위원이 그룹견종 심사위원으로써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1,2,3,5,8,9,10 그룹은 최소 5개 견종, 4 그룹은 최소 3개 견종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6, 7 그룹은 최소 5개 견종에 대한 필기시험과 최소 3개 견종에 대한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4) 그룹 심사위원이 그룹 추가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그룹의 최소 5개 견종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5) 그룹 심사위원이 전건중 심사위원으로써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개 그룹에 대한 심사자격을 취득한 후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1, 2, 3, 9그룹 중에 최소한 1개 그룹 이상의 심사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3. 단계별 심사위원 시험과목

심사위원 규정 별표 1과 같다.

4. 시험내용은 연맹 사무처와 심사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심사위원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 및 실기시험을 각각 70점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하며, 실기시험은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자를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9조 (심사위원 교육) 심사위원은 년 2회 이상 본 연맹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2년간 심사배정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위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10조 (자격취소) 다음 각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의 직권 또는 제적 인원 과반수 참석 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재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심사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심사능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심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6. 상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
7. 심사위원 규정 제 5조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11조 (상벌) 심사위원에 대한 상벌 사항은 본 연맹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권한)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심사분야에서 일체를 총괄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다.
단, 심사방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금지) 심사위원이 결정한 성적과 평가는 절대적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4조 (퇴장)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비난, 중상 또는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출진자 또는 핸들러에게 심사위원은 당해건의 심사를 중지하고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평) 국내·외 모든 전람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은 본 연맹에 심사 보고서 또는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는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2년간 국내·외 전람회 심사배정 및 해외 심사 승인을 불허한다.

제16조 (심사배정) 심사배정은 심사위원장과 논의 후 연맹 사무처에서 배정하며 심사 개시 15일 이전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적용) 본 규정에 따르지 않는 심사위원의 심사성적은 공인할 수 없다.

제3장 FCI 심사위원

제18조 (FCI 심사위원의 조건) FCI 심사위원의 조건은 FCI 심사위원 규정을 준수하고, FCI 심사위원 규정 개정 시 우선 반영한다.

제19조 (FCI 심사위원에 관한 정의) FCI 심사위원에 관한 정의는 FCI 심사위원 규정에 준한다.

제4장 부칙

제20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9조, 10조, 14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4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5조, 16조, 18조, 1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4조, 6조, 8조, 9조, 10조, 18조, 19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3조, 4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6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1일(제3조, 제5조, 제8조 5항, 제18조, 제19조)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8조 1항, 제18조, 제19조)

일부개정 2013년 6월 25일(제4조 1항, 제6조 3항, 4항, 제8조 2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8조, 제19조, 제20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8조)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1조, 제6조, 제8조, 제15조)

[별첨 1]

단계별 심사위원 시험과목(심사위원 규정 제8조)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고
자격 시험	• KKF / FCI 정관 및 제 규정 • KKF / FCI 규정외 다른 추가 규정 • 해당 견종의 행동 및 해부학, 형태학 • 해당 견종의 유전학, 건강, 성격 • 심사위원의 태도, 원칙, 심사기술 • 해당 견종의 견종표준	• 6개월 이상의 5마리를 대상으로 1~5위까지의 순위 결정 • 견종의 Standard(스탠다드), Type (타입), Soundness(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건강함), Quality(퀄리티), Balance(균형), Condition(상태), Character(캐릭터) 등의 심사	
승급 시험	• 해당 견종의 행동 및 해부학, 형태학 • 해당 견종의 유전학, 건강, 성격 • 심사위원의 태도, 원칙, 심사기술 • 해당 견종의 견종표준	• 6개월 이상의 5마리를 대상으로 1~5위까지의 순위 결정 • 견종의 Standard(스탠다드), Type (타입), Soundness(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건강함), Quality(퀄리티), Balance(균형), Condition(상태), Character(캐릭터) 등의 심사	

FCI 심사위원 규정 (FCI Regulations for Show Judges)

- 목 차 -

1. 일반
2. 도그쇼 심사위원 신청, 교육, 시험, 임명 최소 자격요건
3. 도그쇼 심사위원 정의
4. 추가 견종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5. 그룹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6.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7. FCI 전견종 국내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8.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인정되는 일반 조건
9. 도그쇼 심사위원의 일반 의무
10. 여행, 보험 협정
11. 처신
12. 처벌
13. 시행

1. 일반

아래 1조부터 8조에 명시된 내용은 자신의 법적 소재지인 FCI 회원국으로부터 개인이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모든 FCI 회원국과 약정 파트너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며 FCI의 최소 요구 사항으로 여겨진다. FCI가 정한 기본 의무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을 첨가하고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각 FCI 회원국 소관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각 회원국의 규정이 FCI의 규정과 위배되서는 안 된다.

2. 도그쇼 심사위원 신청, 교육, 시험, 임명 최소 자격 요건

신청인의 법적 소재지인 FCI 회원국 규정에 따라 도그쇼 심사위원 후보자의 신청이 접수된다.

각 FCI 회원국은 후보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과정과 충족할 만한 기본 심사위원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도그쇼 심사위원 공식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이 교육은 이 규정에 명시된 최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신의 최초 견종을 신청한 후보자는 FCI 국제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승인받기 위해 다음의 요구 사항을 필히 충족해야 한다.

- a. 최소 법정 연령 이어야 한다.
- b. 한 견종 이상 신청 시, 그 신청인은 등록된 견사호를 가진 브리더로 활동하며 회원국의 공식 스타드 북에 자견을 등록시켰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도그쇼 출진자로 성공적인 결과를 취득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애견과 관련된 일에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 c. 도그쇼 절차 및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기간동안, 5번 이상 링 스텐더드나 링 비서로 공식적인 도그쇼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d. 후보자는 해당 FCI 회원국이 지정한 “공식 시험 위원회”가 주관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다음 과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비 필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 1) 개의 움직임, 해부학, 형태학
 - 2) 유전학, 건강, 성격
 - 3) 견종 스탠다드 지식
 - 4) 심사위원의 처신, 원칙, 심사 기법
 - 5) 국내 도그쇼 규정과 다른 추가 국내 규정
 - 6) FCI 도그쇼 규정, FCI 도그쇼 심사위원 규정, 다른 추가 규정

후보자가 위의 기본 지식 사항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에 다음의 세부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첫 번째 교육 과정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개를 보는지 배운다. 이 과정은 해당 FCI 회원국의 특별 양성 프로그램에 종사했던 아주 경험 많은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e. 후보자는 실기 과정에서 견종, 규정, 링 절차에 관한 완벽한 이해 및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교육받고 있는 많은 도그쇼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실기가 이루어진 것이며, 먼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실기의 양과 기간은 각 FCI 회원국이 정한다.

f.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각 견종 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견종별 교육”은 각 회원국에서 흔한 견종, 도그쇼에 상당한 두수가 출진하는 견종, 심사위원과 후보자에게 교육하고 싶은 특정 견종에 관한 교육이다.

g. 실기 교육은 경험이 풍부한 FCI 공인 도그쇼 심사위원의 감독 하에 치러져야 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교육 중 심사한 개들에 관한 보고서 작성 후, 이를 후보자의 지식, 성과, 처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심사위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기 교육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후보자는 공식 시험 위원회의 감독 하에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 위원회는 시험과 결과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h. 시험은 이론 및 실기 시험으로 구성된다. 후보자는 견종에 상관없이 최소 2마리의 개를 심사해야 한다. 후보자는 개의 생김새와 움직임에 관한 장단점을 기술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개의 건강과 복지에 유념해야 한다. 이 결과 보고서는 시험관들이 검토한다.

시험은 특별 위원회가 주재하는데, 각 FCI 회원국이 임명하고 회원국의 세부 규정을 따른다. 따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후보자는 심사 후에 베스트 오브 브리드 수상견, 평가, 상력 등이 기입된 심사보고서 (critique)를 써야 한다.

후보자는 시험 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1) 견종 스탠다드와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
 - 2) 일반 특징, 결점,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안다.
 - 3) 심사 보고서 쓰는 방법을 안다.
 - 4) 견종의 역사를 안다.
 - 5) 견종의 성격, 용도, 건강 및 문제점을 안다.
 - 6) 자국 및 다른 나라의 견종 개체수를 안다.
 - 7) 비슷하면서 연관된 견종들의 차이점을 안다.
- i. 후보자가 속해 있는 FCI 회원국이 심사위원으로 승인하고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된 후, 자신의 법적 소재지에서 승인받은 해당 견종을 최소 2년 이상 심사한 이후에야 심사위원은 본국 외 카십(CACIB)이 수여되는 해외의 FCI 도그쇼에서의 심사가 가능하다.
- j. 자신의 법적 소재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심사위원 혹은 심사위원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 견종에 관한 승인을 받는다. 단, 이 내용은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k. 후보자의 거주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해야 하고, FCI 사무처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견종, 그룹, 전 견종에 대한 후보자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에는 그 국가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다른 FCI 국가로 영구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한 지 3년 후에야 새 국가로 심사위원 자격이 이전된다. 이주 전의 국가가 더 빠른 자격 이전에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l. 그룹 심사위원 이상일 때, FCI에서 새 견종이 공인되고 그 견종이 자신이 심사 가능한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그 견종 심사가 가능하다.

m. FCI 회원국은 FCI 심사위원 명단에 위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자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명단 및 모든 심사위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매년 FCI 사무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카십(CACIB) 수여 가능 견종, 심사 가능 그룹,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에서 심사 자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명단 작성 시 FCI 견종 스탠다드 목록을 따른다.

3. 도그쇼 심사위원 정의

FCI 견종 심사위원이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견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FCI 회원국의 도그쇼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 FCI 견종 심사위원
- b) FCI 그룹 심사위원
- c)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
- d) FCI 전견종 국내 심사위원

FCI 회원국은 각 심사위원의 법적 소재지 외 국가에서의 심사 자격 정보를 FCI에 보고해야 한다.

4. 추가 견종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하나 이상의 견종 심사 자격을 가진 견종 심사위원이 추가 견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청한 해당 견종 스탠다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해당 견종에 대한 실기 시험도 필수이다.

실기 시험에서 특정 견종을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해당 견종 스탠다드에 관한 상세한 필기 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는 오직 새 견종을 추가하려는 기존 심사위원에게만 해당된다.

5. 그룹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FCI 그룹 심사위원이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으로부터 FCI 공식 그룹 중 하나 이상의 그룹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그룹 심사위원은 먼저 시작하는 5개 그룹에 한해 각 그룹마다 최소 1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FCI 그룹 심사위원은 해당 그룹의 모든 견종에게 카십(CACIB) 수여가 가능하다. 또한 승인 후 카십 쇼에서 심사 가능한 그룹의 베스트 인 그룹(BIG)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 자격이 없는 그룹으로 견종이 이전되더라도 심사위원은 해당 견종의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위원 후보자가 하나 이상의 그룹에 관해 교육받기 전에 FCI 회원국은 후보자의 심사 방식을 평가해야 한다. 견종 심사위원이 그룹 심사위원이나 전견종 심사위원 프로그램 승급을 원하면 FCI 회원국이 이를 결정한다.

FCI 핵심(Key) 그룹은 그룹 1, 2, 3, 9그룹이다.

- a. 최초 그룹 교육 이수를 위한 심사위원 필수 자격 조건은 최소 4년간, 해당 그룹에서 3견종 이상의 심사 경력이다. 각 견종을 5번 이상 심사한 경력 또한 필수이다. 대안으로, 그룹 교육 신청 전 최초 견종이 승인된 날부터 3년을 기다려야 한다.
- b. 최초 그룹에 관한 교육은 두 번째 그룹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이후 그룹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c. 먼저 시작하는 5개 그룹 중 핵심 그룹(1, 2, 3, 9)이 포함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그룹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
- d. 5개의 그룹이 승인된 이후에는 3개 이상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e. 최초 그룹의 교육 기간은 최소 2년이다. 그 이후의 교육은 1년이 가능하다.

- f. 시험은 한 견종 또는 한 그룹에 관한 실기와 해당 그룹에 관한 이론으로 이루어진다. 한 그룹 안에서 몇 견종에 대한 심사 자격이 있는 후보자가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을 경우에 한해 시험을 치루지 않고 그룹 내 다른 견종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별 교육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은 FCI 회원국의 재량이다.
- g. 5개 그룹이 승인된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에 서면으로 추가 그룹 및 전견종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 h.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에 관한 교육 중이더라도 심사위원 후보자는 이미 승인받은 견종에 관한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
- i. FCI 회원국은 심사위원이 최초 그룹 자격 획득 시 FCI에 보고해야 한다.

6.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이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으로부터 FCI 공식 승인 그룹의 모든 견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만이 전 세계의 FCI 카십쇼에서 FCI 전견종을 심사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견종 등록수를 고려하면서 해당 FCI 회원국이 FCI 전견종 국제심사위원 임명을 관할한다.

하지만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은 최초 그룹 승인 후 10년이 지난 자만이 자격 조건이 된다.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은 전 그룹의 여러 견종들에 관한 교육 및 승인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FCI 회원국은 유념해야 한다. 최소 일정 수의 견종은 심사위원의 법적 소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견종이어야 한다.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 승인 및 임명과 관련된 **필수** 정보는 **최종 승인을 위해** FCI 사무처에 보고해야 한다.

- a.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FCI 5개 그룹 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b. FCI 전건종 심사위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5개 그룹 중 적어도 하나는 핵심 그룹이어야 한다.
- c. FCI 회원국이 위에 언급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룹 심사위원 후보를 지명한다.
- d.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은 모든 FCI 10그룹 교육을 마친 것으로 여긴다.
- e. 첫 FCI 그룹 승인 날과 FCI 전건종 승인 날 사이의 최소 기간은 10년이다.
- f. FCI 요청대로 FCI 회원국은 교육 및 심사경력 세부사항이 포함된 새 FCI 전건종 심사위원 명단을 FCI에 보내야 한다.

7. FCI 전건종 국내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FCI 전건종 국내 심사위원이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으로부터 자신의 국가에서 모든 견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이 심사위원은 자신의 법적 소재지에서 열리는 카십쇼에서만 FCI 공식 승인 그룹의 모든 견종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5개 FCI 그룹 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자국에서 전건종 심사승인이 가능하다. 이는 도그쇼 출진 견종이 보통 100 견종을 넘지 않는 FCI 회원국에만 해당된다. FCI 전건종 국내 심사위원은 자국에서 FCI 그룹 및 견종 심사위원으로 승인된 견종에 한해 해외 심사가 가능하다. 전건종 국내 심사위원 승인 및 임명 정보는 FCI에 보내야 한다.

8.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인정되는 일반 조건

앞의 조항을 준수하고 FCI 회원국의 도그쇼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된 심사위원만이 인터내셔널 쇼에서 카십 수여가 가능하다. FCI 약정 파트너 심사위원의 경우는, 심사가능 견종이 FCI와 약정 파트너 간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의 승인은 받았으나 5년 이상 심사 경험이 없는 심사위원은 심사 재개 전 새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심사 권한 재부여 전에 FCI 회원국은 심사위원이 전에 승인받은 견종들을 심사할 역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심사위원이 FCI 회원국 또는 약정 파트너가 아닌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징계 중에 있지 않고, 초청국이 이를 알고 있고, FCI가 이를 동의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심사 승인 견종을 심사할 수 있다. FCI 사무처가 심사 명단을 관리하고 심사를 승인한다. FCI가 이 심사위원들을 관할한다. 단, 추가 견종 및 그룹 승인을 위한 FCI 교육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심사위원이 FCI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징계 중인 경우 외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국가에서도 자신의 심사 승인 견종을 심사할 수 있다.
-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 후보자는 자신의 새 법적 소재지에서 최소 12개월을 연속해서 거주한 후에야 새 FCI 회원국의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 법적 소재지가 변경되면 심사위원은 최대 3년 안에 새 FCI 회원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새로 이주한 FCI 회원국 책임 아래 있다.
-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 후보자가 새로 등록하려는 FCI 회원국은 결정 전에 이전 FCI 회원국에 이의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의사항이 없어야만 새 FCI 회원국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 FCI 회원국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존중의 차원에서 해당 심사위원은 새 FCI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FCI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결정이 나면 새 FCI 회원국에 심사위원 등록이 불가능하다. 해당 문서는 FCI에 보내야 한다.

9. 도그쇼 심사위원의 일반 의무

도그쇼 심사위원은 FCI 회원국 주최 도그쇼 심사 시에 자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반드시 FCI 견종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개의 기능적 건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도 스탠다드를 해석하지 않는다.

심사 시 심사위원은 이 FCI 심사위원 규정과 FCI 도그쇼 규정 및 다른 FCI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도그쇼 전에 항상 견종 스탠다드와 다른 중요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심사 시 항상 철저하고 신중해야 한다.
- FCI 스탠다드에 따라서 각 견종을 심사한다.
- 순수혈통견 복지에 관한 FCI 심사위원 의무 규약을 준수한다.
- 다른 동료 심사위원과 출진자를 존중한다.

10. 여행, 보험 협정

a. 여행협정

심사위원과 도그쇼 운영진은 "FCI 도그쇼 및 심사위원 규정 부록"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게 부록에 수록된 혜택이 제공된다.

금전과 관련된 계약은 사전에 심사위원과 도그쇼 운영진 사이에 계약서 또는 서면 협의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측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b. 보험

해외 심사 시 심사위원은 보험(항공 취소, 사고 대비 등)에 가입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

- 해외 심사가 잦은 심사위원은 연간 보험에 가입한다.
- 해외 심사가 잦지 않은 심사위원은 쇼 기간만 보장하는 단기 보험에 가입한다.

11. 처신

1) 일반

FCI 회원국의 모든 심사위원은 국제 애견계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하며, 심사할 때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심사시간에 절대 늦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심사 업무를 완전히 종료하기 전까지 도그쇼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 배정을 간청해서는 안 된다.
- 심사 전 또는 도중에 도그쇼 카탈로그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
- 도그쇼 링 안에서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모든 개를 차별 없이 심사한다. 복장은 단정하고 적절해야 하며, 항상 올바르게 품위 있어야 한다.
- 도그쇼 링 안에서 흡연은 불가능하다.
- 도그쇼 링 안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다.
- 심사 도중 링 안에서 휴대폰 사용은 불가능하다.
- 심사위원으로 심사하는 도그쇼에 견을 출진시키거나 핸들링할 수 없다.
- 심사위원이 도그쇼 당일 심사하는 견종을 제외하고, 심사위원의 배우자, 직계가족 구성원, 심사위원과 함께 사는 동거인은 다른 견종의 도그쇼 출진 및 핸들링이 가능하다.
- 심사위원으로 심사하지 않는 카십쇼에서 심사위원이 핸들링하는 견은 심사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구성원, 심사위원과 함께 사는 동거인이 브리딩하거나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견이어야 한다.
- 도그쇼 심사 전 6개월 동안 심사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 구성원, 심사위원과 함께 사는 동거인이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집에서 머무르거나, 판매한 견을 심사할 수 없다.
- 심사가 예정된 도그쇼의 출진자와 함께 도그쇼 장소까지 동행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가 예정된 도그쇼의 출진자와 어울리거나 함께 지내면 안 된다. 심사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에만 가능하다.

2) 심사 수락

- a. FCI 심사위원은 오직 FCI의 회원국 또는 산하 클럽이 개최하는 도그쇼에서만 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그쇼에 초청될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자신의 법적 소재지 FCI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3항 "심사위원 승인"에 예외 조항이 있다. 단, FCI 관할 외 국가에서 심사 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법적 소재지 FCI 회원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b. 심사위원의 법적 소재지 외 국가에서 심사 초청을 받았을 때 해당 도그쇼 운영진이 FCI 관할 내에 있는지, FCI 승인 단체에 의해 개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질의를 거쳐야 한다.
- c. 도그쇼가 클럽에 의해 개최되는 경우, 그 클럽이 FCI 회원국 또는 약정 파트너 공인 클럽인지 확인해야 한다.
- d. 심사위원의 법적 소재지 외 국가에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FCI 4개 공식 언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 적어도 한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도그쇼 운영진 요청 시 심사위원은 본인의 통역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 e.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속한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견종 심사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베스트 인 그룹과 베스트 인 쇼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f. FCI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FCI 승인 도그쇼에서 심사 시 FCI 견종 스탠다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g. FCI 비회원국 및 FCI 준회원국 심사위원은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심사 시 자신의 국가에서 승인된 견종만 심사할 수 있다.
- h. FCI 비회원국의 심사위원은 FCI 도그쇼에 초청을 받았을 때 FCI에서 발행한 규격화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초청국은 지정 기일 내에 초청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심사위원은 승인을 위해 서명한 후 초청국에 다시 보내야 한다.
- i. 심사와 관련된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일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만약 심사위원이 이중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면, 심사위원이 속한 FCI 회원국은 이를 엄격히 처벌한다.

3) 심사위원 승인

FCI 견종 심사위원이 FCI 도그쇼에서 심사하려면 자신이 속한 회원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국으로부터 견종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만이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 시 심사위원은 현재 유효한 FCI 견종 스탠다드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FCI 그룹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회원국 승인 없이도 승인 그룹의 모든 견종 및 베스트 인 그룹(BIG) 심사가 가능하다. 자국 및 초청국가가 서로 승인하고 최소 2개 이상 그룹의 심사가 승인된 FCI 그룹 심사위원인 경우에 한해 베스트 인 쇼(BIS) 심사가 가능하다.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회원국 승인 없이도 베스트 인 그룹 및 베스트 인 쇼를 포함한 모든 견종, 모든 도그쇼 심사가 가능하다.

도그쇼 운영진이 지정 기일 내에 FCI 전견종 국제심사위원에게 견종 스탠다드 제공이 가능하다면 단지 국내에서만 승인된 견종이라도 심사가 가능하다. 이는 FCI 그룹 심사 위원에게도 자신의 승인 그룹 안의 견종에 한해 똑같이 적용된다.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초청 심사위원의 최소 2/3는 FCI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FCI 심사위원(견종 - 그룹 - 전견종)이어야 한다.

12. 처벌

- 1) FCI 심사위원 규정, FCI 도그쇼 규정 및 국내 규정을 어떤 식으로든 위반한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의 관할 아래 놓이는데, FCI 회원국은 위반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심사위원을 처벌해야 한다. FCI 회원국은 심사위원의 위반 또는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집행 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 2) 해당 심사위원에 구두 또는 서면 상으로 통지하는 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심사위원 처벌과 관련되었던 사람이 항소 관련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 FCI 회원국은 다음의 처벌 사항을 고려한다.

- a) 처벌 없이 사건 종결
- b) 심사 금지에 관한 언급 또는 언급 없이 경고
- c) 일정기간 심사 금지
- d) 심사위원 자격 취소
- e) 해외 심사 거부 또는 승인 철회

4) 법적 유효 후, FCI 회원국은 이 결정 사항을 FCI에 알려야 한다.

13. 시행

특히 규정에서 최종 결정에 관한 부분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FCI 집행위원회는 그 해당 부분의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FCI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국제 행사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의 부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전체 규정이 유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FCI 총 위원회의 승인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FCI 회원국과 약정 파트너에 배포되어야 한다.

영문판이 원본이다.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FCI 총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굵은 글씨는 수정된 것으로 2014년 11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FCI 총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14년 2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FCI 도그쇼와 FCI 도그쇼 심사위원 규정 부록

도그쇼 심사위원 여행 경비에 관한 추가 규정

1. 일반 여행 경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심사위원이 도착하자마자 보상되거나 도그쇼 운영진과 사전에 맺은 협정에 따른다. 실제 주행 거리(FCI 총 위원회 결정사항, 최소 0.35유로/km), 주차비, 기차 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 항공 요금(취소 및 변경 보증금을 포함한 합리적 가격의 이코노미 클래스의 비행기 티켓), 여행 도중 식사비용 등 심사위원이 지불한 여행 경비.

2. 월드 도그쇼, 섹션 도그쇼, FCI 유럽 섹션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앞에 명시된 여행 경비 외에 심사일마다 50유로, 여행일마다 35 유로의 “일당(Daily allowance)”을 지급해야 한다.

3. FCI 유럽 섹션 외의 섹션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앞에 명시된 여행 경비 외에 심사일 및 여행일마다 35 유로의 “일당(Daily allowance)”을 지급해야 한다.

도그쇼 운영진은 모든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국내 규정에 따라 자국 심사위원에게도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문판이 원본이다.

이 규정은 2013년 10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FCI 총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굵은 글씨는 수정된 것으로 2014년 4월 칸쿤에서 개최된 FCI 총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14년 4월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FCI 도그쇼 규정 (Regulations for FCI Dog Shows)

- 목 차 -

1. 기본 규정
2. 신청
3. 제한
4. 특별 요구 조건 및 출진
5. 클래스
6. 평가 및 순위
7. 타이틀, 상, 메일 링 경기
8. 카십(CACIB)의 승인
9. 심사위원
10. 쇼 조직 위원회의 의무
11. 심사위원 제한 사항
12. 불만사항 (complaints)
13. 처벌
14. 출진 금지
15. 강제 처분

본 규정은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International Beauty Champion)을 위한 카십(CACIB)("Certificat d'Aptitude au Championnat International de Beauté de la FCI"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 자격을 위한 증서)이 수여될 수 있는 도그쇼에 한해서만 FCI의 제규정(the Standing Orders of the FCI)을 보완한다.

이러한 행사와 관련해 FCI는 수수료를 청구하며, 금액은 FCI의 총회에서 결정한다. 수수료는 해당 도그쇼의 카탈로그와 카십(CACIB)/리저브 카십(Res-CACIB) 리스트를 받는 대로 지불하여야 하며,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모든 견을 대상으로 청구된다.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참가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 규정

모든 정회원 및 준회원국은 매년 1회 이상, 카십(CACIB) 쇼를 개최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어느 도그쇼에 카십(CACIB) 경쟁부분을 개최할 것인지 단독 책임 하에 결정한다.
카십(CACIB) 쇼의 스케줄을 잡고 발표하는 것은 FCI 사무처의 직무이다.

FCI의 인가를 받은 쇼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고 명시되어야만 한다.
"International Dog Show with attribution of the CACIB of the FCI"(FCI의 CACIB을 수여할 수 있는 국제 도그 쇼)

해당 쇼의 카탈로그에는 FCI의 로고와 다음의 표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만 한다.
"Fédération Cynologique Internationale (FCI)"

2. 신청

FCI에서 인가하는 카십(CACIB) 국제 도그쇼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그쇼를 개최하기 전 4년에서 적어도 12개월 사이에 FCI 사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는 **각 성별, 견종, 품종(variety)별로** 하나씩의 카십(CACIB)만 수여할 수 있다.

월드 쇼(World show)나 해당 대륙의 섹션(Section) 쇼가 열리는 날에는 카십(CACIB) 쇼를 개최할 수 없다. 예외는 **총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불가항력으로 쇼가 취소될 경우, 조직위원회는 지불된 참가비를 부분적으로 환불해주어야만 한다.

FCI는 같은 날 열리는 여러 도그쇼의 개최지가 항공 거리로 최소 300km 떨어진 곳에 한 허가를 해 줄 것이다. 300km 미만 거리일 경우 승인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도그쇼 장소와 날짜를 고려한 적절한 FCI 그룹 배분이 추천된다.

카십(CACIB) 쇼에서 한 견종은 하루 안에 심사되어야만 하고, 동일한 FCI 그룹 견종들 또한 하루 안에 심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관리 상의 문제로 필요할 경우 그룹을 이틀로 나누어 심사할 수 있다.

카십(CACIB) 쇼 인가에 관한 결정은 FCI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책임이다.

4. 특별 요구 조건 및 출진

개의 복지는 모든 도그쇼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쇼에 나오는 견종의 견종스탠다드가 FCI 회원국의 스태드북이나 부록(웨이팅 리스트)에 등록된 FCI 인증 최종 혹은 임시 공인된 견종만을 허용한다. **스태드북에 관한 것은 똑같이 FCI비회원국에게도 적용되지만, FCI 인증견이어야 한다. FCI 비공인 견종(최종 혹은 임시공인이 아닌 경우)인 경우에는 국내 레벨로 인정받아야만 하며 혈통서는 FCI 회원국 또는 약정 파트너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견종은 어느 그룹에도 속할 수 없으며, 카탈로그의 스페셜 섹션("FCI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견종")에 나와야 하며, 카십 및 여러 FCI 타이틀 자격이 없다. 또한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 결승에서 경쟁할 수 없다.** 견종의 각 견들의 FCI 일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FCI의 카십(CACIB)이 수여되는 모든 쇼에서는 현행 FCI 견종 목록에 따라 그룹을 배분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FCI는 인터내셔널 쇼에서의 카십(CACIB)을 수여할 앞으로의 권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룹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그룹1 쉽독, 스위스 캐틀독을 제외한 캐틀독
- 그룹2 핀셔와 슈나우저 - 몰로시안 타입과 스위스 마운틴 & 캐틀독
- 그룹3 테리어
- 그룹4 닥스훈트
- 그룹5 스피츠, 프리미티브 타입
- 그룹6 센트(scent) 하운드 및 관련 견종
- 그룹7 포인팅 독
- 그룹8 리트리버 - 플러싱 독 - 워터 독
- 그룹9 컴패니언 독, 토이 독
- 그룹10 사이트 하운드

참가자가 적은 모든 쇼에서는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을 뽑기 위한 메인 링(the main ring)에서 다른 그룹을 함께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월드 쇼와 섹션(section) 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쇼의 스케줄표 및 카탈로그에는 개최국의 언어로 기재된 견종명과 더불어 견종의 원산지 또한 FCI의 4가지 공식 언어 중 한가지로 기재되어야 한다.

수컷과 암컷은 따로 출진해야 한다. **카탈로그에서** 번호는 1부터 시작하며 순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같은 견종에서 순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FCI 월드 쇼나 섹션 쇼(월드 위너, 월드 주니어 위너, **월드 베테랑 위너**, 섹션 위너, 섹션 주니어 위너, **섹션 베테랑 위너**)에서 획득한 공식 타이틀은 물론 인터내셔널 챔피언 또는 내셔널 챔피언이라는 타이틀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이 카탈로그에 기재된다.

병에 걸렸거나(잠시 아프거나 전염병에 걸린 경우), 다리는 저는 견, 고환수축증을 보이는 수컷, 젖을 분비하거나 임신한 암컷인 경우 도그쇼에서 제외된다. 발정기에 있는 암컷은 주최자의 쇼 규정에 따라 참가가 허락된다. 눈이 멀거나 귀가 먼 견들은 FCI 카십(CACIB) 쇼에 참가할 수 없다.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지 않고 심사위원이 견이 귀머거리거나 눈이 먼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링에서 이 견을 내보내야 한다.

카탈로그에 나와 있지 않은 견은 조직위원회 책임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인쇄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완벽하게 작성되고 마감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출진비는 때맞춰 납부되어야 한다.**

꼬리를 짧게 자른 견이나 귀를 자른 견의 출전 여부는 해당 견의 출신 국가 또는 쇼가 개최되는 국가의 법적 규정에 따른다. 꼬리나 귀를 잘랐는지에 대한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심사는 오로지 현재 유효한 견종 스탠다드에 따라야만 한다. **꼬리 및 귀에 관한 개최국의 규정은 도그쇼 스케줄 또는 신청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견체의 구성, 모색, 피모, 피부, 코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사용하여 개를 준비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오직 미용, 클리핑, 빗질, 브러싱만이 허용된다. 또한 준비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트리밍 테이블에 개를 묶어 두는 것도 금지 된다.

마이크로칩(ISO-스탠다드)과 색인(tattoo)은 동등하게 용인된다.

조직위원회는 쇼에서 어떤 출진자의 출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클래스

(마감일 이후의) 늦은 출진이나 이중 출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가적인 인터내셔널, 내셔널, 카십쇼 주최 회원국 소속 클럽 쇼는 카십(CACIB)쇼 운영자가 허가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연령 결정 기준일은 도그쇼 개최 당일이다.

다음 클래스만이 FCI가 허가한 카십(CACIB) 쇼에서 인정된다.

- a. 카십(CACIB)이 수여될 수 있는 클래스
 - 인터미디에트 클래스 (15-24개월) 의무적
 - 오픈 클래스 (15개월 이상) 의무적
 - 워킹 클래스 (15개월 이상) 의무적
 - 챔피언 클래스 (15개월 이상) 의무적

워킹 클래스(Working Class)

워킹 클래스에 출전하려면, 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유자의 **법적 거주지인 회원국에서** 해당 견이 해당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과 세부사항이 들어있는 FCI의 필수 증명서, **WCC(Working Class Certificate)**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워킹 클래스에는 FCI의 견종 목록에서 워킹 견종으로 발행된 견종만이 자격이 있으며, 몇 국가에서 몇 견종은 허락하는 예외를 고려한다.

챔피언 클래스(Champion Class)

챔피언 클래스에 출전하려면 공식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타이틀 중 하나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사본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 FCI 인터내셔널 뷰티 챔피언(International Beauty Champion of the FCI(CIB))
- FCI 인터내셔널 쇼 챔피언(International Show Champion of the FCI(CIB))
- FCI 회원국 내셔널 뷰티 챔피언 (적어도 2회의 CAC를 획득해야 함)
- FCI 회원국 내셔널 쇼 챔피언
- FCI와 협약을 맺은 FCI 비회원국 내셔널 뷰티 챔피언
- FCI와 협약을 맺은 FCI 비회원국 내셔널 쇼 챔피언

일단 출진이 마감되면, 인쇄 실수가 아닌 한, 한 견을 다른 클래스로 옮기는 것을 금지한다.

b. 카십(CACIB)이 수여될 수 없는 등급

- 마이너 퍼피 클래스 (접종을 마친 퍼피 ~6개월) 선택적
- 퍼피 클래스 (6-9개월) 선택적
- 주니어 클래스 (9-18개월) 의무적
- 베테랑 클래스 (8살 이상) 의무적

c. 선택적인 베스트 오브 섹스 대회(Best of Sex competition)

이 클래스는 적어도 베스트 주니어, 카십 위너, 베스트 베테랑을 포함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이들이 어느 클래스인지 고려하지 않고 평가 순으로 정한다.

d. 선택적인 단체 그룹/대회

이 그룹/시합에 출전하려면, 견들은 필수적 클래스 중 하나에 개별적으로 출진해야 한다.

- 브레이스/ 커플 그룹/대회 : 같은 견종 및 품종이 같은 소유자에 속한 수컷과 암컷
- 브리더스 그룹/대회 : 성별 구별 없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도 같은 사람에 의해 브리딩된(동일한 켄넬 이름) 최소 3마리, 최대 5마리의 같은 견종 및 품종으로 구성
- 프로저니 그룹/대회 : 최소 3마리, 최대 마리의 자식을 가진 모견 또는 부견

이 옵션 그룹/시합은 가급적이면 견종 심사 링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견종 심사 위원회는 베스트 그룹을 선정하고 이 그룹은 명예의 링(Ring of honour)에서만 경쟁할 수 있다.

6. 평가 및 순위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는 다음의 정의와 일치해야 한다.

엑셀런트(EXCELLENT)는 이상적인 견종 스탠다드에 매우 가까운 개에게만 수여되는 것으로, 상태가 우수하고 조화롭고 잘 균형 잡힌 기질(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클래스이고 훌륭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해당 견종의 우수한 특질을 지녔다면 사소한 결점은 무시될 수 있으나 성별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베리 굿(VERY GOOD)은 그 견종의 전형적인 특색과 균형이 잘 잡힌 비례를 갖추고, 상태가 올바른(좋은) 견에게만 수여된다. 몇몇 사소한 결점은 허용될 수 있다. 품위 있는 개에게만 수여할 수 있다.

굿(GOOD) 등급은 해당 견종의 주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개에게 수여된다. **장점이 단점보다 많아서 그 견종의 좋은 예라고 고려될 수 있다.**

서피션트(SUFFICIENT,충분)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특징이 결여되거나 신체적 조건이 약간 미흡하지만 해당 견종에 그럭저럭 일치하는 개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실격(DISQUALIFIED)는 그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유형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행동 내지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견, 고환 이상이나 하악 이상을 보이는 견, **모색과 피모가 견종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거나** 색소 결핍 증상을 보이는 견에게 부여된다. 또한 해당 견종의 한 가지 특성에 거의 일치하지 않아서 건강이 위태로운 견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 또한 견종 스탠다드에서 **실격 사유**에 나타난 견들에게도 수여된다. **그 견이 왜 이 등급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서면 보고서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상기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견들은 다음 판정과 함께 링에서 나오게 된다.

심사불가(CANNOT BE JUDGED): 꼼짝하지 않거나 핸들러에게 자꾸만 뛰어오르거나 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걸음걸이와 동작을 평가할 수 없는 견, 또는 심사위원이 심사할 수 없도록 계속 피하고, 무는 모습(bite)과 치아나 골격, 해부학적 구조, 꼬리, 고환 등을 살펴볼 수 없도록 계속 피하는 견, 또는 의도적으로 속일 목적으로 시술된 것으로 보이는

수술이나 치료의 흔적이 있는 견 등에게 내려지는 등급이다. 심사위원이 본래의 조건이나 특색(눈꺼풀, 귀, 꼬리 등)을 교정하려는 의도의 수술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질 경우에도 같은 등급이 적용된다. 그 견이 왜 이 등급(심사불가)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서면 보고서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최소한 “베리 굿(Very Good)”이상의 자격 조건을 받아야만 각 클래스에서의 베스트 독 4마리가 될 자격이 있다.

7. 타이틀, 상, 메일 링 경기

카십(CACIB)-Certificat d’Aptitude au Championnat International de Beaute de la FCI

카십(CACIB)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견들은 인터미디어, 오픈, 워킹, 챔피언 클래스에서 “EXCELLENT 1석”을 수여 받은 견들이다.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된 해당 견만이 카십(CACIB)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십(CACIB)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 필수적으로 “EXCELLENT 1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언급된 클래스에서 “EXCELLENT”로 평가된 견 중 두 번째로 우수한 개에게 리저브 카십(Reserve CACIB)이 수여된다. **카십이 수여된 클래스의 2석견이 “EXCELLENT”를 수여받은 경우 리저브 카십전에서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리저브 카십(Reserve CACIB)을 수여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심사위원은 그 견이 연령 또는 FCI에서 인정하는 스태드북 등록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일 없이, 견의 자질에 따라 카십(CACIB)이나 리저브 카십(R.CACIB)을 수여한다.

CAC(Certificat d’Aptitude au Championnat) 은 국내 등급이다. 어떤 클래스의, 어떤 견에게 이 증명서를 수여할지는 국내 캔넬 클럽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 CAC는 국내 챔피언 타이틀로 이용된다.

FCI 회원국의 내셔널 챔피언 첫번째 타이틀을 위해서는 각각 다른 날에, 같은 국가에서, 같은 회원국이 개최한 도그쇼에서 최소한 2개의 CAC를 획득해야 한다.

카십(CACIB)을 포함한 모든 상은 각 성별과 견종별로 한 명의 심사위원이 수여하며 담당 심사위원은 사전에 임명된다.

베스트 오브 브리드(BOB)와 베스트 오브 어퍼짓 섹스(BOS)

“EXCELLENT”를 받은 각 성별의 베스트 주니어, 카십 워너, 베스트 베테랑들이 베스트 오브 브리드(BOB)전에서 경합한다. 심사위원은 BOB 다음으로 베스트 오브 어퍼짓 섹스(BOS)를 선정해야 한다.

선택 사항(선택적인 베스트 오브 섹스 대회가 열리는 경우) : 베스트 오브 섹스 대회의 베스트 수컷과 베스트 암컷이 베스트 오브 브리드(BOB)와 베스트 오브 어퍼짓 섹스(BOS)를 위해 경합한다.

아직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임시공인의 지위를 가진) FCI 견종의 견들은 카십(CACIB)자격은 없으나, 베스트 오브 브리드(Best of Breed),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과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러한 견종은 또한 여러 FCI 타이틀을 위해 경쟁할 수 있다.

메인 링 경기: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 브리더 그룹(Breeders' Group), 프로제니(Progeny, 자손) 그룹, 커플 클래스(Couple Class – 브레이스(Brace)), 베스트 베테랑(Best Veteran), 베스트 주니어(Best Junior), 베스트 퍼피(Best Puppy), **베스트 마이너 퍼피(Best Minor Puppy)**, 주니어 핸들링(Junior Handling) 등 각각의 경쟁 부분은 사전에 임명된 한 명의 심사위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명예의 링(ring of honor)** 심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출진견 또는 그룹을 별도의 링에서 제 시간에 예비 심사해서 메인 링에서는 심사위원이 재빨리 준결승 또는 결승견을 고를 수 있다.

각 해당 회원국에서 승인받은 심사위원만이 이러한 쇼에서 심사가 가능하다.

만약 링(견종-그룹-결승)에서 견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담당 심사위원이 목격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주의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며, 남은 대회를 위해 해당견을 실격시켜야 한다. 그 날의 모든 상력과 타이틀은 취소된다.

8. 카십(CACIB)의 승인

적합한 심사위원이 카십(CACIB)을 신청하면 FCI가 최종 승인을 한다.

신청된 견이 카십(CACIB)으로 승인될 조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은 FCI 사무처의 의무이다.

출진자에게 전달된 카드는 해당 개가 카십(CACIB)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한다. 카드는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FCI”

(FCI의 승인을 받아야 함)

FCI 사무처는 카십(CACIB)이 정확하게 수여되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전람회가 끝난 지 최소 석 달 안에 카탈로그 2부와 카십(CACIB) 및 리저브 카십(Reserve CACIB)을 신청한 견의 목록을 FCI 사무처에 발송하여야 한다.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카탈로그 번호, 견의 이름, 스태드북 및 스태드북 번호, 성별, 견종 및 품종(variety), 출생일, 소유자의 성명과 심사위원의 성명, 카십(CACIB)이 수여된 클래스

견종은 FCI 공식 언어 4개 중 하나로 쓰인 이름에 따라 목록에 기입되며, 쇼가 개최되는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 뒤에 함께 기입된다.

만약 어떤 견이 카십(CACIB) 목록에서 누락되었다면(빠뜨리거나 해서) 같은 견종이며 같은 성별의 다른 견이 목록에 올라있지 않는 한 신청카드를 증거물로 받아들인다.

9. 심사위원

심사한 심사위원만이 어떤 자격이나 순위, 카십(CACIB) 수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이나 그 누구의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

견에 대한 심사와 평가는 자국 단체로부터 해당 견종을 심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심사위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무 중 심사위원은 현재 유효한 현행 FCI의 기준에 따라서만 심사를 해야 한다.

FCI 비회원국의 심사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 기구가 계약상 협정이나 신사 협정에 의해 FCI와 연계되었을 경우에만 FCI 쇼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심사위원은 자국 단체의 공식 목록에 이름이 등재돼 있을 때에만 FCI 쇼에서 심사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 a. FCI 쇼에 초청된 심사위원 가운데 FCI 비회원국의 심사위원은 FCI가 발행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작성해야만 한다. 설문지는 기한 내에 배포될 것이며 승인 서명과 함께 반환되어야 한다.
- b. FCI 비회원국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될 쇼 개최국의 단체는 설문지에 포함된 정보의 유효성(확실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c. FCI 비회원국의 심사위원은 FCI가 인가한 쇼에서 심사를 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FCI의 견종 스탠다드에 따라야만 한다. 심사위원을 초청한 쇼 조직위원회는 그 심사위원에게 그가 심사하게 될 견종에 대한 FCI 스탠다드를 발송해야만 한다.
- d. FCI 비회원국의 심사위원은 FCI 쇼에서 심사를 할 때 **자신의 단체에서는 전견종 심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애견단체에서 인정한 견종만을 심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 e. FCI 비회원국의 심사위원은 사전에 다른 중요한 절차 상의 문제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FCI 쇼 규정>Show Regulations)에 대해서도 사전에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쇼를 개최하는 단체 **쇼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이러한 **필수 정보**를 해당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10. 쇼 조직 위원회의 의무

쇼 조직 위원회는 FCI 심사위원 규정과 **FCI 도그쇼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FCI는 FCI 국제 도그쇼 체제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우발적 사건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 보험은 쇼 조직위원회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심사위원 초청

- a. 쇼 조직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서면 초청장을 보내야 한다. 심사위원은 위원회에 초청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를 진다.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서의 의무를 항상 수행하여야만 한다.
- b. 어떤 중요한 이유로 심사위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쇼 조직위원회에 전화, 팩스, 전신, 전보 등의 수단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알려 주어야만 한다.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c. 마찬가지로 쇼 조직위원회 또한 초청을 반복할 수 없다. 취소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혹은 심사위원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 d. 초청을 취소해야만 할 경우, 쇼 조직위원회측은 이미 일이 일어나서 발생한 비용은 심사위원에게 보상(환불)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심사위원이 불가항력이 아닌 이유로 심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는 이미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 e.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해 해외로 초청될 경우엔 여행자 보험 계약서(비행 취소, 사고 등)에 서명해야 한다.
- f. 심사위원은 국내적 레벨로 인정된 견종들을 심사하도록 요청받을 경우, FCI 회원국 심사위원 규정을 따라야 하며, 쇼 전에 예정된 시간에 쇼 조직 위원회로부터 견종 스탠다드를 제공받아야 한다.
- g. 모든 FCI 국제쇼에 초청된 심사위원단 중 최소 2/3의 심사위원(견종 심사-그룹 심사-전견종 심사)들은 FCI 회원국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어야 한다. **만약 2명의 심사위원만 초청했다면 둘 다 FCI 회원국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어야 한다.**
- h. **FCI 정회원국의 FCI 견종 심사위원은 쇼 전에 자국 단체로부터 견종 심사 및 명예의 링 최종심사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법정거주지인 회원국의 심사위원 명단이 FCI 심사위원 리스트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리스트가 인쇄되었는지에겐 제한없이).** FCI 회원국의 FCI 그룹 심사위원은 그들이

심사 가능한 그룹의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뿐만 아니라 그 그룹의 모든 견종을 국내 애견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도 심사할 수 있다. 이들은 자국 단체와 초청국이 승인하고, FCI 그룹 중 최소 2그룹 심사가 가능한 FCI 그룹 심사위원일 경우에는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심사를 할 수 있다.

- i. FCI **정회원국**의 FCI의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자국 단체 인가 없이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를 포함한 모든 견종, 모든 대회를 심사할 수 있다.

- j. **100견종 미만이 등록된 FCI 정회원국**의 FCI의 전견종 국내 심사위원들은 자국의 애견단체에서 인정한 견종만을 심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FCI 심사위원 리스트에 등록된 경우 외에는 필히 자국의 애견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종 배정

심사위원은 그가 심사하기로 예정된 견종, 견 두수, **명예의 링에서** 그의 의무에 대해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보내주는 것은 조직 위원회의 책임이다.

조직위원회에 각 출진견에 대한 개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한 시간에 20마리, 하루에 80 마리 이상의 견을 심사할 수 없다.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루에 150 마리 이상은 심사해서는 안 된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심사위원의 병환이나 날씨로 인한 직전 취소의 경우에, 심사위원이 서면 보고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심사두수는 100에서 200마리까지이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심사위원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주 숙련된 링 스텐드와 보조가 배치되어야 한다. **100마리 넘게 심사할 경우 심사위원은 서면 보고서 없이 심사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권한

심사위원이 거주국이 아닌 곳에서 개최되는 FCI 인터내셔널 쇼에 참석하러 갈 때의 권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사전의 협약에 따라 쇼 조직위원회 또는 초청 클럽에서는 심사위원이 개최국에 도착할 때부터 개최국을 떠날 때까지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대개 쇼가 개최되기 하루 전 날과 다음 날을 포함한다.

- b. 심사위원은 그가 임명된 기간 동안 적당한 숙박시설을 제공받아야 하며, 심사위원의 여행 협정에 따르면 기한은 쇼의 전날 밤과 쇼의 다음날 밤까지를 포함한다.
- c. 심사위원은 "도그쇼 부록과 FCI 쇼 심사위원 규정"와는 다르게 쇼 조직위원회와 자유롭게 사적인 합의가 가능하나 그러한 개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록에 언급된 이익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 d. 재정적인 사항은 사전에 심사위원과 조직위원회 사이의 계약서 형식 또는 서면 협의서 형식으로 합의되는 것이 타당하며 양측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링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

토이 견종 및 다른 소형 견종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한 테이블 위에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심사위원이 링을 담당한다.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프 링 스튜어드(Chief ring steward)는 심사위원과 상의해야 하며 심사위원 협의 하에 결정된다.**

운영 지원을 위해 **링 스튜어드(Ring steward) 한 명과 서기(Writer) 한 명이** 심사위원을 보조하며, 이들과 치프 링 스튜어드는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FCI 공식 언어 중 하나를 구사해야 한다.

스튜어드와 서기는 쇼 조직위원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링 스튜어드는 개최국의 쇼 규정은 물론 FCI의 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FCI 회원국은 스튜어드와 보조를 위한 시스템과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스튜어드와 서기는 다음의 서비스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클래스 별로 출진자를 모이게 한다
- 각 클래스의 불참자를 확인한다
- 심사위원에게 핸들러 변경이나 비정규 참가 등을 알린다
- **심사위원이 요구해 평가서를 받아 쓸 경우 심사위원이 선택한 (미리 쇼 조직위원회와 상의해서) 언어로 기입하여 심사위원은 본인이 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링 밖 별도의 장소에서 평가서 번역이 이루어진다.**

- 필요한 문서업무를 체계화하고 상을 배포한다
- 심사위원의 모든 지시를 따른다

11. 심사위원 제한 사항

- 심사위원은 심사시간에 절대 늦어서는 안되며, 자신이 심사하기로 한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기 전까지 도그쇼 장소를 떠나서는 안된다.
-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비평(비난)해서는 안된다.
-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사위원은 심사 임명을 해달라고 간청해서는 안된다.
-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하기 전 또는 도중에 도그쇼 카탈로그(출진책자)를 참고해서는 안된다.
- 도그쇼 링에서 심사위원은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모든 개를 차별 없이 심사해야 한다. 그는 수행할 임무에 맞춰 단정하고 적절하게 차려입어야 하며, 방정하고 품위 있어야 한다.
- 도스쇼 링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 심사하는 동안 링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 심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쇼에서는 견을 출진시키거나 핸들링할 수 없다.
- 심사위원이 도그쇼 당일 심사하는 견종을 제외하고 심사위원의 배우자, 직계 가족 구성원,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견종의 도그쇼 출진 및 핸들링이 가능하다.
- 직접 심사를 하지 않는 카십(CACIB)쇼에서 심사위원이 핸들링하는 경우는 심사위원 자신, 배우자, 직계 가족, 함께 사는 사람이 브리딩하거나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인 견만이 가능하다.
- 도그쇼 심사 전 6개월 동안 심사위원 자신, 배우자, 직계 가족, 함께 사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집에서 머무르거나, 판매한 견을 심사할 수 없다.
-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할 도그쇼 출진자와 함께 도그쇼 장소까지 동행할 수 없다.
-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할 도그쇼에 출진할 출진자와 교제하거나 함께 머무를 수 없다. 자신의 심사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만 가능하다.

12. 불만사항 (complaints)

견에 대한 평가, 순위, 타이틀 수여와 관련해 심사위원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쇼의 운영에 관한 불만 사항 및 평가, 순위, 수여에 있어 절차 상의 불만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쇼 조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금으로 출진비 2배의 금액을 기탁해야 한다. 불만 사항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증금은 조직위에게 양도되며, 정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보증금은 불만을 제기한 자에게 환불된다.

13. 처벌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FCI는 관련된 조직위원회가 1년에서 수 년간 카십(CACIB)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처벌 결정은 관련된 조직위원회의 구두 혹은 서면 진술이 행해진 후 FCI 총위원회에서 내려진다. FCI 총위원회에서 부과한 처벌에 대한 항소의 판결은 최종 단계로서 FCI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14. 출진 금지

FCI의 회원 및 약정 파트너는 국가법에 따라 쇼에 출진 금지된 모든 개와 출진자의 목록을 발표해야만 한다. 모든 쇼 조직위원회는 이 금지령을 준수해야 한다.

15. 강제 처분

카십(CACIB) 쇼의 각 조직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규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 특정 불만 사항이 있을 시에 FCI 총 위원회는 이 규정들이 출전자, FCI 심사위원, 그리고/혹은 쇼 조직위원회로부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중재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카십(CACIB)의 취소 포함) 이 결정들은 FCI 인터내셔널 쇼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이 규정들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돕는다.

FCI 도그쇼 부가 규정
FCI 월드 쇼 및 섹션 쇼에 관한 보충 규정

서 문

FCI 총회가 결정한 **인터내셔널 카십 쇼(International CACIB Show)**에서는 매년 1회 “월드 위너(World Winner)” 타이틀을 수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FCI의 각 섹션이 결정한 **인터내셔널 카십 쇼**에서는 매년 1회 “섹션 위너(Section Winner)” 타이틀을 수여할 수 있다. **월드 위너와 섹션 위너는 FCI 공인 및 임시견종 모두에게 수여된다. FCI 미공인 견종은 월드쇼 및 섹션쇼에 출진할 수 없다.**

월드 위너나 섹션 위너에는 “리저브(Reserve: 예비 우승자)” 타이틀이 없다. 이러한 쇼들은 FCI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

월드 쇼나 섹션 쇼는 FCI 정회원국만이 개최할 수 있다. **월드 쇼나 섹션 쇼가 개최되는 날에는 같은 대륙에서 카십(CACIB)을 수여하는 다른 쇼를 개최할 수 없다.** 쇼가 개최되는 지역에 상관 없이 월드 쇼와 섹션 쇼 사이에는 최소한 6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만 한다. 월드 쇼와 섹션 쇼(같은 섹션 내에서 개최될 경우)는 최소 3개월의 간격을 두어 개최되어야 한다. 월드 쇼 개최일이 우선한다.

월드 쇼와 섹션 쇼의 참가비는 모든 출진자에게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각 국가 단체 클럽의 회원들에게는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1. 규정

“월드 위너” 혹은 “섹션 위너” 타이틀은 카십(CACIB)(수여 규정은 FCI 도그쇼 규정 7항을 참고)을 신청한 암/수 견에게 수여될 수 있다. 상기 타이틀의 수여는 특정 견종에의 참가 숫자와 관계 없다. **FCI 임시견종일 경우 월드와 섹션 위너 타이틀은 인터미디에트, 오픈, 워킹, 챔피언 클래스에서 선정한 베스트 독과 베스트 비치에게 수여된다. 이 견종은 카십 자격이 없다**

“EXCELLENT” 를 받은 베스트 주니어 독과 비치(the best junior dog and bitch)만이 “월드 주니어 위너(World Junior Winner)” 혹은 “섹션 주니어 위너(Section Junior Winner)” 타이틀을 수여 받을 수 있다.

“EXCELLENT”를 받은 베스트 베테랑 독과 비치(the best veteran dog and bitch)만이 “월드 베테랑 위너(World Veteran Winner)” 혹은 “섹션 베테랑 위너(Section Veteran Winner)” 타이틀을 수여받을 수 있다.

주니어와 베테랑 위너 타이틀은 FCI 카십 분배 리스트에 따라 수여된다.

주니어 및 베테랑 클래스에서 “EXCELLENT 1석”을 받은 베스트 주니어 독, 베스트 주니어 비치, 베스트 베테랑 독, 베스트 베테랑 비치, 카십(CACIB)이 수여된 암, 수 견이 “베스트 오브 브리드(Best of Breed)”와 **“베스트 오브 어퍼짓 섹스(Best of Opposite sex)”** 부문에서 경쟁한다.

“베스트 오브 브리드”와 **“베스트 오브 어퍼짓 섹스(Best of Opposite sex)”**를 포함한 상기 타이틀은 사전에 임명된 한 사람의 심사위원이 수여한다.

모든 견은 **FCI 도그쇼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 심사위원의 보고서는 선택적이다. 심사위원은 개최국의 모국어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쓰거나 혹은 FCI의 공식 언어 중 한 가지를 **심사위원이 선택해**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하며 보고서 형식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하고 번역의 책임이 있다. 조직위원회는 출진자가 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쇼 스케줄에 알려주어야 한다.

월드 쇼와 섹션 쇼에서 그룹 구분은 현행 “FCI 견종 목록”(FCI Breed Nomenclature)을 따라야만 한다. 각 개별 그룹들은 같은 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날의 위너(Winner of the day)” 경쟁 부문은 개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모든 “그룹 위너”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

각 월드 및 섹션 도그쇼가 개최되는 동안 조직위원회는 월드 및 섹션 오비디언스 대회와 (World and Section Obedience Competition)와 **월드 및 섹션 주니어 핸들링 대회(World and Section Junior Handling competition)**를 함께 개최할 수 있다.

2. 쇼 그라운드 및 링에 관한 규칙

월드 쇼와 섹션 쇼는 해당 목적에 적합한 쇼 그라운드에서 개최되어야만 한다.

각각의 개별 링은 링을 사용하는 견들의 크기와 그 수에 따라, 링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서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월드 쇼와 섹션 쇼의 조직위원회는 모든 견들이 FCI 그룹에 따라 심사를 받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명예의 링(ring of honour)**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그룹 시합과 명예의 링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시합들은 스케줄에 따라 명예의 링 심사 이전에 별도의 링에서 제 시간에 예비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예의 링에서 심사위원의 심사는 준결승 또는 결승전인 최종선발전으로 제한된다.**

조직위원회는 BOB 위너들이 예비 심사링으로부터 명예의 링 접근이 용이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쇼가 열리는 동안 다른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이 행사들 때문에 쇼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받아서는 안 된다.

야외에서 쇼를 할 경우 조직위원회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3. 심사위원

월드 쇼나 섹션 쇼에서 직무를 맡은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하는 견종에 특히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FCI의 크고 중요한 쇼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자라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베스트 인 그룹(Best in Group: BIG)”과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BIS)” 경쟁 부문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한 사람의 심사위원이 심사해야 한다.

월드 쇼와 섹션 쇼에서는 오로지 FCI 회원국의 전견종 국제심사위원만이 BIS 경쟁부문 심사를 맡을 수 있다. 베스트 어브 그룹 경쟁부문은 오로지 전견종 국제심사위원이나 이 그룹에 대한 승인을 얻은 그룹 심사위원만이 심사할 수 있다.

월드 쇼와 섹션 쇼에는 적절하게 구성이 잘 된 국제 심사위원단이 지명되어야 한다. FCI 도그쇼를 위해 Art.10 (심사위원 초청)에 정의된 규정(최소 2/3의 초청심사위원들은

FCI회원국에 의해 승인된 심사위원이어야 한다.)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FCI의 비회원 국가에서의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들도 특별히 그들의 본토 견종을 심사하기 위해 초청할 수 있다.

월드 쇼에는 FCI의 각 섹션에서 최소 한 명씩의 심사위원이 초청되어야 한다.

월드 쇼와 섹션 쇼 일정표에는 심사위원에게 배당된 견종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야 한다.

각 국가 단체들은 월드 쇼와 섹션 쇼에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FCI 총회에 회원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심사위원이 월드 쇼에서 심사할 경우 조직위원회는 최소한 여행경비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4. FCI 감찰관(Observer)

A. FCI 총위원회는 각 월드 쇼에 FCI 공식 파견위원으로서 **FCI 감찰관(Observer)**을 지명한다. FCI 전무이사는 FCI 감찰관(Observer)을 보조한다. FCI 섹션에서도 FCI 총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FCI 감찰관(Observer)**을 추천한다.

B. **FCI 감찰관(Observer)**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a. 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조직위원회를 보조하고 조언한다.

b. 개최국의 단체가 FCI의 모든 규칙과 특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FCI의 이러한 규칙 및 특수 규정이 쇼 기간 동안 정확히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c. FCI의 규칙 및 특수 규정 위배에 관련된 불만사항(complaints)과 쇼 기간 내에 접수된 모든 불만사항의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d. 자신의 활동에 관해 종합적인 서면 보고서를 FCI 총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불만사항에 관해 총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FCI 총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돕는다. **서면 보고서는 FCI 쇼 위원회 회장에게도 제출되어야 한다.**

C. FCI 감찰관(Observer)인 동시에 FCI 총위원회의 일원일 경우, FCI 회장이나 부회장이 전람회에 공식 자격으로 참관하지 못하면 FCI 감찰관(Observer)이 그 쇼에서 FCI를 대표하게 된다.

D. 월드쇼와 섹션쇼의 FCI 감찰관의 모든 여행, 숙식 경비 및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하루 경비는 개최국 애견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 베를린 회의에서 FCI 총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굵은 글씨체와 이탈리아 문자로 쓰인 변동 사항은 2012년 4월 비엔나 FCI 총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FCI 정회원국과 약정 파트너가 자신들의 규정으로 수정하도록 2년간의 번역 기간(마감 : 2014년 12월 31일)이 주어진다.

FCI의 도그쇼와 쇼 심사위원 규정 부록
심사위원 여행비용 관련 부가 규정

1. 모든 일반 여행비용은 실질 주행 킬로수(보상은 FCI 총 위원회로부터 결정되었으며 최소 0.35유로/km), 주차, 기차, 버스, 택시, 비행(취소 보증금-가능하면-을 포함한 합리적으로 가격 책정된 이코노미 티켓, 바꾸는 옵션 포함), 여행하는 동안의 식사비용 등 심사위원으로부터 초래되는 상기 비용으로 도착과 동시에 즉시 보상되어야 하며, 또는 나중에 조직위원회와 결정한 사전의 협정에 따라 보상된다.

2. 월드, 섹션, 인터내셔널 쇼 심사위원에게는 여행일 및 심사일마다 하루에 35 유로의 “하루 비용(Daily allowance)”이 지급되어야 한다. 쇼 조직위원회가 국내 규정에 따라 자국의 심사위원에게도 “하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문판이 원본 문서임.

굵은 글씨체와 이탈리아 문자로 쓰인 변동 사항은 2012년 4월 비엔나 FCI 총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스튜어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스튜어드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스튜어드 자격

제2조 (스튜어드) 스튜어드는 도그쇼의 심사진행 책임자로 본 연맹이 그 자격을 인정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 (소속) 스튜어드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종류) 스튜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서브 스튜어드.
2. 메인 스튜어드.
3. 치프 스튜어드.

제5조 (자격부여)

1. 스튜어드 후보는 본 연맹 회원 또는 스튜어드 모집 기간에 신청한 자로 한다.
2. 스튜어드 교육 1회, 도그쇼 실전 교육 1회 이상을 수료한자에게는 서브 스튜어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 삭제 -

제3장 스튜어드 직무

제6조 (직무) 스튜어드는 담당하는 링 심사 진행 책임자로서 심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1. 스튜어드가 각 전람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직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서브 스튜어드

- (1) 메인 스튜어드의 지시에 따라 그 직무를 보좌할 것.
- (2) 담당 링 필요 물품 사전확인 / 준비.
- (3) 출진자 예보, 대기확인 / 퇴장 안내.
- (4) 기타.
 - 가. 로제트, 트로피 전달.
 - 나. 본부석 심사보 전달.
 - 다. 심사 중에 급필품 전달.

2) 메인 스투어드

- (1) 출진건의 출결을 확인할 것.
- (2)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것.
- (3) 수상과 평가판정 결과에 따라 심사보와 각종 카드를 정확하게 기록할 것.
- (4) 서브 스투어드를 지도할 것.
- (5)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 (6)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치프 스투어드

- (1) 출진건의 출결을 확인할 것.
- (2)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것.
- (3) 수상과 평가판정 결과에 따라 심사보와 각종 카드를 정확하게 기록할 것.
- (4) 서브 스투어드를 지도할 것.
- (5)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 (6) 심사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

2. 치프 스투어드 자격자는 스투어드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8조 (준수사항) 스투어드는 본 연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1. 스투어드는 본 연맹에서 개최하는 연수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 삭 제 -

제4장 스투어드 위촉

제10조 (배정)

1.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이하 'FCI전이라 한다)의 스투어드 배정은 스투어드 유자격자 중에서 사무처에서 배정한다.
2. FCI전을 제외한 스투어드의 배정은 연맹 사무처와 도그쇼 주최자가 협의한 다음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1. - 삭 제 -

제12조 (비용과 부담자) 스투어드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는 연맹 사무처에서 책정한 금액을 도그쇼 주최측이 부담한다. 단, 심사위원 자격을 얻기위한 경우나, 교육생의 경우 비용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 삭제 -

2. - 삭제 -
3. - 삭제 -

제5장 자격의 등록

제13조 (자격의 등록)

1. 스튜어드 본 연맹 회원이어야 한다.
2. 스튜어드는 스튜어드 명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4조

1. 본 연맹은 서브 스튜어드, 메인 스튜어드, 치프 스튜어드에게 이름표를 무상으로 교부한다. 단, 스튜어드의 요청으로 재발행시에는 유상으로 교부한다.
2. 치프 스튜어드는 직무를 담당할 때 스튜어드의 배치현황과 이름표 착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자격상실

제15조 (자격의 상실)

스튜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연맹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본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총재가 부적격자로 인정했을 때.

제16조

1. - 삭제 -
2. - 삭제 -

제7장 부칙

제1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2조, 3조, 4조, 5조, 8조, 9조, 12조, 15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3조, 5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5조, 16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5년 12월 16일(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1항 2조, 제12조, 제14조)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훈련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에 근거 훈련사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훈련사

제2조 (훈련사) 훈련사란 훈련사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본 연맹 정회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속) 훈련사는 본 연맹 사무처에 소속한다.

제4조 (훈련사의 자격) 훈련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훈련사 3등.
3. 훈련사 2등.
4. 훈련사 1등.
5. 훈련사 사범.
6. 훈련사 명예사범.
7. 훈련사 심사위원.

제5조 (취득방법) 훈련사 자격의 취득방법은 시험 또는 추천 및 교체발급으로 하며 등급별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경기대회 성적으로 실기시험을 대체 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 이후 1년 이내까지의 대회 성적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1. - 삭 제 -
2. 훈련사 3등.
 - 1)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한 자.
 - 2) 실기시험에서 60점 이상 이거나 경기대회 가정건조 CD I 에서 입상 또는 사역건조 BH 이상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단, 경기대회 아마추어 및 학생부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3. 훈련사 2등

- 1)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득한 자.
- 2) 실기시험에서 70점 이상 이거나 경기대회 가정건조 CDⅢ에서 입상 또는 사역건조 IGP I 이상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단, 경기대회 아마추어 및 학생부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3) - 삭 제 -

4. 훈련사 1등

- 1) 필기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한 자.
- 2) 실기시험에서 80점 이상 이거나 경기대회 가정건조 CDIV에서 입상 또는 사역건조 IGPⅡ 이상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단, 경기대회 아마추어 및 학생부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3) - 삭 제 -

5. 훈련사 사범

- 1) 훈련사 1등 자격을 취득하고 훈련경기대회에서 1회 이상 우수 지도수상이나 최우수 지도수상을 획득한 자
- 2) 본 연맹의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로서 연맹 사무처와 훈련사 상임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총재가 승인한 자.

6. 훈련사 명예사범

본 연맹의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로서 연맹 사무처와 훈련사 상임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총재가 승인한 자.

7. 훈련사 심사위원

훈련사 심사위원 규정 제8조(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거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8. 추천에 의한 취득은 제6장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9. 훈련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에 합격 했으나 실기시험에 불합격 하였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대 12개월 이내 1회에 한 해 재 응시가 가능하다.

제6조 (준수사항)

1. 훈련사는 본 연맹의 여러 규정 및 훈련사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연맹 각종 훈련경기대회 · 어질리티 경기대회 · 애견사회화 프로그램 · 반려동물행동 교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 삭 제 -

3. 훈련사는 연맹에서 개최하는 훈련세미나에 매년 참가하여야 한다.

제3장 검정 · 등록요금 등

제7조 (검정료) 검정료는 연맹 요금규정에 의한다.

제8조 (등록요금)

1. 각 자격의 등록료는 요금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2. 등록절차는 본 연맹에서 통지 후 2주 이내로 한다.

제9조 (등록 갱신료)

- 삭 제 -

제4장 시험

제10조 자격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훈련사 과정은 제 4조 1 · 2 · 3 · 4로 한다.

제11조 (시험의 주최) 본 연맹 주최로 행하는 시험은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한다. 단, 심사위원을 파견하여 지정 훈련소 및 산학 협력 학교, 관련 클럽에서 실시 할 수 있으나, 응시 급수는 3등과 2등에 한한다.

제12조 (개최의 공시) 본 연맹은 시험의 개최 일시 · 개최 장소 · 운영내용을 홈페이지 월별계획에 약 2개월 전에 공시한다.

제13조 (수험자격) 시험의 수험자격은 다음과 같다.

1. - 삭 제 -

2. 훈련사 3등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해당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

3. 훈련사 2등

본 연맹 정회원이며 훈련사 3등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4. 훈련사 1등

본 연맹 정회원이며 훈련사 2등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5. 훈련사 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35세** 이상으로 훈련사 1등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단, 훈련사 사범의 자격검증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6. 훈련사 명예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연맹의 사업 활동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이거나,

연맹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 자.
단, 훈련사 명예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7. 훈련사 심사위원

훈련 심사위원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시험의 방법) 훈련사 규정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출제위원의 자격 및 직무)

1. 출제위원의 자격

1) 출제 위원은 전문적인 애견 관리 지식을 보유한 자로써 다음 (1), (2), (3), (4)항 중 1개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해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1) 훈련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훈련사 1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원의 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애견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써 관련 과목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본 연맹 훈련사 위원회 소속으로써 훈련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

(4) 본 연맹 총재가 출제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2. 출제위원의 직무

1) 훈련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 과목 선정.

2) 훈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 문항 출제.

3) 출제 시험문제의 유출 방지 및 보안(서약서 작성)

단, 출제위원의 장은 총재가 위촉한다.

제16조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위원은 훈련 전문 심사위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제17조 (시험위원의 자격) 시험위원은 훈련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18조 (시험위원의 직무) 시험위원 1명이 40명 이상의 시험을 감독할 수 없으며 시험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험자의 엄정한 감독.

2. 시험문제의 확인 · 배포 · 회수.

3. 문제 발생시 보고서 제출.

4. 합격 · 불합격, 보류의 판정.
5. 본 연맹이 개최한 훈련 자격시험 및 경기대회 심사.

제19조 (입회인의 위촉)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입회인 1명 이상을 총재의 승인을 얻어 연맹 사무처에서는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입회인의 직무) 입회인은 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시험장에는 시험위원 및 수험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한다.

제21조 (시험위원 · 입회인의 비용) 시험위원 · 입회인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맹에서 부담한다. 단, 수험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해당 시행처에서 부담한다.

제5장 - 삭 제 -

제22조 - 삭 제 -

제6장 추천

제23조 (추천 및 교체발급)

1. 훈련사 자격 취득에 대한 추천자는 이사 3인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기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승인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대상자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기관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추천에 의한 자격 취득은 현자격의 한 단계 상위 등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 가능한 등수는 3등과 2등까지만 가능하다. 단, 훈련사 자격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13조(수험자격)의 각 급수별 연령 및 실무 경력의 기준에 따르고, 자격검정 응시자의 경우 응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는 추천할 수 없다.
3. 교체발급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자격과 동일 등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 13조(수험자격)의 각 급수별 연령 기준에 따른다.

제24조 - 삭 제 -

제7장 자격상실

제25조 (자격의 상실)

훈련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처분을 받아 연맹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을 대여한 자.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제26조 전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총재는 훈련사에게 본 연맹의 정관 및 여러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의해 징계 규정의 해당자가 되어, 자격정지가 2년을 넘은 경우와 그 이외에도 행위와 보유자격 등에 의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자격상실 해당자는 바로 자격증 및 본 연맹에서 부여받은 모든 것을 본 연맹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재등록

제28조 (재등록절차)

1. 자격을 상실한 다음 5년 이내에 부활신청을 하는 동시에, 연맹회원 및 취득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훈련사위원회를 경유하여 재등록할 수 있다.
단, 모든 자격조건은 재등록의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재등록료는 별도의 요금규정에 따라 행한다.

제9장 부칙

제2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훈련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3조, 4조, 6조, 8조, 9조, 11조, 13조, 17조, 21조, 24조, 25조, 28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3조, 5조, 7조, 8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4조, 5조, 8조, 13조, 14조, 23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7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3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4조, 5조, 13조, 14조, 23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5조, 13조, 23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5항, 6항, 제13조 2항, 5항, 6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3조, 23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29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5조 2항, 3항, 4항, 9항, 제13조 2항, 3항, 4항, 제23조 2항, 3항)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5조 2항, 3항, 4항, 9항, 제13조 2항, 3항, 4항, 제23조 1항, 2항, 3항, 별표1 2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6조)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5조)

[별표1]

시험의 방법(훈련사 규정 제14조)

훈련사 자격의 취득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 삭 제 -

2. 훈련사 3등

구 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 고
과 목	• 훈련학 • 번식학 • 기초 수의학 • 견체학	• 가정견조 초등과 이상 또는 사역견조 BH 이상의 훈련 과목시험	

3. 훈련사 2등

구 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 고
과 목	• 훈련학 • 번식학 • 기초 수의학 • 견체학	• 가정견조 고등과 이상 또는 사역견조 IGP I 이상의 훈련 과목시험	

4. 훈련사 1등

구 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 고
과 목	• 훈련학 • 번식학 • 기초 수의학 • 견체학 • 심사학	• 가정견조 대학과 이상 또는 사역견조 IGP II 이상의 훈련 과목시험	

5. 훈련사 심사위원

훈련 심사위원 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한다.

훈련 심사위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훈련 심사위원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심사위원

제2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며 본 연맹이 그 자격을 인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속) 심사위원은 본 연맹에 소속하며 훈련사 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훈련사 위원회 탈퇴 시 심사위원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단, 어질리티 심사위원 및 디스크독 심사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항의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의 조건을 충족하고, 본 연맹이 주관하는 해당 심사위원 후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요금규정에 의거하여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1. KKF 가정견 심사위원

- 1) 최소 30세 이상인 자.
- 2)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3)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 4) - 삭 제 -
- 5) 훈련사 1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6) 본 연맹 주최 가정견 경기대회 고등과(CDⅢ) 이상에 참가하여 입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가정견 경기대회 운영, 진행 등의 경력이 최소 3회 이상이고 본 연맹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7) - 삭 제 -

2. KKF IGP 심사위원

- 1) 최소 30세 이상인 자.
- 2)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3) KKF IGPⅡ 이상 경기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IGP 경기대회

운영, 진행 등의 경력이 최소 3회 이상이고 본 연맹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헬퍼 경력을 갖추었거나, 헬퍼 교육을 이수한 자.

3. FCI IGP 심사위원

1) KKF IGP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

2)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KKF IGP 훈련자격시험 또는 KKF IGP 경기대회의 심사 경력을 갖춘 자.

4. KKF 어질리티 심사위원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3) KKF 어질리티Ⅱ 이상 경기에 참가 하여 입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어질리티 경기대회의 운영, 진행 등의 경력이 최소 3회 이상이고 본 연맹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FCI 어질리티 심사위원

1) KKF 어질리티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

2)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KKF 어질리티 경기대회의 심사 경력을 갖춘 자.

6. KKF 디스크독 심사위원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3) KKF 디스크독 경기대회 D/A 일반부에서 입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디스크독 경기대회의 운영, 진행 등의 경력이 최소 3회 이상이고 본 연맹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5조 (심사위원의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본 연맹의 규정 및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를 행할 경우 사전에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해외 심사를 행할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국내 심사경력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담당업무)

1. 각종 훈련자격시험 및 훈련경기대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심사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 KKF 가정견 또는 IGP 심사위원
 - (1) 각종 KKF 훈련자격시험 및 훈련경기대회 심사.
 - (2)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훈련에 관한 연수회 · 강습회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
 - 2) FCI IGP 심사위원
 - (1) KKF 및 FCI IGP 훈련 자격시험 및 훈련경기대회 심사.
 - (2)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훈련에 관한 연수회 · 강습회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
 - 3) KKF 어질리티 심사위원
 - (1) 각종 KKF 어질리티 대회 심사.
 - (2)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어질리티 대회에 관한 연수회 · 강습회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
 - 4) KKF 디스크독 심사위원
 - (1) 각종 KKF 디스크독 대회 심사.
 - (2)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디스크독 대회에 관한 연수회 · 강습회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
 - 5) FCI 어질리티 심사위원
 - (1) 각 종 KKF / FCI 어질리티 대회 심사
 - (2)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어질리티 대회에 관한 연수회. 강습회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

제7조 (심사위원의 직무) 심사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험자의 엄정한 감독.
2. 실기시험의 엄정한 심사(서약서 작성)
3. 시험문제의 확인 · 배포 · 회수.
4. 문제 발생 시 보고서 제출.
5. 합격 · 불합격 보류의 판정.
6. 본 연맹 개최 훈련 자격시험 및 훈련경기대회 심사.

제8조 (심사위원 자격시험)

1. KKF 심사위원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KKF 주최 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필기 및 실기시험의 내용은 연맹 사무처와 훈련사 위원회에서 정한다.
시험의 내용은 아래 각항과 같으며, 각 80점 이상을 득한 자를 합격으로 인정한다.

1) KKF 가정견 심사위원

(1) 필기시험

- ① 한국 애견연맹 정관 및 제 규정.
- ② KKF 트레이닝 매뉴얼.

(2) 실기시험

- ① CDⅢ 및 CDⅣ 중 선택하여 3마리를 대상으로 심사 및 순위 결정.
- ② 3마리의 각기 다른 견종을 가지고 CDⅢ 이상 중에 선택하여 실기 실시.

2) KKF IGP 심사위원

(1) 필기시험

- ① IGP 관련 규정.
- ② KKF 트레이닝 매뉴얼.

(2) 실기시험

- ① IGP I,Ⅱ,Ⅲ 중 선택하여 3마리를 대상으로 심사 및 순위 결정.
- ② 3마리의 각기 다른 견종을 가지고 IGP I,Ⅱ,Ⅲ 실기 실시.

3) KKF 어질리티 심사위원

(1) 필기시험

- ① 한국 애견연맹 정관 및 제 규정.
- ② 어질리티 관련 국제 규정.

(2) 실기시험

- ① 3마리의 이상의 견에 대한 심사 및 순위 결정.

4) KKF 디스크독 심사위원

(1) 필기시험

- ① 한국 애견연맹 정관 및 제 규정.
- ② 디스크독 관련 국제 규정.

(2) 실기시험

- ① 3마리의 이상의 견에 대한 심사 및 순위 결정.

5) FCI 어질리티 심사위원

(1) 필기시험

- ① 한국애견연맹 정관 및 제 규정
- ② FCI 어질리티 관련규정

(2) 실기시험

- ① 3마리 이상의 견에 대한 심사 및 순위결정
- ② FCI 어질리티 규정에 부합하여 올바른 난이도로 코스를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

제9조 (심사위원의 승인)

1. 해당 훈련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심사위원 자격이 승인된 자.
3. 훈련사 위원회의 전체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재의 재가를 얻어 승인된 자.

제10조 (심사위원 교육) 심사위원은 연 1회 이상 본 연맹 사무처에서 주최하는 초청 세미나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2년간 심사배정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위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11조 (자격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총재가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심사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심사능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심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6.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
7. 훈련 심사위원 규정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12조 (상벌) 심사위원에 대한 상벌 사항은 본 연맹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권한)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심사분야에서 일체를 총괄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다. 단, 심사방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금지) 심사위원이 결정한 성적과 평가는 절대적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5조 (퇴장)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비난, 중상 또는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참가자에게 심사위원은 당해건의 심사를 중지하고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배정) 심사배정은 훈련사 위원회 위원장과 논의 후 연맹 사무처에서 배정하며
심사 개시 7일 이전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적용) 본 규정에 따르지 않는 심사위원의 심사성적은 공인되지 않는다.

제18조(심사위원의 비용) 심사비 및 교통비 · 숙박비의 실비는 본 연맹이 부담한다.

제3장 출제위원

제19조 (출제위원의 위촉) 출제위원은 본 연맹 사무처와 훈련사 위원회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20조 (출제위원의 직무) 출제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과목 선정.
2. 훈련에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 문항 출제.
3. 시험문제의 유출 방지 및 보안.

제4장 부칙

제2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훈련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3조, 4조, 6조, 8조, 9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4년 2월 13일(제4조, 제6조, 제8조)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5년 12월 16일(제4조)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21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4조, 제8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4조 2항)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4조 2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4조)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애견미용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애견미용사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애견미용사

제2조 (애견미용사) 애견미용사는 본 연맹 회원으로써 소정의 자격조건을 구비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속) 애견미용사는 본 연맹 사무처에 소속한다.

제4조 (애견미용사의 자격) 애견미용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 애견미용사 3급.
2. 애견미용사 2급.
3. 애견미용사 1급.
4. 애견미용사 교사.
5. 애견미용사 사범.
6. 애견미용사 명예사범.
7.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8. AGF 국제 애견미용사 C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C Grade)
9. AGF 국제 애견미용사 B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B Grade)
10. AGF 국제 애견미용사 A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A Grade)
11. AGF 국제 애견미용사 마스터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Master Grade.)
12. AGF 국제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International Judge.)

제5조 (취득방법) 애견미용사 자격의 취득방법은 시험 또는 추천으로 하며 등급별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3급
 - 1)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60점 이상을 득한 자.
2. 애견미용사 2급
 - 1)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득한 자.
3. 애견미용사 1급
 - 1)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80점 이상을 득한 자.
4. 애견미용사 교사
 - 1)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80점 이상을 득한 자.
5. 애견미용사 사범
 - 1) 애견미용사 교사 자격을 갖춘 자.
 - 2) 본 연맹의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로써 연맹 사무처와 애견미용사 상임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총재가 승인한 자.
6. 애견미용사 명예사범
본 연맹의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로서 연맹 사무처와 애견미용사 상임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총재가 승인한 자.
7.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규정 제8조(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8. 경기대회 의한 자격 취득은 애견미용사 규정 제7장 제34조에 의한다.
9. AGF 국제 애견미용사 자격의 취득 및 경기대회에 따른 승급은 AGF의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AGF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10.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에 합격 했으나 실기시험에 불합격 하였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대 12개월 이내 1회에 한 해 재 응시가 가능하다.

제6조 (실기평가 검정기준)

1. 애견미용사 3급
기본적으로 애견미용사가 갖추어야 할 일반 상식 수준으로써 견종의 역사와 특성, 기초 수의학 및 래핑, 샴핑, 드라잉, 코밍, 그루밍 등의 애견 미용의 기초 지식 / 실무를 갖추어야 함.
2. 애견미용사 2급
5개 클립 이상을 자유자재로 미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이론 / 시험관이 정하는 모델 클립에 근접하게 완성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델견 다루는

방법과 미용사의 에티켓, 일반인들에게 미용사의 직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

3. 애견미용사 1급

모델견종에 있어 완벽한 스탠다드에 근접하고 미용을 함에 있어서 당당한 모습과 우아한 자태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세련된 미를 창조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견체학, 번식학, 쇼 클립 등 타 견종도 눈으로 보면서 다른 각도로도 읽어 내려가는 기술을 요하는 고급 수준을 요함.

4. 애견미용사 교사 . 사범

모델견종에 있어 완벽한 스탠다드를 창조하고 미용을 함에 있어서 당당한 모습과 우아한 자태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냄은 물론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견체학, 번식학, 쇼 클립 등의 기술에 있어서 최고급 수준을 요함.

5.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규정 제8조(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한다.

6. AGF 국제 애견미용사 및 심사위원의 평가 검정기준은 AGF의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AGF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일 급수에 해당하는 KKF 애견미용사 검정기준을 준용한다.

7. 애견미용사 자격에 있어 동일 급수라 함은 애견미용사 3급과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C Grade, 애견미용사 2급과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B Grade, 애견미용사 1급과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A Grade, 애견미용사 교사와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Master Grade를 말한다.

8. AGF 국제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자격은 AGF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본 연맹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준수사항)

1. 애견미용사는 본 연맹의 여러 규정 및 각종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연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GF 국제 애견미용사는 본 연맹의 규정 및 AGF 국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 삭 제 -

4. - 삭 제 -

제3장 검정 · 자격등록요금 등

제8조 (검정료) 검정료는 연맹 요금규정에 의한다.

제9조 (등록요금)

1. 각 자격의 등록료는 요금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2. 자격등록절차는 본 연맹에서 통지 후 2주 이내로 한다.

제10조 - 삭 제 -

제4장 시험

제11조 (명 칭) 자격취득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애견미용사 과정은 제4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으로 한다.

제12조 (시험의 실시) 시험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본 연맹에서 행한다.

단, 학원 및 연맹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심사위원을 파견하여 실시 할 수 있으나 응시 급수는 3급과 2급에 한한다.

1. 본 연맹 주최에서 행하는 시험자격은 제4조의 1, 2, 3, 4로 규정하며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개최의 승인) 본 연맹 주최의 시험 개최는 총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14조 (개최의 공시) 본 연맹 주최에 의한 시험의 개최 일시 · 개최 장소 · 수험원서 · 제출처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5조 (수험자격) 시험의 수험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애견미용 콘테스트 응시자는 각 급수별 수험자격에 관계없이 해당 클래스의 자격 급수에 준하여 응시할 수 있다.

1. 애견미용사 3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해당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

2. 애견미용사 2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미용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단, 애견미용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 지정 애견미용학원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2급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는 학원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기간에 상관 없이 애견미용사 2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3. 애견미용사 1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미용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단, 애견미용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 지정 애견미용학원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12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4. 애견미용사 교사

본 연맹 정회원이며 25세 이상인 자로 애견미용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5. 애견미용사 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30세 이상으로 애견미용사 교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강사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맹 발전에 기여한 자.
단, 애견미용사 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6. 애견미용사 명예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자.
단, 애견미용사 명예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7.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본 연맹 애견미용사 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애견미용사 위원회 소속이며 애견미용과 관련 강사 이상의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단, 본 연맹 정회원이어야 한다.

8. 외국인 응시자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언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시험의 방법) 애견미용사 규정 별표 1과 같다.

제17조 (모델견)

1. 모델견은 다음 트리밍 견종으로 생후 10개월 1일 이상인 견으로 하고, 수험자가 각자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자격검정 3급 응시자에 한하여 모델견을 실견 또는 위그 중 선택하여 응시 할 수 있다.

1) 시저링 견종

- (1) 푸들.
- (2) 비숃 프리제.
- (3) 베들링턴 테리어.

- (4) 케리 블루 테리어.
- (5) 위그(자격검정 3급에 한함)

2) 시닝 견종

- (1)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 (2) 잉글리시 코카 스파이엘.
- (3)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3) 플러킹 견종

- (1) 미니어처 슈나우저.
- (2) 에어델 테리어.
- (3) 레이크 랜드 테리어.
- (4) 노폴크 테리어.
- (5) 노리치 테리어.
- (6) 스코티시 테리어.
- (7) 실리햄 테리어.
- (8) 웰쉬 테리어.
- (9)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 (10) 와이어 폭스테리어.

2. 각 시험의 모델견을 다음 기간 트리밍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애견미용사 1급 시험일 전 3개월.
- 2) 애견미용사 2급 · 3급 시험일 전 2개월.

3. 푸들을 모델견으로 한 경우 각 시험에서 행한 등급은 다음과 같다.

- 1) 애견미용사 1급, 교사 : 쇼 클립.
- 2) 애견미용사 2급 : 펫 클립 또는 쇼 클립.
- 3) 애견미용사 3급 : 펫 클립 또는 쇼 클립.

※ 쇼 클립은 잉글리시 새들 클립, 콘티넨탈 클립, 퍼피 클립 중에 선택.

※ 펫 클립은 켄넬 클립, 파자마 더치 클립, 로얄 더치 클립, 볼레로 맨하탄 클립, 마이애미 클립, 퍼스트 콘티넨탈 클립 중에 선택.

4. 애견미용 콘테스트 교사급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우 해당 대회일로부터 1년간 수상을 받은 모델 견종으로는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없다.

단, 모델견이 푸들일 경우 클립 변경 시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 (검정·대회 참가 신청 및 비용의 납부)

1. 검정 및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고, 검정료 및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응시자가 양성기관에 소속되었을 경우에는 검정 및 응시원서 제출 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제19조 (출제위원의 위촉 및 자격) 출제 위원은 전문적인 애견 관리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1, 2, 3, 4항 중 1개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해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1. 애견미용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애견미용사 교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원의 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애견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관련 과목의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본 연맹 애견미용사 위원회 소속으로써 애견미용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
4. 본 연맹 총재가 출제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20조 (출제위원 회의의 개최) 출제위원은 출제위원 회의를 통해 출제 방향 및 과목 선정에 관하여 논의하며, 출제위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서 출제 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출제위원의 장은 총재가 위촉한다.

제21조 (출제위원의 직무) 출제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 과목 선정.
2. 애견미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 문항 출제.
3. 출제 시험문제의 유출 방지 및 보안(서약서 작성)

제22조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위원은 애견미용 전문 심사위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제23조 (시험위원의 자격) 시험위원은 애견미용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24조 (시험위원의 직무) 시험위원 1명이 40명 이상의 시험을 감독할 수 없으며 시험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험자의 엄정한 감독.
2. 시험문제의 확인 · 배포 · 회수.

3. 문제 발생 시 보고서 제출.
4. 합격 · 불합격, 보류의 판정.
5. 본 연맹이 개최한 애견미용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심사.

제25조 (시험 입회인의 위촉)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입회인 1명 이상을 총재의 승인을 얻어 연맹 사무처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 (시험 입회인의 직무) 입회인은 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시험장에는 시험위원 및 수험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한다.

제27조 (출제위원 · 시험위원 · 시험 입회인의 비용) 출제위원 · 시험위원 · 입회인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맹에서 부담한다. 단, 수험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해당 시행처에서 부담한다.

제5장 시험문제의 보안 및 인수인계

제28조 (시험문제의 보안) 출제위원은 시험문제 출제 시 외부로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위하며, 외부 유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29조 (시험문제의 인수인계) 시험문제는 봉인된 상태로 이동하여야 하며, 연맹사무처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의 인수 · 인계 시 매수 및 파손 여부를 확인 후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한다.

제6장 자격의 등록 및 발급

제30조 (자격의 등록)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의 자격 급수 및 인적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은 별도의 자격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한다.

제31조 (자격의 발급)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에게는 시험응시 후 14일 안에 합격사실을 통보하여, 관련 서류(애견미용사 자격 교부 신청서, 증명사진 3×4 3매)를 제출 받아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2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자격증의 기재사항은 자격소지자의 취득급수, 사진, 생년월일, 자격의 발급일,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33조 (자격의 날인) 발급한 자격증에는 본 연맹의 관인(자격증 우측 하단), 철인(사진과 접하여 압인), 간인(상단 우측에 자격관리대장과 접하여 간인)을 자격증에 날인하여야 하며, 관인, 철인, 간인은 시건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자격의 취득

제34조 (자격의 취득)

1. 애견미용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자는 애견미용사 상위등급 자격을 다음과 같이 취득할 수 있다.
 - 1) 애견미용사 3급 유자격자로서 애견미용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는 실무경력 및 나이에 관계없이 애견미용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2) 애견미용사 2급 유자격자로서 애견미용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는 실무경력 및 나이에 관계없이 애견미용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3) 애견미용사 1급 유자격자로서 애견미용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는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애견미용사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단,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 미달 시에는 입상만 인정한다.
2. 애견미용사 자격 취득에 대한 추천자는 이사 3인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기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승인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기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대상자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기관 소속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추천에 의한 승급은 현자격의 한 단계 상위 등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 가능한 급수는 3급과 2급까지만 가능하다. 단, 애견미용사 자격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15조(수험자격)의 각 급수별 연령 및 실무경력의 기준에 따르고,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응시자의 경우 응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는 추천할 수 없다.
4. AGF 국제 애견미용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자는 본조 1.항과 같이 애견미용사 상위등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AGF 국제 애견미용사 상위 등급 자격의 취득은 불가하다.

제8장 자격의 정지

제35조 (자격의 정지)

1. 애견미용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정지 된다.
 - 1) 본 연맹의 명예 또는 신뢰성의 실추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야기된 때.
 - 2) 애견미용사 자격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연맹에 피해를 입혔을 때.
 - 3) 애견미용사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편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제36조 (자격정지의 취급) 자격정지자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 삭 제 -
2. 승격시험 검정 및 애견미용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37조 (자격정지의 해제)

1. 자격 정지자가 정상 자격자로 복귀할 경우는,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자격 정지자의 기간 중은 승격시험에 필요한 기간으로 통산되지 아니한다.

제9장 애견미용사 양성기관 교사

제38조 (애견미용사 양성기관 교사)

- 삭 제 -

제10장 자격의 상실

제39조 (자격의 실효)

1. 총재는 애견미용사가 본 연맹의 정관 및 여러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의해 징계 규정의 해당자가 되어, 자격정지가 2년을 넘은 경우와 그 이외에도 행위와 보유자격 등에 의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자격상실 해당자는 바로 자격증 및 본 연맹에서 부여받은 모든 것을 본 연맹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장 부칙

제40조 (규정의 개폐)

1.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2. AGF 국제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사항은, AGF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변경된 내용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통지한 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1조, 3조, 5조, 7조, 9조, 10조, 15조, 16조, 17조, 18조, 21조, 23조, 32조, 35조, 36조, 37조, 38조, 39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3조, 5조, 12조, 15조, 16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34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4조, 5조, 6조, 9조, 15조, 16조, 34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6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34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34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5항, 6항, 제15조 5항, 6항)

일부개정 2012년 5월 24일(제15조 2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5조, 18조, 30조, 31조, 32조, 34조)

일부개정 2016년 2월 17일(제15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 제40조)

일부개정 2016년 2월 15일(제6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5조 10항, 제15조 1항, 2항, 3항, 제17조 1항, 제18조 1항, 2항, 제34조 3항)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5조 10항, 제15조 1항, 2항, 3항, 제17조 1항, 4항, 제18조 1항, 2항, 제34조 2항, 3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제34조)

[별표1]

시험의 방법(애견미용사 규정 제16조)

애견미용사 자격의 취득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애견미용사 3급

구 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 고
과 목	• 견의 역사와 특성 • 그루밍의 기초 이론 • 트리밍의 기초 이론 • 견체학 기초 • 기초 수의 위생관리학	• 모델견의 작업전 상태 • 브러쉬 • 미용 기술 • 모델견의 완성도 • 도구의 취급수준 • 모델견의 취급수준	

2. 애견미용사 2급

구 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 고
과 목	• 애견 클립의 이해 • 그루밍의 실무 이론 • 트리밍의 실무 이론 • 수의 위생관리학 • 견체학 기초	• 모델견의 작업전 상태 • 브러쉬 • 미용 기술 • 모델견의 완성도 • 도구의 취급수준 • 모델견의 취급수준	

3. 애견미용사 1급

구 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 고
과 목	• 그루밍의 고급 이론 • 트리밍의 고급 이론 • 견종학 • 견체학 • 실무 수의 위생관리학 • 애완동물 개론 및 심리	• 모델견의 작업전 상태 • 부러쉬 • 미용 기술 • 모델견의 완성도 • 도구의 취급수준 • 모델견의 취급수준	

4. 애견미용사 교사

구 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 고
과 목	• 그루밍의 고급 이론 • 트리밍의 고급 이론 • 견종학 • 견체학 • 번식학 • 심리학 • 실무 수의 위생관리학	• 모델견의 작업전 상태 • 브러쉬 • 미용 기술 • 모델견의 완성도 • 도구의 취급수준 • 모델견의 취급수준	

5.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한다.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애견미용사 심사위원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심사위원

제2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며 본 연맹이 그 자격을 인정한 회원을 말한다.

1. 애견미용사 심사위원은 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본 연맹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AGF 국제 애견미용 심사위원은 AGF 국제 규정 및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본 연맹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3조 (소속) 심사위원은 본 연맹에 소속하여야 하며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애견미용사 위원회 탈퇴 시 심사위원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연맹이 주관하는 해당 심사위원 후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요금규정에 의거하여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최소 25세 이상인 자.
2.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4. 애견미용에 대하여 이론 및 실기에 경험이 풍부한 자.
5. 애견미용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사 이상의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6. 본 연맹의 애견미용사 교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7. AGF 국제 애견미용사 심사위원의 경우 애견미용사 심사위원의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 중 AGF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본 연맹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본 연맹의 규정 및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를 행할 경우 사전에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해외 심사를 행할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국내 심사경력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담당업무)

1. 심사위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 각종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심사에 관한 사항.
 - 2)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애견미용에 관한 연수회 · 강습회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사위원의 직무) 심사위원 1명이 40명 이상의 시험을 감독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험자의 엄정한 감독.
2. 실기시험의 엄정한 심사(서약서 작성)
3. 시험문제의 확인 · 배포 · 회수.
4. 문제 발생 시 보고서 제출.
5. 합격 · 불합격 보류의 판정.
6. 본 연맹 개최 애견미용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심사.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시험)

1. KKF 심사위원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KKF 주최 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필기 및 실기시험의 내용은 연맹 사무처와 애견미용사 위원회에서 정한다.

시험의 내용은 아래 항과 같으며, 각 80점 이상을 득한 자를 합격으로 인정한다.

 - 1) 필기시험
 - (1) 한국 애견연맹 정관 및 제 규정.
 - (2) KKF 트리머 매뉴얼.
 - 2) 실기시험
 - (1) 12개월 이상된 모델견 5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용에 대하여 1~5위까지 심사 및 순위 결정.
 - (2) 시저링, 시닝, 플러킹 견종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3개 견종 또는 3개 클립을 선택하여 미용 실시.

단, 푸들의 경우 쇼 클립인 잉글리시 새들 클립, 콘티넨탈 클립, 퍼피 클립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미용 실시.

3. AGF 국제 애견미용 심사위원의 자격시험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본 연맹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승인)

1.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 AGF 국제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심사위원 자격이 승인된 자.
3.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전체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재의 재가를 얻어 승인된 자.

제10조 (심사위원 교육) 심사위원은 년 1회 이상 본 연맹 사무처에서 주최하는 초청 세미나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2년간 심사배정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위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11조 (자격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총재가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심사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심사능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심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6.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
7.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규정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12조 (상벌) 심사위원에 대한 상벌 사항은 본 연맹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권한) 심사위원은 심사분야에서 일체를 총괄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다.
단, 심사방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금지) 심사위원이 결정한 성적과 평가는 절대적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5조 (퇴장)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비난, 중상 또는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참가자에게 심사위원은 당해건의 심사를 중지하고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배정) 심사배정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장과 논의 후 연맹 사무처에서 배정하며 심사 개시 7일 이전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적용) 본 규정에 따르지 않는 심사위원의 심사성적은 공인되지 않는다.

제18조 (심사위원의 비용) 심사비 및 교통비 · 숙박비의 실비는 본 연맹이 부담한다.

제3장 출제위원

제19조 (출제위원의 위촉) 출제위원은 본 연맹 사무처와 애견미용사 위원회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20조 (출제위원의 직무) 출제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애견 미용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과목 선정.
2. 애견미용에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 문항 출제.
3. 시험문제의 유출 방지 및 보안.

제4장 부칙

제2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4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3조, 9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4조)
일부개정 2012년 3월 22일(제8조 2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7조, 8조, 10조)
일부개정 2015년 5월 24일(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21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4조 6항)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4조 6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4조)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4조, 제5조, 제8조)

핸들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핸들러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핸들러

제2조 (핸들러) 핸들러란 핸들러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연맹 정회원을 말한다.

제3조 (핸들러의 임무)

1. 핸들러는 행사장 내외에서 절대 애건을 방사할 수 없으며 입장 시에는 필히 정장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타 사역건조에는 예외가 적용 된다.
2. 핸들러는 링에서 심사위원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여야 하며 출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미스러운 행동, 언어를 구사할 경우 경고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며 본 연맹 전람회 또는 모든 행사에 추후 출진할 수 없다.
3. 핸들러는 링에 입장 시와 퇴장 시에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심사위원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며 타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품위와 인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핸들러는 모델건을 관리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인과 타 견에게 공격성을 보인 견은 연맹이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으며, 행사장 내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제4조 (소속) 핸들러는 본 연맹 사무처에 소속한다.

제5조 (핸들러의 자격) 핸들러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핸들러 3급.
4. 핸들러 2급.
5. 핸들러 1급.
6. 핸들러 교사.
7. 핸들러 사범.
8. 핸들러 명예사범.
9. 핸들러 심사위원.

제6조 (취득방법) 핸들러 자격의 취득방법은 시험, 경기대회 승격 또는 추천으로 하며 등급별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핸들러 3급
 - 1)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을 득한 자.
4. 핸들러 2급
 - 1)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70점 이상을 득한 자.
5. 핸들러 1급
 - 1)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80점 이상을 득한 자.
6. 핸들러 교사
 - 1)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80점 이상을 득한 자.
7. 핸들러 사범
 - 1) 핸들러 교사 자격을 갖춘 자.
 - 2) 본 연맹의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로서 연맹 사무처와 핸들러 상임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총재가 승인한 자.
8. 핸들러 명예사범
본 연맹의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로서 연맹 사무처와 핸들러 상임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총재가 승인한다.
9. 핸들러 심사위원
핸들러 심사위원 규정 제8조(심사 위원의 자격시험)에 의거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10. 경기대회 승격에 의한 자격 취득은 제5장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11. 추천에 의한 자격 취득은 제6장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12. 핸들러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 했으나, 실기시험에 불합격 하였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대 12개월 이내 1회에 한 해 재 응시가 가능하다.

제7조 (준수사항)

1. 핸들러는 본 연맹의 여러 규정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연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 삭 제 -
3. 핸들러는 본 연맹 주최의 의무 연수회 또는 핸들링 경기대회 중 어느 것에나 매년 참가하여야 한다.

제3장 검정 · 등록요금 등

제8조 (검정료) 검정료는 연맹 요금규정에 의한다.

제9조 (등록요금)

1. 각 자격의 등록료는 요금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2. 자격등록절차는 본 연맹에서 통지 후 2주 이내로 한다.

제10조 (등록 갱신료)

- 삭 제 -

제4장 시험

제11조 핸들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핸들러 과정은 제2장 5조에 의한다.

제12조 (시험의 주최) 시험의 주최자 · 개최자는 본 연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도 있으나, 응시 급수는 3급과 2급에 한한다.

제13조 (개최 신청) 지정기관 주최에 의한 시험의 개최신청은 개최일의 1개월 전까지 본 연맹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개최의 승인) 모든 핸들러 시험 개최는 본 연맹 총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15조(시험의 방법) 핸들러 규정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수험자격) 시험의 수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 핸들러 콘테스트 응시자는 각 급수별 수험자격에 관계없이 해당 클래스의 자격 급수에 준하여 응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핸들러 3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해당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

4. 핸들러 2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핸들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단, 핸들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 지정 기관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2급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는 지정기관 또는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핸들러 2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5. 핸들러 1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핸들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6. 핸들러 교사

본 연맹 정회원이며 25세 이상으로 핸들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단, 연맹 주최 핸들링 콘테스트에서 1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7. 핸들러 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30세 이상으로 핸들러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

단, 연맹 주최 핸들링 콘테스트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8. 핸들러 명예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

단, 핸들러 명예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9. 핸들러 심사위원

핸들러 심사위원 규정 8조(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한다.

제17조 (시험의 방법) 각 자격의 취득시험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핸들러 3급 . 2급 . 1급 . 교사

1) 필기시험

2) 모델견 1건중에 의한 실기시험

3. 핸들러 사범 . 명예사범

연맹 사무처와 위원장과의 협의에 의한 서류심사

4. 핸들러 심사위원

핸들러 심사위원 규정 제8조(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한 필기 . 실기시험.

제18조 (검정·대회 참가 신청 및 비용의 납부)

1. 검정 및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자(이하‘응시자’라 한다.)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고, 검정료 및 대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응시자가 양성기관에 소속되었을 경우에는 검정 및 응시원서 제출 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제19조 (모델건) 모델건은 생후 10개월 1일 이상의 견으로 한다.

제20조 (출제위원의 자격 및 직무)

1. 출제위원의 자격

- 1) 출제 위원은 전문적인 애견 관리 지식을 보유한 자로써 다음 (1), (2), (3), (4) 항목 중 1개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해 출제위원으로 위촉 한다.
 - (1) 핸들러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핸들러 교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원의 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 (2) 애견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써 관련 과목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본 연맹 핸들러 위원회 소속으로써 핸들러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
 - (4) 본 연맹 총재가 출제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2. 출제위원의 직무

- 1) 핸들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 과목 선정.
- 2) 핸들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 문항 출제.
- 3) 출제 시험문제의 유출 방지 및 보안(서약서 작성)
단, 출제위원의 장은 총재가 위촉한다.

제21조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위원은 핸들러 전문 심사위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제22조 (시험위원의 자격) 시험위원은 핸들러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23조 (시험위원의 직무) 시험위원 1명이 40명 이상의 시험을 감독할 수 없으며 시험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험자의 엄정한 감독.
2. 시험문제의 확인 · 배포 · 회수.
3. 문제 발생 시 보고서 제출.
4. 합격 · 불합격, 보류의 판정.
5. 본 연맹이 개최한 핸들러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심사.

제24조 (입회인의 위촉)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입회인 1명 이상을 총재의 승인을 얻어 연맹 사무처에서는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 (입회인의 직무) 입회인은 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시험장에는 시험위원 및 수험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한다.

제26조 (시험위원 · 입회인의 비용) 시험위원 · 입회인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맹에서 부담한다. 단, 수험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해당 시행처에서 부담한다.

제5장 경기대회 승격

제27조 (승격)

1. 핸들러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자는 핸들러 상위등급 자격을 다음과 같이 취득할 수 있다.
단, 해당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입상자라 하더라도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 1) 핸들러 3급 유자격자로서 핸들러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는 실무경력 및 나이에 관계없이 핸들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2) 핸들러 2급 유자격자로서 핸들러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는 실무경력 및 나이에 관계없이 핸들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3) 핸들러 1급 유자격자로서 핸들러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는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핸들러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단, 25세 이상이어야만 하며 연령 미달 시에는 입상만 인정한다.

제6장 추천

제28조(추천) 핸들러 추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핸들러 자격 취득에 대한 추천자는 이사 3인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기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승인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기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대상자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기관 소속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추천에 의한 자격 취득은 현자격의 한 단계 상위 등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 가능한 급수는 3급과 2급까지만 가능하다. 단, 핸들러 자격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16조(수험자격)의 각 급수별 연령 및 실무경력의 기준에 따르고,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응시자의 경우 응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는 추천할 수 없다.

제7장 자격상실

제29조 (자격의 상실) 핸들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처분을 받아 연맹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을 대여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제30조

전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총재는 핸들러가 본 연맹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 및 여러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그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31조

자격상실 해당자는 바로 자격증 및 본 연맹에서 부여받은 모든 것을 본 연맹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재등록

제32조 (재등록)

1. 자격을 상실한 다음 5년 이내에 부활신청을 하는 동시에, 회원자격 및 취득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본 연맹 사무처를 경유하여 재등록 할 수 있다.
단, 모든 자격조건은 재등록의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재등록된 연도 내에 행해진 경기대회에는 출장할 수 없다.

제9장 부칙

제3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핸들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4조, 6조, 7조, 9조, 10조, 17조, 29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4조, 6조, 8조, 9조, 16조, 17조, 18조, 19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5조, 6조, 9조, 16조, 17조, 28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6조, 8조, 15조, 16조, 18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17조, 제28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6조 7항, 8항, 제16조 5항, 7항, 8항, 제17조, 제27조 1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6조, 18조, 28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3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3조 4항, 제5조 1항, 2항, 제6조 1항, 2항, 12항, 제16조 1항, 2항, 4항, 5항, 6항, 7항, 제17조 1항, 제18조 1항, 2항)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3조 4항, 제6조 12항, 제16조 4항, 5항, 6항, 7항, 제18조 1항, 2항, 제28조 1항, 2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별표1]

시험의 방법(핸들러 규정 제15조)

핸들러 자격의 취득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핸들러 주니어

필기시험	비 고
• 라운딩 • 개체심사 • 업 & 다운 • 트라이앵글 • 핸들러의 매너와 자세	

2. 핸들러 시니어

필기시험	비 고
• 라운딩 • 개체심사 • 업 & 다운 • 트라이앵글 • 핸들러의 매너와 자세 • 핸들러와 개와의 호흡	

3. 핸들러 3급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 고
• 핸들러와 도그쇼의 역사 • 개에 관한 기초지식 • 개의 구조 • 핸들러란? • 쇼를 위한 그루밍 • 각 견종의 특징 • 도그쇼에서의 매너와 룰 • 핸들러 용어	• 라운딩 • 개체심사 • 업 & 다운 • 트라이앵글 • 핸들러의 매너와 자세 • 핸들러와 개와의 호흡	

4. 핸들러 2급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 고
• 핸들러와 도그쇼의 역사 • 개에 관한 기초지식 • 개의 구조 • 핸들러란? • 쇼를 위한 그루밍 • 각 견종의 특징 • 도그쇼에서의 매너와 룰 • 핸들러 용어	• 라운딩 • 개체심사 • 업 & 다운 • 트라이앵글 • 역 트라이앵글 • L자 • 핸들러의 매너와 자세 • 핸들러와 개와의 호흡	

5. 핸들러 1급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 고
• 핸들러와 도그쇼의 역사 • 개에 관한 기초지식 • 개의 구조 • 핸들러란? • 쇼를 위한 그루밍 • 각 견종의 특징 • 도그쇼에서의 매너와 룰 • 핸들러 용어	• 라운딩 • 개체심사 • 업 & 다운 • 트라이앵글 • 역 트라이앵글 • L자 • 역 L자 • T자 • 역 T자 • 핸들러의 매너와 자세 • 핸들러와 개와의 호흡	

6. 핸들러 교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 고
• 핸들러와 도그쇼의 역사 • 개에 관한 기초지식 • 개의 구조 • 핸들러란? • 쇼를 위한 그루밍 • 각 견종의 특징 • 도그쇼에서의 매너와 룰 • 핸들러 용어	• 라운딩 • 개체심사 • 업 & 다운 • 트라이앵글 • 역 트라이앵글 • L자 • 역 L자 • T자 • 역 T자 • 핸들러의 매너와 자세 • 핸들러와 개와의 호흡	

핸들러 심사위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핸들러 심사위원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심사위원

제2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 규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며 본 연맹이 그 자격을 인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속) 심사위원은 본 연맹에 소속하며 핸들러 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핸들러 위원회 탈퇴 시 심사위원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연맹이 주관하는 해당 심사위원 후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요금규정에 의거하여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최소 25세 이상인 자.
2.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4. 핸들링에 대하여 이론 및 실기에 경험이 풍부한 자.
5. 본 연맹에서 개최한 각종 전람회에 출진하여 BIG 이상의 상력을 5회 이상 득한 자.
6. 본 연맹의 핸들러 1급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7. - 삭 제 -

제5조 (심사위원의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본 연맹의 규정 및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를 행할 경우 사전에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해외 심사를 행할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국내 심사경력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담당업무)

1. 심사위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 각종 핸들러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심사에 관한 사항.

- 2)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핸들러에 관한 연수회 · 강습회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사위원의 직무) 심사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험자의 엄정한 감독.
2. 실기시험의 엄정한 심사(서약서 작성)
3. 시험문제의 확인 · 배포 · 회수.
4. 문제 발생 시 보고서 제출.
5. 합격 · 불합격 보류의 판정.
6. 본 연맹 개최 핸들러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심사.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시험)

1. KKF 심사위원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KKF 주최 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필기 및 실기시험의 내용은 연맹 사무처와 핸들러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 3명 이상의 핸들러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에게 합격을 받아야 한다.

1) 필기시험

- (1) 한국 애견연맹 정관 및 제 규정.
- (2) KKF 핸들링 매뉴얼.

2) 실기시험

- (1) 12개월 이상된 각기 다른 견종을 가지고 출진한 5명의 핸들러로 실시한 핸들링에서 1~5위까지의 순위 결정.
- (2) 각기 다른 모델견 3견종에 의한 실기 시험(심사테이블을 사용하는 견종과 사용하지 않는 견종 포함)

제9조 (심사위원의 승인)

1. 핸들러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심사위원 자격이 승인된 자.
3. 핸들러 위원회의 전체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재의 재가를 얻어 승인된 자.

제10조 (심사위원 교육) 심사위원은 년 1회 이상 본 연맹 사무처에서 주최하는 초청세미나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2년간 심사배정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위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11조 (자격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총재가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심사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심사능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심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6.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
7. 핸들러 심사위원 규정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은 자.

제12조 (상벌) 심사위원에 대한 상벌 사항은 본 연맹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권한) 심사위원은 심사분야에서 일체를 총괄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다.
단, 심사방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금지) 심사위원이 결정한 성적과 평가는 절대적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5조 (퇴장)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비난, 중상 또는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참가자에게 심사위원은 당해건의 심사를 중지하고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배정) 심사배정은 핸들러 위원회 위원장과 논의 후 연맹 사무처에서 배정하며 심사 개시 7일 이전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적용) 본 규정에 따르지 않는 심사위원의 심사성적은 공인되지 않는다.

제18조 (심사위원의 비용) 심사비 및 교통비 · 숙박비의 실비는 본 연맹이 부담한다.

제3장 출제위원

제19조 (출제위원의 위촉) 출제위원은 본 연맹 사무처와 핸들러 위원회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20조 (출제위원의 직무) 출제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핸들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과목 선정
2. 핸들링에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 문항 출제
3. 시험문제의 유출 방지 및 보안

제4장 부칙

제2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핸들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4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3조, 9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21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제4조 6항)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4조 6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4조)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4조, 제5조, 제8조)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반려동물종합관리사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단일등급) 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란 국내 반려동물의 종류와 특성과 관련 법률 지식, 행정 업무 수행,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기초 애견미용, 기초 애견훈련, 올바른 번식 방법을 숙지한 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시험위원”이란 시험감독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을 말하며 본 연맹에서 정한다.
3. “답안카드”란 검정시행종목 중 전산작업 혹은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 연맹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5조 (검정인력) 본 연맹은 기획재정국에 부서장을 두어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서장 이하 학술교류팀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6조 (검정업무의 구분)

1. 학술교류팀장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검정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2. 학술교류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수험원서 교부, 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2) 검정 세부실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 4)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 5)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 6) 검정응시료 수납에 관한 사항
 - 7) 합격자 및 자격증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7조 (민간자격의 취득) 본 반려동물종합관리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교육' 또는 연맹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이다.

제9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은 기초 애견미용, 기초 애견훈련, 올바른 번식방법, 반려동물 관련 법률 지식과 행정 업무 수행,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동물생산·판매·수입업, 동물 용품 제조 및 유통업,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반려동물훈련, 반려동물 미용·위생업, 동물장묘업,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제10조 (검정의 기준)

1. 검정의 기준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법률 및 행정 지식과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능력과 기초 애견미용, 기초 애견훈련, 올바른 번식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일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	단일 등급	국내 반려동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지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위탁, 보호, 관리가 가능하며 기초 애견미용, 기초 애견훈련, 올바른 번식방법을 숙지한 자로 반려동물 관련 법률 지식과 행정 업무 수행,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춘 자.

제11조 (검정의 방법)

1. 검정은 필기시험 시행과 교육의 이수로 한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 나. 시험의 방법 및 시간은 [별표1]과 같다.
3. 교육의 이수는 본 연맹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교육' 또는 연맹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 연맹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안내한다.

제12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3조 (유효기간)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자격은 자격증 발급 이후로부터 별도의 자격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
2.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교육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14조 (합격결정 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5조 (면제자격)

단,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받을 수 있다.

1. 본 연맹 애견 미용사 자격 취득자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응시 접수 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애견미용기초'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애견미용사 자격 검정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본 연맹 훈련사 자격 취득자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응시 접수 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애견훈련기초'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훈련사 자격 검정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본 연맹 핸들러 자격 취득자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응시 접수 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브리더 윤리 및 애견번식'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핸들러 자격검정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4. 본 연맹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응시 접수 시 해당 자격증 사본과 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심사를 거쳐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응시 접수 시 관련 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심사를 거쳐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1) 반려동물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2) 반려동물 관련 학과 교사 또는 교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제4장 수험원서

제16조 (검정안내)

1. 본 연맹은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2. 본 연맹 소속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서교부)

1.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정해진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2. 온라인 응시원서는 본 연맹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게재된다.

제19조 (원서접수)

1. 원서접수, 검정응시료(이하 “응시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서는 학술교류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는 접수마감일 사무업무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주소는 thekkf@daum.net으로 한다.)
4.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5. 위의 각 항에 응시원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 (수험번호 부여) 수험번호는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며,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본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1조 (응시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응시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서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 검정 응시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1. 학술교류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 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기획재정국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기획재정국은 시험장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4조 (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학술교류팀은 시험일시, 수험자 지침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접수 시 사전 공고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험장 준비)

1. 시험장 관리부서는 기획재정국으로 하며 책임관리팀은 학술교류팀으로 한다.
2. 학술교류팀은 자격검정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험부 설치운영) 기획재정국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7조 (출제위원의 위촉 및 자격)

1.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제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
 - 2)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업종을 3년 이상 자영하는 자
 - 3) 해당 종목분야에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 5)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8조 (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1.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교류팀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학술교류팀은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3. 시험문제와 정답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관리담당자가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9조 (시험문제의 감수)

1. 시험문제의 감수는 학술교류팀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술교류팀이 지정한 자가 수행한다.
2. 시험문제 감수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 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30조 (시험문제 인쇄)

1. 시험문제 인쇄는 학술교류팀 내의 직원 또는 기획재정국 부서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2. 시험문제 인쇄는 학술교류팀이 지정한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1. 학술교류팀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와 시험장 총괄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학술교류팀으로부터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총괄 담당 직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3. 시험장 총괄 담당 직원은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4. 문제지 봉투는 시험 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32조 (검정시행 총괄) 기획재정국은 시험부를 운영하고, 학술교류팀은 감독관 및 보조요원을 지정, 지휘, 감독하며 시험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3조 (검정시행 기술회의) 시험장 총괄 담당 직원은 시험시행 전에 감독관 등에게

필기시험에 있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34조 (고사본부 설치 및 운영)

1. 본 연맹은 검정 시험의 원만한 시행 및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검정 시험 고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고사장과 동일한 건물내에 설치하고, 직원 및 시험위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편성된 직원 및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사장 준비, 점검 및 시험문제의 보안유지
 - 2) 문제지, 답안지 및 각종 시험관련서류 운송 및 확인
 - 3) 감독관 확인 및 편성, 서약서 및 영수증 징구
 - 4) 검정 진행상황 확인 . 점검
 - 5) 각종 사항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 6) 부정행위자의 처리

제35조 (감독관 운영)

1. 본 연맹은 원활한 시험 진행 및 부정행위 감시 등을 위하여 감독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2. 감독관은 응시지역 별로 본 연맹 소속 직원 또는 감독관 승인을 받은 자로 편성한다.
3.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독관은 시험의 원만한 진행 및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시험 실시 1시간 전에 본부에 도착하여 고사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 진행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 2) 감독관은 본부에서 배부한 고사실 응시자명단과 문제지와 답안지 등의 서류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실에 입실한다.
 - 3)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진행 요령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 확인, 신분 확인 등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4) 감독관은 시험 종료 후 본부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거 제출하고, 고사실별 응시결과 집계표 등을 제출하고 고사장 책임자의 확인 후 감독 업무를 종료한다.
4. 감독관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1일 감독관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36조 (수험자 교육) 감독관은 배치된 시험장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37조 (수험자 확인) 감독관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 (문제지 배부)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9조 (답안지) 감독관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 (시험시행결과보고) 본부요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국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재정국 부서장에게 유선 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위원의 임무

제41조 (시험감독위원의 임무)

1. 시험감독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교류팀장”은 검정업무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기획 및 제도개선, 집행·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2) “감독관”은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및 수험자 교육, 시험문제지, 답안지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를 담당한다.
 - (1) 감독 업무 수행 전 [별지 1]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 (2) 감독관은 시험문제의 유출 방지 및 보안을 위해 임무를 다해야 하며, 비밀 유지 서약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등 징계 조치 처분에 따라야 한다.
- 3) “보조요원”은 시험 준비 및 시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2조 (출제위원의 임무)

1. 출제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의 직업윤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 과목 선정
- 2) 반려동물관리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 문항 출제
- 3) 출제 시험문제의 유출 방지 및 보안(서약서 작성)
- 4) 출제 시험문제의 감수 및 보완

제43조 (채점위원의 임무)

1. 채점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채점담당자”는 시험장 총괄 담당 직원으로부터 정답표의 봉인상태를 확인 후 문제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 2) “채점담당자”는 채점 완료 후 답안지와 정답표를 학술교류팀장에게 문제없이 인계 후 기획재정국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44조 (답안지 인계) 감독관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학술교류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5조 (정답교부)

1. 학술교류팀은 필기시험의 정답표를 작성하여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46조 (채점과정)

1. 객관식 시험문제의 채점은 OMR카드 판독기에 의한 전산자동 채점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수험자의 답안지에 이중답안 표기, 불필요한 마킹표기, 마킹 누락 등에 대하여는 수험자 귀책으로 오답 처리한다.
3. 판독결과 거부반응이 일어난 답안지는 수험자 인적사항, 수험번호, 교시, 유형 부분만 검토 수정하여 재 판독 처리하고, 답안카드 구김 등으로 거부반응이 발생한 답안지는 새로운 답안지에 이기하여 판독처리 한다.
4. 제3항과 같이 새로운 답안지에 이기하여 판독하는 경우 채점 후 판독한 사본은 원본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5. 채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지의 내용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시험 서류 관리)

1. 매 회의 시험 및 채점이 종료되면 문제지는 시험실시일 3개월 후 소각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2. 필기시험의 답안지 및 시험관련한 일체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발급

제48조 (합격자 공고)

1. 본 연맹 총재는 자격증 검정시험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연맹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자격증명서 발급)

1.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명서(자격증)를 발급한다.
2. 자격증명서(자격증) 등록료는 100,000원으로 한다.
3. 자격증명서 발급기한은 합격자 발표 후 180일 이내여야 하며 그 이후는 발급이 제한된다.

제12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50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1.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6)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7)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2. 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2]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부기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험장 총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부정행위자 처리)

1. 학술교류팀장은 감독관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기획재정국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학술교류팀장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업국 부서장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 (사후적발 처리)

1.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2.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 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3. 학술교류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1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4. 학술교류팀장은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당사자에게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3장 교육기관 선정 및 협약의 체결

제54조(목적) 이 규정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대상기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
5.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6. 기타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 정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제56조(교육계획서 제출)

1. 교육기관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호의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3]의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기관 신청서 1부
 - 2) [별지 4]의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 과정 사업 계획서
 - 3) [별지 5]의 교육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2. 교육계획서에 목적, 개요, 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효과 등을 작성한다.

제57조 (교육계획의 승인 등)

1. 교육기관은 기획 재정국 부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3] 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4]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예산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본 연맹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이 기준에 적정하고 교육목적에 부합할 경우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강사 파견이나 소정의 교육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본 연맹은 교육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교육계획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 2) 교육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8조(교육기관의 선정 및 통보)

1. 학술교류팀은 서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학술교류팀은 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본 연맹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의 명칭 등을 공고하고, 해당 기관에 선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협약의 체결)

1. 본 연맹으로부터 선정을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5] 서식의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60조(교육대상)

1.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교육기관은 각 기수별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을 최소 20명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명단을 포함한 모집내용을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교육생 선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한다.
5. 본 연맹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기수별 교육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조(교육 시간)

1. 교육시간은 교육과정 기수별로 40시간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은 교육 참여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교육내용)

1. 교육기관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시험과목(반려동물 총론 및 법률·행정,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애견 미용 기초, 애견 훈련 기초, 브리더 윤리 및 애견번식 등)에 대한 교과과정을 우선 편성하되,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정이나 특강, 세미나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은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토론형, 발표형, 세미나형, 실습형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3조(교육과정의 운영)

1.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전문가인 내부교수 또는 외부교수,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현장 관계자 등으로 강사진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본 연맹에 등록되어있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강사를 요청 할 수 있다.
3.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완료할 때에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교육과정 수료)

1. 교육 수료는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은 교육생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본 연맹은 교육 수료생에 대하여 소정의 시험 과정을 거쳐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5조(교육결과 보고)

1.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강의 시 사용한 강의자료 일체와

[별지 6]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술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술교류팀은 1항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기획재정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지도·감독 등)

1. 학술교류팀은 교육기관이 교육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을 점검하는 등 적절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6조(교육 지원금의 지원)

1. 본 연맹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의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에게 교재비·강사료 등에 대한 교육 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2. 본 연맹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시점에 교육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4장 전문강사 인력 운영

제67조 (목적) 이 규정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의 강사위촉 기준 및 절차, 강사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 (구분) 강사는 단과강사와 전과목강사로 구분한다.

1. 단과강사 : 반려동물종합관리사 5개 과목(반려동물 총론 및 법률·행정,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애견 미용 기초, 애견 훈련 기초, 브리더 윤리 및 애견번식) 중 일부의 강의만을 담당하는 강사

2. 전과목강사: 반려동물종합관리사 5과목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강사

제69조 (자격)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강사(이하 : 전문 강사)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한국애견연맹 정관 및 제 규정 및 타 법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과목을 강의하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KKF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심사위원 자격 소지자(애견미용사, 훈련사, 핸들러, 도그쇼)
5.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서적 집필에 참여한 자 다만, 해당 학문분야에 권위가 있거나 실무경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0조 (위촉 원칙)

1. 강사의 신규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모집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고방법,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신규강사 지원자는 본 연맹이 공고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 및 경력 등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제71조 (위촉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차 해당 시 경고, 2회 해당 시 강의배제)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2) 위촉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 3) 위촉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 수행에 임하지 않을 경우
- 4) 강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강의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 5) 강사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6) 강사가 담당과목을 계속하여 강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7) 그 외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가 담당과목을 강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제72조 (담당시간 및 직무)

1. 전문강사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담당 과목의 강의
- 2) 수강생의 출결파악
- 3) 담당 과목의 강의자료 준비 및 작성(PPT, 텍스트문서, 사진자료 준비 등)
- 4) 강의결과 보고서 작성
- 5) 기타 강의 진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73조 (강사료)

1. 강사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1일 강사료는 최대 20만 원으로 한다.

제74조(강사 관리) 학술교류팀은 전문강사의 강사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강의실적 및 출강사항, 강사 평점 등을 기록·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 2018년 11월 13일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12조, 제48조, 제69조, 별지1)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49조, 별표2)

2020년 일부개정 내용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

[별표 1]

시험 방법 및 시간

시험과목	검정 시행 형태	시험형태 및 문항 수		시험시간
		객관식	총점	
반려동물 총론 및 법률·행정	4지선다 객관식	25문항	100점	120분
고객 응대 및 서비스		25문항	100점	
애견 미용 기초		25문항	100점	
애견 훈련 기초		25문항	100점	
브리더 윤리 및 번식		25문항	100점	

[별표2]

응시 및 등록 수수료

구 분	응 시 부 문	금 액
응시료	전과목 응시	50,000원
	일부과목 면제	30,000원
발급비	100,000원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감독관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감독관'업무를 신청함에 있어서 한국애견연맹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애견연맹(이하 "연맹"이라 함)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감독관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감독관 업무 수행 이전, 수행 기간, 수행 종료 후에도 유출 또는 공개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연맹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시험지, 출제문제, 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 매체, 전산장비 등의 일체의 자산)을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반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 입니다. (자격시험 정보, 수험자 및 관계자 개인정보 등 일체의 정보) 이를 어길 시 연맹에 통제에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4. 본인은 업무 종료 시 연맹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연맹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비밀 유지 서약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연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연맹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대한민국애견연맹
KOREA KENNEL FEDERATION 귀중



반려동물종합관리사 부정행위 확인서

20 년도 제 회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검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부정한 방법 및 내용(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지역		시험장소		고사실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명	(인)

감독관 성명 : (인)

성명 : (인)

* 불임 : 증거물

본부직원 성명 : (인)



대한민국애견연맹
KOREA KENNEL FEDERATION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기관 신청서

① 교육과정명					
신 청 기 관	② 기관명			③ 구 분	
	④ 대표자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				
	⑦ 교육담당자	성 명		직 위	
		전 화 번 호		E-mail	
		휴 대 전 화		Fax	
	⑧ 인력현황	교 수 요 원	명	행정직원	명
	⑨ 시설현황	강 의 시 설	실, m ²	세미나실	실, m ²
	⑩ 사업개요 (당해연도)	교 육 기 간	(월)	교육인원	명
		교 육 시 간		총사업비	
컨 소 시 업	기관명			구 분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명			구 분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 제13장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직인) 한국애견연맹 KOREA KENNEL FEDERATION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 과정 사업 계획서

1 사업 계획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관: ○○교육기관(대표자: ○○○ * 교육기관 연혁, 개요를 간단히 작성)
3.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협약기간 동안의 계획)
 - * 협약기간 동안의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간단히 작성
4. 운영체계
5. 운영전략

2 20○○년도 교육계획서

1. 교육개요
 - ☐ 과정명
 - ☐ 교육목표
 - ☐ 기대 효과
2. 세부 교육계획
 - ☐ 추진일정
 - ☐ 교육생
 - 교육인원
 - 모집방법
 - 선발방법 및 기준
 - 교육생에 대한 특전

☐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

- 총 교육시간: ○○○시간
- 교육기간: ○월○일 ~ ○월○일, ○주
- 교육시기:

☐ 교육시설

- 위치
- 시설별 면적
- 강의실 배치도

☐ 교육내용 및 강사진

○ 교육내용

구분	강의명	강사 (소속 및 직위)	시간	강의방법

1) 반려동물종합관리사의 5과목(반려동물 총론 및 법률·행정,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애견 미용 기초, 애견 훈련 기초, 브리더 윤리 및 애견번식)

2) 강(강의형), 참(참여형), 강+참(강의형+참여형), 연(연수)

○ 강사진 구성

구분	강사수	교육시간	교육시간 비중
내부	강사		
외부	강사 현장 관계자		

○ 강사진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전공분야	배정시간	비고
				시간	

1) 내부, 외부

2) 교수, 현장(현장 관계자)

☐ 교육 방법

구분	내용	시간	비중
총계		시간	%
강의형		시간	%
참여형		시간	%

☐ 총사업비

구분	사업비	비중	비고
총계	원		
보조금	원	%	
교육기관 자체부담	원	%	
교육생 부담	원	%	

☐ 학사관리

- 과정 운영위원회(구성 시 작성)
- 과정장 및 행정요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E-mail
과정장			사) 휴)	
행정요원			사) 휴)	

- 출결관리 방법

☐ 평가 및 사후관리

- 교육생 평가 방법
- 수료기준
*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생 설문 조사 방법
- 사후관리

3. 예산 집행 계획(자세히 보완)

(단위: 천원)

비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부담주체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 제13장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직인)



대한민국애견연맹
KOREA KENNEL FEDERATION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교육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	교육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			
	법인 설립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교육시간			교육인원	
총 교육지원금 신청액					
예산 내역	총소요예산 (A+B+C)	원 (100%)	총 보조금액 (A)	원 (%)	
	총 교육기관부담액 (B)	원 (%)	총 교육생부담액 (C)	원 (%)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 제13장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한민국애견연맹 KOREA KENNEL FEDERATION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로고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 과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한국애견연맹과 ○○ 교육기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위해서는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한 인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교 육 과 정 명 :
2. 협 력 분 야 :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 과정
3. 협 약 체 결 기 간 :

양 기관은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전문 교육 과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교육기관장

한국애견연맹 총재

WUSV 심사위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WUSV 심사위원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WUSV 심사위원

제2조 (정의) WUSV 심사위원이라 함은 WUSV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연맹이 저먼 셰퍼드 독의 심사자격을 인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자격요건) 아래 각 항의 조건을 구비한 자에게 WUSV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1. WUSV 내셔널 심사위원

- 1) 본 연맹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2) WUSV 내셔널 심사위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2. WUSV 인터내셔널 심사위원

- 1) 본 연맹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2) WUSV 인터내셔널 심사위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3. WUSV 종견선정 심사위원

- 1) 본 연맹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 2) WUSV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한 자.
- 3) WUSV 종견선정 심사위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제4조 (준수사항) WUSV 심사위원은 본 연맹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내·외 우호단체에서 심사를 행할 경우는 사전에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자격의 구분) WUSV심사위원의 심사자격은 다음과 같다.

1. WUSV 내셔널 심사위원

- 1) 국내에서 개최되는 도그쇼의 저먼 셰퍼드 독 심사.
- 2) 국내에서 개최되는 FCI 도그쇼의 저먼 셰퍼드 독 심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FCI 심사위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WUSV 인터내셔널 심사위원

- 1) 국내·외 WUSV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도그쇼의 저먼 셰퍼드 독 심사.
- 2)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FCI 도그쇼의 저먼 셰퍼드 독 심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FCI 심사위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WUSV 종건선정 심사위원

- 1) 본 연맹에 혈통 등록된 저먼 셰퍼드 독에 대한 종건 심사 및 평가.
- 2)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저먼 셰퍼드 독 종건 선정에 관한 교육.

제6조 (직무) WUSV 심사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저먼 셰퍼드 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2. WUSV 심사위원 자격시험의 엄정한 심사.
3. 본 연맹에서 주관하는 저먼 셰퍼드 독 브리딩 및 심사기법에 관한 교육.

제7조 (자격시험)

1. WUSV 심사위원 자격시험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본 연맹 주관 하에 시행한다.
2. 필기 및 실기시험의 내용 및 합격 기준은 본 연맹 사무처에서 정한다.
 - 1) 필기시험
 - (1) 한국애견연맹 정관 및 제 규정.
 - (2) 저먼 셰퍼드 독 관련 국제 규정.
 - 2) 실기시험
 - (1) 3마리 이상의 저먼 셰퍼드 독에 대한 심사 및 순위결정
3. WUSV 심사위원 자격시험 응시료는 5만원으로 정한다.

제8조 (자격의 승인)

1. WUSV 심사위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2. 본 연맹 사무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그 자격을 인정한 자.
3.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아래의 등록요금을 납부한 자.
 - 1) WUSV 내셔널 심사위원 등록료 : 10만원
 - 2) WUSV 인터내셔널 심사위원 등록료 : 15만원
 - 3) WUSV 종건선정 심사위원 등록료 : 20만원

제9조 (자격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총재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WUSV 심사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WUSV 심사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저먼 셰퍼드 독에 대한 심사능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WUSV심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본 연맹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5. 금품 수수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6.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7.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
8. WUSV 심사위원 규정 제4조를 준수하지 않은 자.
9. WUSV 심사위원 자격 승인 후 2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10조 (권한과 의무)

1. WUSV 심사위원은 배정받은 쇼에 출진한 저먼 셰퍼드 독의 심사평가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소신껏 심사할 권한이 있다. 단, 심사방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연맹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WUSV 종견선정 심사위원은 본 연맹에 등록된 저먼 셰퍼드 독의 종견선정 심사를 담당할 권한이 있다. 단, 종견 선정 심사방침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WUSV의 기준에 따른다.
3. WUSV 종견선정 심사위원은 종견선정 심사를 마친 저먼 셰퍼드 독에 대해 각 개체마다 종견선정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검사일 기준 7일 안에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금지) WUSV심사위원이 결정한 성적과 평가는 절대적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2조 (퇴장)

1. 저먼 셰퍼드 독 심사현장에서 WUSV심사위원에 대한 비난, 중상 또는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참가자에게 WUSV심사위원은 해당견의 심사를 중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퇴장을 명한 WUSV심사위원은 대회 종료 후 3일 안에 연맹 사무처에 퇴장 사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배정) 심사배정은 연맹 사무처에서 행하며 최소 심사 개시 7일 이전에 해당 WUSV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4조 (적용) 본 규정에 따르지 않는 WUSV심사위원의 심사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5조(비용의 부담)

1. WUSV 심사위원의 도그쇼 심사시 심사비 및 교통비 · 숙박비의 실비는 주최 측이 부담한다.
2. WUSV 종건 선정 심사위원의 종건 심사가 본 연맹 주최 도그쇼에서 진행될 경우 심사비, 교통비·숙박비의 실비는 본 연맹이 부담하며, 신청자 별도의 요구에 의해 진행될 경우에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저먼 셰퍼드 독' 종건선정 검사 및 등록 신청자는 본 연맹에 검사 신청 시 검사료 5만원, 종건 선정 시 등록료 5만원을 각 각 납부하여야 한다.
4. 종건 검사 신청을 한 건이 종건 선정에 합격할 경우 종건 자격은 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종건선정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도 검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에 관해서는 본 연맹 요금 규정을 따른다.

제3장 부칙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훈련시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훈련시험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훈련시험

제2조 (훈련시험의 종류 . 과목) 훈련시험의 종류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컴퍼니언 도그(이하 'CD'라 한다) (가정견 훈련시험)
 - 1) CD I (초등과)
 - 2) CD II (중등과)
 - 3) CD III (고등과)
 - 4) CD IV (대학과)
2. 가드 도그(이하 'GD'라 한다) (경비견 훈련시험)
 - 1) GD I (경비견 훈련시험 I)
 - 2) GD II (경비견 훈련시험 II)
 - 3) GD III (경비견 훈련시험 III)
3. 아이피오(이하 'IGP'라 한다)(FCI 국제훈련시험)
 - 1) BH (동반견시험)
 - 2) IGP I (FCI 국제훈련시험 I)
 - 3) IGP II (FCI 국제훈련시험 II)
 - 4) IGP III (FCI 국제훈련시험 III)

제3조 (시험과목) 각 과목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CD 및 GD에 대해서는 훈련시험과목 . 훈련경기 과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 BH, IGP에 대해서는 FCI 국제훈련시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다.

제4조 (수험자격) 각 훈련시험의 수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1. CD 및 GD의 수험과정은 회원이 소유하는 생후 6개월 1일 이상의 본 연맹 등록견으로 한다.
2. BH, IGP의 수험과정은 FCI 공인견종으로 회원이 소유하는 본 연맹 등록견으로 과목에 따라 각각 다음 연령의 애견으로 한다.
 - 1) BH는 생후 15개월 1일 이상.
 - 2) IGP I 은 생후 18개월 1일 이상.
 - 3) IGP II는 생후 19개월 1일 이상.
 - 4) IGP III은 생후 20개월 1일 이상.

제5조 전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회원이 소유하는 생후 6개월 1일 이상의 본 연맹 공인 인정 견종 .
본 연맹 비공인 단체 등록견 . 교잡견(交雜犬)이라도 CD를 수험할 수 있다.

제6조 (수험방법)

1. CD, GD 및 IGP는 각 과목마다 순서에 따라 수험하여야 한다.
2. CD 및 GD는 복수의 과목을 동시에 수험할 수 있다.
3. IGP는 1회의 시험에 있어서 1과정만 수험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등록 완료 후 수험일부터 4주간 이상을 경과한 경우, 다음 과정을 수험할 수 있다.

제7조 (수험신청) 수험자는 각 훈련시험 과목의 훈련시험 수험 . 등록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수험료를 첨부하여 신청 만료일까지 각 주최자(수험 회장이 전람회 . 훈련경기대회 회장의 경우는 각각 주최 사무처, 공인 훈련의 경우는 주최 훈련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험료) 훈련시험의 수험료는 별도의 책정으로 정한다.

제9조 (공개의 원칙)

1. 훈련시험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2. 공개 훈련시험을 개최하는 전람회 및 경기대회 주최자는 전람회 및 경기대회 심사와 평행하게 훈련시험을 행하는 장소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최신청) 각 시험 회장에서 시험과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전람회 동시개최 공개훈련시험 회장에서는 CD의 각 과목을 행할 수 있다.
2. 훈련경기대회에서 개최되는 공개훈련 시험회장에서는 CD 및 GD, BH, IGP의 각 과목을 행할 수 있다.
3. FCI 인터내셔널 트라이얼을 개최하는 경기대회장 및 경기과목에서 FCI 국제훈련 시험 클래스를 채용하는 경기대회에서는 그 경기성적으로 IGP의 시험을 할 수 있다.
4. 공인훈련소는 모두 훈련시험을 행할 수 있다.
단, GD . IGP를 행할 경우에는 각 시험을 행하는데 필요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최 신청) 각 시험회장에서 개최 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전람회 회장을 공개훈련시험 회장으로 할 경우, 훈련관계 조정회의의 답신으로, 본 연맹에서 공개훈련 시험 동시 개최 가능한 일정을 통지하고, 이를 받아서 관할 지역 내에서 공개 훈련시험을 공개 개최하는 전람회를 매월 1개소 이상 설정하고, 공개 훈련시험 공개 개최 전람회 신청서로 본 연맹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훈련경기대회에서 공개훈련 시험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주최자는 경기대회 개최 신청서에 기재하고 본부사무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본 연맹은 회지 '애견저널' 및 홈페이지의 전람회 . 경기대회 일정표에 이 점을 공시하여야 한다.
4. 공인훈련소가 공개훈련시험을 행하려 할 때는 사전에 시험일 . 시험위원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의 실시)

1. 훈련시험을 개최하는 전람회 . 훈련경기대회의 주최자는 적어도 5마리 이상의 수험을 정리하여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향에서 마감일까지 5마리 이상의 수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신속하게 본 연맹 및 시험위원에게 시험 중지 연락을 하고, 수험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중지 연락과 함께 수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3. 훈련시험을 실시하는 공인훈련소 소장은 적어도 3마리 5과목 이상의 수험을 정리하여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합격점과 평가)

1. CD I의 심사는 과목마다 채점을 행하며 합격은 각 과목의 득점이 60% 이상이고 동시에 합계점이 35점 이상으로 하고, 합격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V(우) 45.0점 이상.
 - 2) SG(특량) 40.0점 이상 45.0점 미만.
 - 3) G(양) 35.0점 이상 40.0점 미만.
2. CD II의 심사는 과목마다 채점을 행하며 합격은 각 과목의 득점이 60% 이상이고 동시에 합계점이 70점 이상으로 하고, 합격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V(우) 90.0점 이상.
 - 2) SG(특량) 80.0점 이상 95.0점 미만.
 - 3) G(양) 70.0점 이상 80.0점 미만.

3. CDⅢ의 심사는 과목마다 채점을 행하며 합격은 각 과목의 득점이 60% 이상이고 동시에 합계점이 140점 이상으로 하고, 합격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V(우) 180.0점 이상.
- 2) SG(특량) 160.0점 이상 180.0점 미만.
- 3) G(양) 140.0점 이상 160.0점 미만.

4. CDⅣ의 심사는 과목마다 채점을 행하며 합격은 각 과목의 득점이 60% 이상이고 동시에 합계점이 210점 이상으로 하고, 합격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V(우) 270.0점 이상.
- 2) SG(특량) 240.0점 이상 270.0점 미만.
- 3) G(양) 210.0점 이상 240.0점 미만.

제14조

1. GDⅠ의 심사는 과목마다 채점을 행하며 합격은 각 과목의 득점이 60% 이상이고 동시에 합계점이 105점 이상으로 하고, 합격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V(우) 135.0점 이상.
- 2) SG(특량) 120.0점 이상 135.0점 미만.
- 3) G(양) 105.0점 이상 120.0점 미만.

2. GDⅡ의 심사는 과목마다 채점을 행하며 합격은 각 과목의 득점이 60% 이상이고 동시에 합계점이 140점 이상으로 하고, 합격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V(우) 180.0점 이상.
- 2) SG(특량) 160.0점 이상 180.0점 미만
- 3) G(양) 140.0점 이상 160.0점 미만.

3. GDⅢ의 심사는 과목마다 채점을 행하며 합격은 각 과목의 득점이 60% 이상이고 동시에 합계점이 140점 이상으로 하고, 합격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V(우) 180.0점 이상.
- 2) SG(특량) 160.0점 이상 180.0점 미만.
- 3) G(양) 140.0점 이상 160.0점 미만

제15조

1. IGP 심사는 A . B . C의 3부문마다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합격은 3부문의 어느 것이나 70점 이상으로 한다.
2. 시험을 치른 애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 1) V(우) 286점~300점.
 - 2) SG(특량) 270점~285점.
 - 3) G(양) 240점~269점.
 - 4) B(가) 210점~239점.
 - 5) M(불가) 110점~209점.
 - 6) U(실격) 0점~109점.

제16조 (합격자격의 등록과 인정)

1. 각 훈련시험 합격건의 소유자는 수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연맹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설정된 과정은 혈통증명서에 약호(略號)를 부기하고 등록증명서를 발행한다.
4. 본 연맹의 비공인견종 . 본 연맹 비공인단체 등록건 . 교잡건 잡종건이 CD에 합격,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합격 증명서가 발행된다.

제17조 (훈련시험위원의 선임 . 위촉)

1. 전람회 공동 개최 공개 훈련시험위원의 위촉은 본 연맹이 행한다.
2. 훈련경기대회 공동 개최 공개 훈련시험위원은 경기대회의 심사위원장이 담당한다.
3. 공인훈련소에서 행해지는 공개 훈련시험의 시험위원은 실시공인훈련소에 위촉한다.

제18조 (시험의 실시보고)

1. 훈련시험을 개최한 전람회 . 훈련경기대회의 주최자는 신속하게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강료를 첨부하여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훈련시험을 공동 개최한 전람회 . 훈련경기대회의 주최자는 신속하게 수험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훈련시험을 실시한 공인훈련소 소장은, 신속하게 실시보고서 및 수험보고서를 작성 수험료를 첨부하여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험위원의 일당과 교통비) 시험위원의 일당은 심사위원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0조 (훈련시험위원의 규제) 훈련시험위원은 자기의 소유권을 시험할 수 없다.

제3장 부칙

제2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훈련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21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2조 1항, 3항, 제3조 2항, 제4조 2항, 제10조 2항, 제13조 4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훈련 경기대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훈련 경기대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훈련경기대회

제2조 (개최자 . 개최횟수 . 개최시기) 훈련경기대회는 본 연맹의 주최로 연 2회, 봄철과 가을철에 개최한다.

단, 개최를 희망하는 지부 및 클럽은 사전 본 연맹 사무처와 협의 하에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개최의 신청)

1. 훈련경기대회 개최는 소속 클럽 연합회 . 지부 . 지회 . 훈련사 위원회의 일정 조정을 거쳐야 한다.
2. 지부 훈련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부는 전기 (1월~6월)에 개최할 경우에는 전년 3월말까지, 후기(7월~12월)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년 9월말까지 개최 신청서를 본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클럽 훈련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트레이너 클럽 회장은, 전기(1월~6월)에 개최할 경우에는 전년 3월까지, 후기(7월~12월)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년 9월말까지 개최 신청서를 본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개최의 승인) 훈련경기대회 개최는 총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5조 (개최의 공시) 본 연맹은 훈련경기대회의 명칭 . 개최 일시 . 개최 장소 . 출전 신청지 . 심사위원 . 공개훈련 시험 개최 유무를 홈페이지에 6개월 예정까지 공시한다.

제3장 심사위원 . 스튜어드

제6조 (심사위원 . 스튜어드의 선임 . 위촉) 훈련경기대회의 심사위원 . 스튜어드는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재가 위촉한다.

제7조 주최자는 같은 심사위원을 연속하여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지부 훈련경기대회, 클럽 훈련경기대회에서 국외 심사위원을 초청할 때는 주최자는 명예 심사위원 초청 신청서를 훈련경기대회 개최신청서에 첨부하고, 본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의 자격)

1. 심사위원장은 1급 훈련시험위원의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2. 심사위원은 2급 훈련시험 위원 이상의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FCI 국제훈련시험(IGP) 경기의 심사위원은 IGP 심사위원 자격자로 한다.

제10조 (보고서류) 심사위원장은 경기대회 보고서를 경기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의 규제) 각종 경기대회에서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과거 6개월 이내에 자기 및 가족의 명의였던 애견의 심사를 할 수가 없다.

제12조 (스튜어드의 자격) 스튜어드는 3급 이상의 훈련시험 심사위원의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단, IGP 경기의 스튜어드는 2급 이상의 훈련시험 심사위원의 자격자 또는 IGP 심사위원 자격자로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비용) 심사위원의 심사비 . 교통비 . 숙박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스튜어드 비용) 스튜어드 일당 . 교통비 . 숙박비는 주최자가 부담한다.

제4장 경기 클래스

제15조 (경기 클래스 . 경기 내용)

1. 경기 클래스는 다음과 같다.

- 1) CD I (가정견 초등과)
 - (1) 아마추어 훈련사.
 - (2) 일반부.
- 2) CD II (가정견 중등과)
 - (1) 아마추어 훈련사.
 - (2) 일반부.
- 3) (삭제)
- 4) CD III (가정견 고등과)
 - (1) 아마추어 훈련사.
 - (2) 일반부.
- 5) CD IV (가정견 대학부)
- 6) 단체 훈련부.
- 7) 복종 작업 초등부.(초등학생, 중학생)
- 8) 복종 작업 학생부.(고등학생, 대학생)
- 9) 물품 선별부.
- 10) 족적 추급부.
- 11) 동반견 훈련(BH)
- 12) FCI 국제 훈련 I (IGP I)
- 13) FCI 국제 훈련 II (IGP II)
- 14) FCI 국제 훈련 III (IGP III)
- 15) 어질리티(비기너 I, II, III, 노비스 I, II, III, 점핑 I, II, III, 어질리티 I, II, III)
- 16) 디스크독(D/A, D/A페어, 프리스타일, 페어 프리스타일)

2. 전항 1)~5) 및 7)~11)의 경기는 별도로 정해진 훈련시험과목 . 훈련경기대회 과목에 관한 규정에 의해 행해진다.

3. 제1항 12)~14)의 경기는 FCI 국제훈련 시험규정에 의해 행한다.

제16조 (경기 클래스의 분할)

1. 클래스의 출전 마리 수가 30마리를 초과할 때는 클래스를 분할하여 행할 수 있다.

2. 가정견 초등과, 중등에서는 유년부(유치원, 초등, 중등), 학생부(고등, 대학), 일반부(훈련사)로 분할하여 행할 수 있다.

제17조 (경기 클래스와 과목의 채용)

1. 본부 훈련경기 대회는 제15조 1항 1)~10) 클래스를 채용하여 개최한다.
2. FCI-IGP 월드 챔피언 파견선고 경기대회는 FCI 국제훈련Ⅲ을 행한다.
3. FCI 인터내셔널 트라이얼은 제15조 중에서 7)을 제외한 클래스를 채용한다.
4. 제15조 제1항 12)~14)의 FCI 국제훈련을 경기로 채용하는 주최자는 족적 추급 . 복종 작업 . 방위 작업에서 임의로 단일 과목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

1. 본부 훈련경기대회 . FCI 인터내셔널 트라이얼에 있어서 물품 선별부 . 족적 추급부는 기타 냄새를 이용한다.
2. 지부 훈련경기대회 . 클럽 훈련경기대회는 물품 선별부 . 족적 추급부에 기타 냄새부로 별도로 자취부(自臭部)를 채용할 수 있다. GDⅡ의 심사는 과목마다 채점을 행하며 합격은 각 과목의 득점이 60% 이상이고 동시에 합계점이 140점 이상으로 한다.

제5장 출진견의 자격

제19조 (출진견의 자격)

1. 연맹 회원 소유의 생후 6개월 1일 이상의 본 연맹 등록견으로 한다.
2. 전 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클럽 회원이 소유한 생후 6개월 1일 이상의 본 연맹 비공인 견종 . 본 연맹의 비공인단체 등록견 . 교잡견은 CD, 원반던지기, 어질리티 경기 클래스에만 진출할 수 있다.

제20조

1. FCI 국제훈련 경기에 진출은 FCI 공인견종으로 연맹 회원 소유의 본 연맹 등록견,

또는 FCI가맹단체 등록견으로 각각 다음 연령의 애견으로 한다.

- 1) FCI국제훈련Ⅰ은 생후 18개월 1일 이상.
 - 2) FCI국제훈련Ⅱ는 생후 19개월 1일 이상.
 - 3) FCI국제훈련Ⅲ은 생후 20개월 1일 이상.
2. 전 항 1), 2)의 클래스에서 3회 이상 우(V) 평가를 받은 애견은 이후 동일 클래스는 진출할 수 없다.

제21조

1. 전염병 . 피부병 등 건강상의 위해가 있는 애견은 진출할 수 없다.
2. 발정한 애견은 각 클래스의 마지막 경기를 행하기로 한다.

제22조 당해 경기대회를 주최 및 담당하는 조직의 3역은 자기 소유견을 진출시킬 수 없다.

제6장 훈련사의 자격

제23조

1. 훈련사는 본 연맹의 회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2. 공인 훈련사 또는 그 조수 및 이에 준하는 자(훈련을 업으로 한 경력을 갖는 자)는 아마추어 훈련사부에 출장할 수 없다.
3. 각 경기대회에서 주최 및 담당하는 조직의 3역은 훈련사로서 출장할 수 없다.

제7장 출진의 신청

제24조(출진 신청)

1. 출진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출진료를 납부하고, 마감일까지 경기대회 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 마감일은 각각 경기대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출진안내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본부 훈련경기대회 . FCI-IGP 월드 챔피언십 파견선고 경기대회는 개최일로부터 3주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날.
 - 2) FCI 인터내셔널 트라이얼 . 지부 훈련경기대회 . 클럽 훈련경기대회는 개최일로부터 2주간 거슬러 올라가 날.
 - 3)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인 경우, 직전후의 평일로 할 수 있다.

제25조 (중복 출진) 출진은 하나의 클래스로 한한다. 단, 가정견의 클래스는 연속하여 두 클래스 이상 진출할 수 있다.

제26조 (출진료) 경기대회의 출진료는 별도로 책정한다.

제8장 표창

제27조 (석차) 표창은 클래스별로 득점 순위에 따라 석차를 정하며, 다음과 같이 로제트를 교부한다.

1. 본부 훈련경기대회, FCI-IGP 월드 챔피언 파견선고 경기대회, FCI 인터내셔널 트라이얼 10석까지.
2. 지부 훈련경기대회 . 클럽 훈련경기대회 5석.

제28조 (동점의 석차판결) 동점의 석차 판정은 경기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다.

1. FCI 국제훈련 이외의 경기
 - 1) 규정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을 때는 규정과목의 합계점이 높은 것을 상위로 한다.
 - 2) 규정과목이 동점일 때는 담당 심사위원 판단에 따른다.
2. FCI 국제훈련경기
 - 1) 방위작업의 득점이 높은 것을 상위로 한다.
 - 2) 방위작업의 득점이 동점일 때는 복종 작업의 득점이 높은 것을 상위로 한다.

제29조 (특별표창)

1. 본부 훈련경기 대회에서는 다음 특별표창을 행한다.
 - 1) 가정견 고등과 아마추어 훈련사의 최우수 견에게 총재상을 수여한다.
 - 2) 가정견 고등과 일반부 훈련사의 최우수 견에게 총재상을 수여한다.
 - 3) 가정견 중등과 아마추어 훈련사의 최우수 견에게 총재상을 수여한다.
 - 4) 가정견 중등과 일반부 훈련사의 최우수 견에게 총재상을 수여한다.
 - 5) 특별견부의 종합 1석 견에게 우수대상을 수여한다.
2. FCI 인터내셔널 트라이얼, 지부 훈련경기대회에서는, 주최자가 경기 개시 전까지 정한 두 개 클래스의 최우량 견에게 각각 총재상을 수여한다.

제9장 캐시트(CACIT) 교부

제30조 (캐시트 교부) FCI 국제훈련Ⅲ 클래스 1석견에게 FCI 워킹 챔피언 자격 등록에 필요한 캐시트(CACIT)를 교부한다.

제10장 경기대회장에 입장제한

제31조 (경기대회장에 입장제한) 본 연맹 및 주최자는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경기대회 회장의 규율, 평온을 깨트릴 우려가 있는 자의 경기대회 회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장 부칙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훈련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15조 1항, 제16조 2항, 제19조 2항, 제23조 1항, 2항, 3항, 제25조, 제29조 1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훈련시험과목 . 훈련경기과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훈련시험과목·훈련경기과목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가정견 시험 . 경기과목

제2조 가정견(CD)의 시험과목 및 경기과목에 있어서 규정과목 . 자유 선택과목은 다음과 같다.

1. CD I (가정견 훈련시험 초등과) / 가정견 경기 초등과

1) 시험의 경우

- (1) 줄 메고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
- (2) 줄 메고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 (3) 규정 2과목 외 지정 20과목 중 선택 3과목 합계 5과목

2) 경기대회의 경우

- (1) 줄 메고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
- (2) 줄 없이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
- (3) 정좌(停座) 및 초호(招呼) 규정과목
- (4) 복와(伏臥) 규정과목
- (5) 입지(立止, 끈 없음) 규정과목

2. CD II (가정견 훈련시험 중등과) / 가정견 경기 중등과

- 1) 줄 메고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 2) 줄 없이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 3) 정좌(停座) 및 초호(招呼) 규정과목
- 4) 복와(伏臥) 규정과목
- 5) 입지(立止, 끈 없음) 규정과목
- 6) 보통걸음 행진 중 복와 규정과목
- 7) 보통걸음 행진 중 정좌 규정과목

3. CDⅢ(가정견 훈련시험 고등과)(경기대회만)

- 1) 줄 메고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 2) 줄 없이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 3) 정좌(停座) 및 초호(招呼) 규정과목
- 4) 복와(伏臥) 규정과목
- 5) 입지(立止, 끈 없음) 규정과목
- 6) 보통걸음 행진 중 복와 규정과목
- 7) 보통걸음 행진 중 정좌 규정과목
- 8) 보통걸음 행진 중 입지 규정과목
- 9) 장애물 넘기(편도) 규정과목
- 10) 휴지(休止) 규정과목

4. CDⅢ(가정견 훈련시험 고등과) / 가정견 경기고등과

- 1) 줄 메고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 2) 줄 없이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 3) 정좌(停座) 및 부름(招呼) 규정과목
- 4) 복와(伏臥) 규정과목
- 5) 입지(立止, 끈 없음) 규정과목
- 6) 보통걸음 행진 중 복와 규정과목
- 7) 보통걸음 행진 중 정좌 규정과목
- 8) 보통걸음 행진 중 입지 규정과목
- 9) 물품 들고 오기 규정과목
- 10) 원격 . 정좌에서 복와 규정과목
- 11) 장애물 넘기(편도) 규정과목
- 12) 장애물 넘기(왕복) 규정과목
- 13) 가부좌 규정과목
- 14) 휴지(休止) 규정과목

5. CDIV(가정견 훈련시험 대학과) / 가정견 경기대학과

- 1) 줄 메고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 2) 줄 없이 보행 훈련(갈 때는 상보, 올 때는 구보)-규정과목

3) 정좌(停座) 및 부름(招呼)	규정과목
4) 복와(伏臥)	규정과목
5) 입지(立止, 끈 없음)	규정과목
6) 보통걸음 행진 중 복와	규정과목
7) 속보 행진 중 복와	규정과목
8) 보통걸음 행진 중 정좌	규정과목
9) 속보 행진 중 정좌	규정과목
10) 보통걸음 행진 중 입지	규정과목
11) 속보 행진 중 입지	규정과목
12) 물품 들고 오기	규정과목
13) 전진	규정과목
14) 원격 . 와인에서 입지	규정과목
15) 원격 . 정좌에서 복와	규정과목
16) 원격 . 정좌에서 입지	규정과목
17) 장애물 넘기(편도)	규정과목
18) 장애물 넘기(왕복)	규정과목
19) 가부좌	규정과목
20) 휴지(休止)	규정과목
규정 20과목 외 자유선택 10과목 합계 30과목	

제3조 (CD1 선택과목) CD1(가정견 초등과)의 시험에서 행할 수 있는 선택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끈 없이 한쪽 다리 들고 행진.
2. 정좌 및 부름.
3. 복와.
4. 끈 없이 입지.
5. 보통걸음 행진 중 복와.
6. 보통걸음 행진 중 정좌.
7. 보통걸음 행진 중 입지.
8. 속보 행진 중 입지.
9. 원격 . 복와에서 입지.

10. 가부좌.
11. 휴지(休止)
12. 손 . 교체.
13. 뒷발로 서서 앞발을 올리는 재주.
14. 갖춰서 걷기.
15. 잠자기.
16. 소리 내어 짓기.
17. 집.
18. 안김.
19. 엮기.
20. 8자로 다리 꼬기.

제4조 (규제과목) 경기대회에서는 다음 과목을 자유 선택과목으로 행할 수 없다.

1. 전진 및 방향전환.
2. 판벽 올라가기(편도)
3. 판벽 올라가기(왕복)
4. 각종 연속왕복 장애물 넘기.
5. 의자 올라가기와 미끄럼틀 내려오기.
6. 다리 건너기(편도)
7. 다리 건너기(왕복)
8. 족적추급(自臭 끈 부착)
9. 물품감수(끈 부착)
10. 금족 방향.
11. 습격.
12. 범인 호송.
13. 범인 감시.

제5조

1. 시험 . 경기과목의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 1) 줄 메고 보행 훈련

출발점에서 애견에게 한쪽 다리를 들게 한다. 지시에 따라 ㄷ자 형으로 30m 코스를 CDⅠ의 과목에서는 보통 걸음으로 왕복한다. CDⅡ 과목 이상에서는 가는 길은 보통 걸음, 돌아오는 길은 속보로 행한다. 각 과목 모두 돌아오는 길인 반환점에서는 멈추지 말고 오른쪽 돌기 또는 왼쪽 돌기(지도사는 왼쪽 돌기 애견은 오른쪽 돌기를 말한다)의 어느 쪽인가로, 멈추지 말고 반환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오른쪽 돌기 또는 왼쪽 돌기로 온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애견을 한쪽 다리를 들게 하여 끝낸다.

전반적으로 지도사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성시(聲視) 부호의 지도는 작을수록 좋다. 성시 부호의 남용과 유도적인 지도사의 태도는 그 정도에 따라 감점된다. 출발, 반환 및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때 한 마디 부호는 사용한다. ('에트에' 혹은 '스와레') 끈의 유지는 왼손, 오른손 어느 쪽이건 좋다.

2) 줄 없이 보행 훈련

애견의 목걸이에 달린 끈을 떼어내어 지도사의 어깨에 걸쳐 두던가 소정의 위치에 두고 (1)의 요령으로 행한다.

3) 정좌 및 부름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서 한쪽 다리를 들게 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기다려"라 명령하고 애견의 10m 전방에서 마주보고 직립한 다음, 약 3초경과 후 지시에 따라 견을 부른다. 애견은 지도사의 다리 앞에서 정좌하게 하던가 또는 지도사 바로 앞에서 일단 마주보고 정좌를 하게 한 다음 한쪽 다리를 들고 정좌하게 하여 끝낸다.

4) 복와(伏臥)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서 한쪽 다리로 정좌하게 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풀어"를 명령하고, 애견이 엎드려 누워서 약 3초 경과 후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다리로 정좌하게 하고 끝낸다. 지도사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직립한 채로 행하면 이상적이다.

5) 끈 없이 입지(立止)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게 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입지를 명령하고, 애견이 입지하고 약 3초간 경과 후 지시에 따라 애견을 앉게 해준다.

지도사가 이동하지 않고 직립한 채로 행하며 이상적이다.

6) 끈 부착 입지

"5)"의 요령과 동일

7) 보통 걸음 행진 중의 복와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게 한다. 지시에 따라 보통 걸음으로 한쪽 다리로 행진 중에 5m의 규정지점에서 지도사는 걸음의 각도를 바꾸지 않고 애건에게 복와를 명령하며, 각도를 바꾸지 않고 지도사만으로 지정시점부터 약 10m 진행 후 오른쪽 회전하며 멈추고, 애건과 대면 직립하여 약 3초 후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의 원래 보통 걸음으로 돌아오며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이 원래대로 보통 걸음으로 되돌아와서 지시에 따라 앉게 한 다음 끝낸다.

8) 보통걸음 진행 중의 정좌

“7)”의 요령에 따라 애건에게 입지를 명한다.

9) 보통걸음 진행 중의 입지

“7)”의 요령에 따라 애건에게 입지를 명한다.

10) 보통걸음 진행 중의 복와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게 한다. 지시에 따라 보통 걸음으로 한쪽 다리로 행진 중 5m의 규정지점에서 지도사는 걸음의 각도를 바꾸지 않고 애건에게 복와를 명령하며, 각도를 바꾸지 않고 지도사는 규정 지점에서 약 10m 진행 후 오른쪽 회전하며 멈추고, 애건과 대면 직립하여 약 3초 후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의 원래 보통 걸음으로 돌아오며 지시에 따라 앉게 한 다음 끝낸다.

11) 속보 행진중의 정좌

“10)”의 요령에 따라 애건에게 정좌를 명한다.

12) 속보행진 중의 입지

“11)”의 요령에 따라 애건에게 입지를 명한다.

13) 물품 들고 오기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게 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기다려” 명하며, 아령을 약 10m 전방에 던져서 지시에 따라 애건을 보내어 들고 온 애건은 아령을 든 채로 지도사가 앉으라고 명령하던가 또는 마주보고 앉는다. 지시에 따라 애건에게 명하여 아령을 들고 끝내던가 마주보고 앉은 경우는 앉게 한다.

14) 전진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게 한다. 지시에 따라 규정위치(전방 약 10m)로 애건을 전진시키고, 애건이 도달하면 정지,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을 부른다. 부름을 받은 애건은 앉던가 또는 마주보고 정좌한 후 앉게 된다.

15) 원격 . 복와에서 입지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게 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을 복와시키고, 기다리게 하여 약 10m 전방에 가서 애건과 서로 마주 직립한다. 약 3초 후 지시에

따라 지도수는 애견에게 명령하고, 기다려, 지시에 따라 애견이 본래의 보통 보행에서 되돌아와 직립하며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앞게 한다.

16) 원격 . 복와에서 정좌

"15)"의 요령에 따라 복와에서 정좌를 행한다.

17) 원격 . 입지에서 정좌

"15)"의 요령에 따라 복와에서 정좌를 행한다.

18) 원격 . 입지에서 복와

"15)"의 요령에 따라 정좌에서 복와를 행한다.

19) 원격 . 정좌에서 복와

"15)"의 요령에 따라 정좌에서 복와를 행한다.

20) 원격 . 정좌에서 입지

"15)"의 요령에 따라 정좌에서 입지를 행한다.

21) 장애물 뛰어넘기(편도)

판자를 댄 장애물 편도 뛰어넘기에서 장애물의 높이는 소형견은 대략 키 높이, 중형견은 40cm를 상한, 대형견은 70cm로 한다.

지도사는 애견이 뛰어넘는데 필요한 임의의 도움거리를 취하여 장애물의 앞 위치에서 애견에 앞게 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뛰어넘기를 명령하고, 애견이 뛰어넘으면 지도사는 애견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지시에 따라 애견이 제자리로 가서 지시에 따라 앉는 것으로 끝난다. 경기대회에서는 모든 장애물 뛰어넘기 작업에서 애견이 한 명령하여 듣지 않을 경우 (실패와 거부)로 재평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2) 장애물 뛰어넘기(왕복)

"21)"과 같이 장애(높이)를 이용한다.

지도사는 애견이 뛰어넘는데 필요한 임의의 도움거리를 취하여 장애물의 앞 위치에서 애견에 앞게 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뛰어넘기를 명령하고, 애견이 뛰어넘으면 지도사는 애견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지시에 따라 애견에게 왕복 뛰어넘기를 명한다. 애견은 뛰어넘은 경우 직접 앞던가 또는 마주보고 정좌한 후 앉는 것으로 끝낸다.

23) 거좌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보통 걸음으로 애견에게서 10m 전방으로 향하여 애견과 마주보고 직립한다.

약 30초 경과 후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이 본래 상태대로 되돌아가서 앉아 있던 위치에 직립하게 하고 끝낸다.

24) 휴지(休止)

지시받은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애견에게 쉴 것을 명하고, 지도사는 지시한 장소에 숨는다. 약 3분 경과 후 지시에 따라 애견에게로 돌아와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앉히고 끝낸다(경기대회에서는 진행상 휴지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다)

25) 돌기(오른쪽 돌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과 마주 보고 일단 직립하여 절도를 갖게 한 다음 오른쪽 돌기를 3회 명한다. 3회전 후 일단 대면 정좌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성시 부호는 1회전에 대해 1성시 부호를 이상적으로 하고, 지도사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손으로 크게 원을 그리는 듯 한 시부(視符)와 성부(聲符)의 남용은 감점이 된다.

26) 돌기 (왼쪽 돌기)

"(25)"의 요령에 따라 왼쪽 돌기를 한다.

27) 손 교체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과 마주 보고 일단 직립하여 절도를 갖게 한 다음 애견에게 "손"을 명하여 애견의 한쪽 손목과 악수하고, 지시에 따라 다른 한쪽 손목과 악수한 후 지도사는 직립하여 절도를 갖춘 다음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지도사가 내민 손은 한쪽 손뿐이다(지도사가 애견의 손을 잡기 어렵게 유도하는 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8) 뒷발로 서서 앞발을 들어올리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과 마주 보고 일단 직립하여 절도를 갖게 한 다음 "앞발 들어올리기"를 명한다. 약 5초간 유지시킨 후 지시에 따라 "그만"을 명령하고 정좌한 자세로 되돌아간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앉혀서 끝낸다("그만"명령에 애견이 바로 양다리를 땅에 대고 반응 동작을 하지 않는 것도 감점이 된다)

29) 갖추어서 걷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적당한 크기의 임의의 물품을 애견에게 갖추게 한 다음, 끈 없이 걷기 행진하여 약 10m 행진 후

오른쪽 측 회전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으로부터 물품을 명하고 오른손에 물품을 들고 직립자세로 절도를 갖게 한 다음 끝낸다.

30) 잠자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복와 혹은 정좌 자세로 대면하여 직립한 후, 애견에게 “잠자”를 명한다. 애견은 사지를 뻗는 듯한 모습으로 뺨을 땅에 댄 자세로 약 10초간 후 지시에 따라 애견을 일어나게 하고, 지시에 따라 애견을 앉혀서 끝낸다.

31) 롤링(오른쪽 뒹굴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복와시킨 다음, 서로 마주보고 직면한 후 애견에게 오른쪽 뒹굴기를 명령하고, 3회전을 시킨다. 오른쪽 회전 종료 후 애견을 일으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지도사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여 명령을 내리고 뒹구는 모습을 한 번 사용한다.

32) 롤링(왼쪽 뒹굴기)

“31)”의 요령에 따라 왼쪽 뒹굴기를 시킨다.

33) 포복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앞드리게 하고, 전방 약 5m(소형견은 3m)의 위치에 직면 직립하고, 지시에 따라 애견에게 포복을 명령하고 애견이 지도사의 발밑까지 오면 애견을 일어나게 한 다음 지시에 따라 애견을 앉히고 끝낸다.

34) 소리 내어 찾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과 마주 보고 일단 직립하여 절도를 갖게 한 다음 애견을 정좌시킨 채로 3마디(목소리)만 짚게 한다. 3번 소리 내어 지으면 정지시킨다. 쓸데없이 짚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목소리 부호는 짚게 할 때 1회 사용할 수 있다.

35) 서서 걷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닿지 않고 뒷다리 2개로 세우고 지도사가 애견과 함께 중단하지 말고 전진한다.

애견이 약 5m 전진하면 지시에 따라 정지시키고, 지도사는 애견의 앞다리가 땅에 닿게 하고 앉혀서 끝낸다.

36) 뒤로 걷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의 뒷다리를 들어 뒤로 걷게 한 다음 애견에 닿지 말고 함께 걸으며, 애견이 약 3m 걸으면 정지시키고 지도사는 애견의 뒷다리가 땅에 닿게 하여 앉힌다.

37) 백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과 마주 보고 앉아서 “백”을 명령하여 애견만을 후퇴시킨다. 애견이 약 5m 후퇴하면 지시에 따라 정지시키고 지도사는 애견을 부른다. 애견은 직접 앉히던가 또는 일단 대면 정좌한 후 앉혀서 끝낸다.

38) 서서 백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과 마주 보고 일단 정좌시킨 다음, 애견에 닿지 않은 채 다리 2개로 서게 한 애견을 후퇴시키면서 함께 걷는다. 애견이 약 3m 후퇴하면 지시에 따라 정지시키고, 지도사는 애견의 앞다리를 땅에 닿게 하여 앉힌다.

39) 전진 및 방향전환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만을 약 10m 전방으로 직진시켜서 정지시킨다.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지시에 따라 대략 직각으로 왼쪽 방향에 10m 애견을 이동시킨 정지 후, 중심에서 계속 물러가면서 오른쪽 10m 애견을 이동시킨 다음 정지 후,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서 정지시킨 후, 지시에 따라 애견을 부른다. 애견은 직접 앉히던가 또는 일단 마주 보고 정좌한 후 앉혀서 끝낸다.

40) 공 굴리기 (위로 올라가서 뒹구는 것 . 원통모양 등을 포함)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이 올라갈 기물을 손으로 눌러 애견에게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애견은 신속하게 올라가고, 지도사는 손을 떼고 기물에서 약간 떨어져서 애견이 자력으로 기물을 회전시켜서 3m, 공 형태로 균형을 갖고 정지시키고 약 10초 간 경과 후 지시에 따라 지도사가 기물을 누르면서 내려올 것을 명령한 후, 지시에 따라 앉힌다.

(동물 애호의 입장에서 보아 불유쾌함을 갈러리들이 느껴서는 안된다)

41) 줄넘기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과 마주 보고 이동시켜 줄넘기가 가능한 임의의 위치에 일단 직립한 다음 개시한다. 규칙 바르게(리드미컬)하게 행한다. 연속 5회 행한 다음 지시에 따라 정지하고, 지도수는 애견을 정지시켜 지시에 따라 앉힌 다음 끝낸다.

(애견이 뒹 때, 지도수의 몸 등에 접촉 또는 닿게 되면 감점의 대상이 된다)

42) 심부름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전방 약 10m의 지점에서 마주 보고 서 있는 조수에게, 바구니, 가방, 목욕통 등의 물품에게 애견에게 건네주게 한다. 애견은 조수에게 물품을 건네받은 채로 명령받는 일 없이 자주적으로

애건을 직접 앉던가, 도는 일단 마주 앉는다. 지시에 따라 조수가 다시 애건에게 그 물품을 갖게 하고, 지도사에게 가게 한다. 지도사에게 온 애건은 명령 없이 지도사의 옆에 앉던가, 또는 마주 보고 앉는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물품을 명령하여 집게하고, 마주 보고 앉아 있던 애건은 앉아서 끝낸다.

(애건에게 소리 내어 명령하는 한편 한쪽에서의 유도 . 부르는 것은 감점이 된다)

43) 집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과 직립한 체로 전방 약 10m의 지점에 설치한 건사 . 계기 등으로 애건에게 '집'을 명령한다.

애건은 부를 때까지 자주적으로 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지도사가 기다려 등의 목소리 부호를 사용하여 애건을 유도 . 제어해서는 아니 되며 감점이 된다)

애건은 집으로 들어간 다음 약 10초 후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을 부르고 애건은 직접 정좌하던가 또는 일단 마주 보고 정좌한 후 앉아서 끝낸다.

44) 안김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과 임의의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지시에 따라 안김을 명하고 애건을 안으면 직립하여 절도를 지킨 채 약 5초 후 지시에 따라 애건을 안전하게 내려놓고 지시하여 앉혀서 끝낸다.

45) 엮기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과 임의의 위치에서 애건을 세워서, 애건이 뛰어넘을 수 있는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엮히도록 명령한다. 애건이 뛸 수 있도록 무릎을 뻗어서 안전하게 착지하게 한다. 엮은 다음 약 5초 후 지시에 따라 애건을 안전하게 내린 다음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46) 다리 꼬고 걷기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다리를 꼬고 걷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걷게 하다. "꼬기" 부호는 출발 1회만으로 한다. 약 5m 걸은 지점에서 오른쪽 다리 회전하게 하여 앉힌다.

47) 8자 걸음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양발을 벌리고 서서 애건에게 8자형으로 다리를 꼰 것을 명한다. 3회 연속하여 행하며, 종료 후 지도사는 바로 직립하고 앉혀서 끝낸다. "꼬기" 부호는 개시 시 1회만으로 한다.

48) 높이뛰기(편도)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을 대기시키고 임의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뿔 막대기를 심사위원을 향하여 수평하게 규정 높이로 들어 올리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뛰어넘을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49) 높이뛰기 (왕복)

지도사는 48)의 요령으로 왕복으로 시킨 후 애건에게 기다려라 명하고 정지 지시를 내리고, 지도사는 애건에게 뛰기를 명한 후 기다려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돌아가서 지시에 따라 앉힌 다음 끝낸다.

50) 멀리뛰기(편도)

애건을 멀리뛰기 앞 임의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뿔 것을 명하고 애건이 뛰면 기다려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돌아가서 지시에 따라 앉힌 다음 끝낸다.

51) 멀리뛰기(왕복)

애건을 멀리뛰기 앞 임의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뿔 것을 명하고 애건이 뛰면 기다려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왕복 멀리뛰기를 명령, 지시에 따른 후 앉힌 다음 끝낸다.

52) 원 뛰기(편도)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을 대기시키고 임의의 보조 거리를 유지한 위치에서 규정 높이로 들어올리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뛰어넘을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53) 원 뛰기(왕복)

지도사는 52)의 요령으로 왕복 뛰기를 한 후 애건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왕복할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54) 팔 뛰기(편도)

애건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을 대기시키고 임의의 보조 거리를 유지한 위치에서 팔을 수평으로 규정 높이로 확보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며,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뛰어넘을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55) 팔 뛰기(왕복)

지도사는 54)의 요령으로 왕복 뛰기를 한 후 애견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왕복할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56) 다리 뛰기(편도)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대기시키고 임의의 보조 거리를 유지한 위치에서 규정 높이로 한쪽 발을 올린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뛰어넘을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57) 다리 뛰기(왕복)

지도사는 "56)"의 요령으로 왕복 뛰기를 한 후 애견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왕복할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58) 키 뛰기(편도)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대기시키고 임의의 보조 거리를 유지한 위치에서 키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자세를 취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뛰어넘을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59) 키 뛰기(왕복)

지도사는 "58)"의 요령으로 왕복 뛰기를 한 후 애견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왕복할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60) 팔찌 뛰기(편도)

애견을 소정의 위치에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대기시키고 임의의 보조 거리를 유지한 위치에서 양손으로 팔찌를 만든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뛰어넘을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61) 팔찌 뛰기(왕복)

지도사는 "60)"의 요령으로 왕복 뛰기를 한 후 애견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왕복할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62) 벽 올라넘기(편도)

지도사는 애견이 뛰어넘을 수 있는 임의의 보조 거리를 유지하며 판벽 앞에 애견을 정좌시킨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뛰어넘을 것을 명령, 뛰어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애견의 원래 위치로 가서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직립 또는 경사진 판벽을 이용하며 높이는 소형견 80cm, 중형견 120cm, 대형견은 150cm 이상으로 하며 타고 올라가서 넘게 한다)

63) 벽 올라 넘기(왕복)

지도사는 "62)"의 요령으로 왕복 넘기를 한 후 애견에게 기다려를 명령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왕복할 것을 명령, 넘은 후 기다려라 명하여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64) 각종 연속 왕복 장애물 넘기

동일 또는 다른 종류의 장애를 임의의 거리를 두고 배치하며, 하나씩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넘게 하는 것이다. 지도사는 애견이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임의의 거리를 유지한 위치에 애견을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뛰어넘을 것을 명한다. 애견은 자주적으로 왕복으로 뛰어넘으며 지시에 따라 지도사의 다리 쪽에 앉힌 후 끝낸다.

65) 물건 소지를 포함한 왕복장애물 넘기

지도사는 애견이 뛰어넘기에 필요한 임의의 거리를 두고 장애물 앞 위치에서 애견에게 앉으라고 명령한다. 지시에 따라 장애물 임의의 지점에 물건을 던져 주고 지시에 따라 뛰어넘게 한다. 애견은 직접 정좌 하던가 또는 일단 마주 보고 정좌한다. 그 후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받아서 일단 마주보고 앉았다가 앉는 것으로 끝낸다.

66) 사다리 올라가기와 미끄럼틀 내려오기

약 150cm 이상의 높이에서 안정된 위험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한다. 사다리 앞에 애견을 앉힌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명령하고, 올라가면 일시 정지시키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미끄럼대를 내려오도록 명령하고 착지 후 앉혀서 끝낸다.

67) 다리 건너기 (편도)

지름 30cm 위치의 둥근 막대를 걸쳐놓고 길이 2m 이상을 건너게 하던가, 폭 30cm 길이 2m 이상, 높이 1m 이상의 다리에서 양측에 경사진 승강판을 이용하여 애견을 건너게 하는 것이다. 다리로 올라가는 위치 앞에서 애견을 정좌시킨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건너가도록 명령한다. 애견은 단독으로 건넌다. 지도사는 착지한 애견을 정지시킨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에게 가서 지시에 따라 앉혀서 끝낸다.

68) 다리 건너기(왕복)

지도사는 “67)”의 요령으로 애견이 왕복 다리 승강판을 내려오면 지도사는 애견에게 일단 정지를 명한 다음 왕복 다리 건너기를 명령, 다리를 건넌 후 지도사는 직립하고 애견을 앉혀서 끝낸다.

69) 자취(自臭) 물품 선별

지도사의 체취가 묻은 물품(옷 . 나무 조각)을 본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형질의 유혹 물품(심사위원 . 스튜어드의 체취가 베인 물품) 4개 모두 출발점에서 10m 떨어진 전방의 선별대 위에 지도사 모르게 배치하는데, 지도사는 개와 함께 선별대의 등을 지고 있게 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가 애견과 함께 오른쪽으로 돌은 다음, 애견에게 자기의 체취를 맡게 한 후 보낸다.

애견이 갖고 온다면 직접 앉히던가 또는 일단 마주보고 앉는다. 지도사는 애견에게 명령하여 물품을 건네받고, 일단 마주보고 앉았던 애견은 다시 앉게 한 다음, 애견에게 받은 물품을 스튜어드에게 건네주어 판정을 받고 끝낸다(1회만 . 소지 시간은 애견을 보낸 후 1분간 . 1분경과 후는 실격)

70) 타취(他臭) 물품 선별

“69)”의 요령에 따라 행하는데, 진짜 물품과 유혹 물품은 심사위원과 스튜어드 어느 쪽의 체취를 각각 묻힌 물품을 이용한다(1회만)

71) 족적 추급(自臭 끈 부착)

소정의 장소에 애견을 대기시키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직선으로 약 50보 족적을 남기며, 종점에 1개의 자기의 체취가 베인 물품을 둔다. 발자취를 남긴 후 바로 추급을 개시하고, 지도사는 10m 수색망을 애견을 데리고 뒤에서 뒤따라가며 애견이 물품을 발견하면 앞드리게 하던가, 또는 갖고 오게 한다. 앞드린 경우는 지도사가 애견 곁으로 가서 물품을 줍고 애견을 앉히며, 갖고 온 경우는 애견에게 마주 앉히던가 직접 앉혀서 물품을 건네받는다. 어떤 경우라도 최종 물품은 심사위원에게 제시한다. 마주보고 앉아 있는 애견을 바로 앉히고 끝낸다.

72) 물품 감수(끈 부착)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견을 소정의 장소에 계류하여 앞드리게 하고, 구두모양을 감수하게 하여 10m 떨어진 곳에 지도사가 숨긴다. 지시에 따라 가짜 범인 1명이 탈취와 위협을 시도한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신발을 벗고 애견의 계류를

풀어주고 바로 앉힌 다음 끝낸다.

73) 금족을 포효

소정의 장소에서 지도사는 애건을 앉히고,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전방 약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숨어 있는 가짜 범인에게 애건을 보낸다. 애건은 가짜 범인의 발견과 동시에 금족 포효를 약 10초 가량 소리를 낸다.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중지를 명령하고 애건이 본래대로 돌아가 바로 앉은 다음 끝낸다.

74) 습격

소정의 장소에 지도수는 애건을 앉히고, 지시에 따라 전방 약 10m의 가짜 범인에 대해 공격을 명령한다. 애건이 완전히 포효한다면 지시에 따라 애건에게 중지를 명령하고, 앉힌 다음 끝낸다.

75) 범인 호송

지도사는 가짜 범인의 뒤 또는 우측에 애건을 앉히고, 지시에 따라 애건과 함께 범인을 호송하고, 약 20m 지점에서 범인은 틈을 보고 도망, 애건을 명령 없이 쫓아가 체포한다. 포효하면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중지를 명령한 다음 대기시키고, 범인을 심사위원에게 건넨 다음 애건에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 앉힌 다음 끝낸다.

76) 범인 감시

가짜 범인의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지도수는 애건을 앉히고, 지시에 따라 애건을 단독으로 앉히고 혹은 옆드려 있게 하여 범인 감시를 명령하고, 지도사는 약 10m 떨어진 장소에 숨긴다. 약간 시간 경과 후에 범인은 틈을 보아 도망간다. 애건은 명령 없이 바로 체포하여 완전히 포효한다면 지시에 따라 지도사는 애건에게 중지를 명령하고, 대기시키며, 범인을 심사위원에게 인도한 다음 애건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앉힌 다음 끝낸다.

2. 전항의 과목 이외에도 담당 위원 시험위원 및 심사위원장이 인정한 것이면 1과목으로 한다.

제3장 경비견 시험과목

제7조 CD(경비견 훈련시험)의 시험과목과 그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GDI(경비견 훈련시험 I) 150점

1) 취각작업 1과 2 중 하나 선택 30점

(1) 족적 추급

2굴절 약 100보 지도사의 추적으로 종점에 물품 1개를 놓고, 인적 5분 후에 10m의 끈을 묶어서 행한다.

(2) 물품 선별 (自臭)

10m 전방의 선별대 위의 지도사의 체취가 베인 물품을 1개, 기타는 동형 동질 무취의 유혹물품 4개 중에서 선별하게 한다. 3회 실시하고 본 물품의 위치를 지도사가 모르게 배치한다. 3회 성공은 25점, 2회 성공은 20점, 1회 성공은 10점, 선별 태도를 5점으로 한다.

2) 복종 작업 120점

(1) 끈 부착 행진 (10)

ㄷ자형으로 갈 때는 보통 걸음, 되돌아올 때는 속보.

(2) 끈 부착 행진 (10)

ㄷ자형으로 갈 때는 보통 걸음, 되돌아올 때는 속보.

(3) 정좌시 입지 (10)

(4) 정좌시 복와 (10)

(5) 가부좌 및 부름 (10)

(6) 물품 소지 (20)

150g의 아령을 5m 이상 전방에 던진다.

(7) 장애물 뛰어넘기 (10)

높이 60cm의 널빤지 장애 뛰어넘기 편도.

(8) 휴지 3분간 (10)

(9) 총성 확고성 (20)

끈 부착 입지로 총성 2발.

(10) 끈 부착견 체험사 및 일반 태도 (10)

2. GDⅡ(경비견 훈련시험Ⅱ) 200점
- 1) 취각작업 1과 2 중 하나 선택 50점
- (1) 족적 추급
타인의 족적으로 2굴절 약 150보로 한다. 물품은 중간과 종점에 배치하여 인적 5분 후에 추급 개시. 지도사는 종점의 20보 앞에서 끈을 풀어놓는다.
- (2) 물품 선별(自臭)
10m 전방의 선별대 위의 지도사의 체취가 베인 물품을 1개, 기타는 동형 동질 무취의 유혹물품 4개 중에서 선별하게 한다. 3회 실시하고 본 물품의 위치를 지도사가 모르게 배치한다. 3회 성공은 25점, 2회 성공은 20점, 1회 성공은 10점, 선별 태도를 5점으로 한다.
- 2) 복종 작업 120점
- (1) 끈 없이 행진 (10)
- (2) 보통 걸음 행진 중의 입지 (10)
- (3) 보통 걸음 행진 중의 복와 (10)
- (4) 보통 걸음 행진중의 정좌 및 부름 (10)
- (5) 물품 소지 (10)
650g의 아령을 8m 이상 전방에 던진다.
- (6) 왕복장애물 넘기 (10)
높이 80cm
- (7) 전진 (10)
20m, 정지 후 부름
- (8) 휴지 4분간 (10)
- (9) 총성 확고성 (10)
끈 부착 입지로 총성 2발
- (10) 끈 부착견 체험사 및 일반 태도 (10)
GD I 에서 엄밀하게 행한다.
- 3) 방위작업 50점
- (1) 대위(代位) 금족 포효 (20)
10m 전방 차폐 아래의 범인에게 약 10초 금족 포효한다.
- (2) 습격 및 중지 (30)
가짜 범인에 대해 포효와 중지, 끈을 달려서 좋다

3. GDⅢ(경비견 훈련시험Ⅱ) 200점
- 1) 취각작업 1과 2 중 하나 선택 50점
- (1) 족적 추급
미지인의 족적 300보. 굴절은 3회 이상으로 하고, 물품은 중간에 2개, 종점에 1개, 인적 10분 후 추급 개시, 종점 30보 앞에서 끈을 놓는다.
- (2) 물품 선별
10m 전방의 선별대 위에 타인의 물품을 선별하고, 유혹물품은 4인으로 1개씩 채취가 배인 물품을 놓고 3회 실시. 채점은 GDⅡ와 동일.
- 2) 복종 작업 90점
- (1) 끈 없이 행진 (10)
- (2) 보통 걸음 행진 중의 입지 (10)
- (3) 보통 걸음 행진 중의 복와 (10)
- (4) 보통 걸음 행진중의 정좌 및 부름 (10)
- (5) 물품 소지 (10)
1kg의 아령을 10m 이상 전방에 던진다.
- (6) 왕복장애물 넘기 (10)
높이 1m
- (7) 전진 (10)
30m, 정지 후 부름
- (8) 휴지 5분간 (10)
- 3) 방위작업 60점
- (1) 패트룰 (5)
지도사보다 좌우 20m씩 떨어진 차폐 아래 2개소 검색.
- (2) 대위(代位) 금족 포효 (10)
10m 전방 차폐 아래의 범인에게 약 10초 금족 포효한다.
- (3) 가짜 범인에게 습격 (10)
신체검사 중 범인이 갑자기 저항하고 애견은 명령 없이 범인을 포효.
- (4) 중지 포효의 중지 (10)
- (5) 추격 체포 (10)
애견에게 옆드려 앉으라고 명령, 범인을 20m 연행한다. 범인은 지도사를 넘어뜨리고 도망, 애견은 다시 추격 체포한다.
- (6) 중지 체포 중지 (10)
- (7) 호송 (5)
범인의 후방 3m에서 호송 심사위원에게 넘겨준다.

제4장 단체경기 과목

제8조 (단체경기) 단체경기 과목의 실시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사 5명과 애견 5마리 이상을 1팀으로 편성한다.
2. 경기시간은 마리 수에 관계없이 10분 이내로 한다.
3. 다음 과목을 반드시 경기내용 속에 편입하여야 한다.
 - 1) 끈 부착 행진.
 - 2) 끈 없이 행진.
 - 3) 정좌 및 부름.
 - 4) 복와.
 - 5) 끈 없이 입지.
4. 2번 달아난 겨우는 연기 중지로 한다.

제5장 복종 작업 경기과목

제9조 (복종 작업) 복종 작업의 규정과목과 그 실시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복종 작업 초등과(규정 5과목)
 - 1) 끈 부착 행진
(ㄷ자형으로 30m 코스를 행진하며 갈 때는 보통걸음, 돌아올 때는 속보로 한다)
 - 2) 끈 없이 행진(가와 같은 요령의 작업을 끈 없이 행한다)
 - 3) 정좌 및 부름(10m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약 3초 후에 지시에 따라 부른다)
 - 4) 행진 및 복와(보통 걸음으로 5m 진행 앉으라고 명령, 다시 10m 진행하여 애견에게 체위 지시한다. 지도사는 정지 명령해도 좋다)
 - 5) 행진 및 입지 (라와 같은 요령의 작업을 입지에서 행한다)
2. 복종 작업 중등과(규정 7항목)
 - 1) 끈 부착 행진
(ㄷ자형으로 30m 코스를 행진하며 갈 때는 보통걸음, 돌아올 때는 속보로 한다)
 - 2) 끈 없이 행진(가와 같은 요령의 작업을 끈 없이 행한다)
 - 3) 정좌 및 부름(10m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약 3초 후에 지시에 따라 부른다)
 - 4) 행진중의 복와(보통 걸음으로 진행하는 도중 지도사는 걸음걸이를 바꾸지 않고 5m 지점에서 앉으라고 명령, 다시 10m 진행하여 애견에게 체위 지시한다)
 - 5) 행진 및 입지(라와 같은 요령의 작업을 입지에서 행한다)
 - 6) 장애물 뛰어넘기(장애물 편도 뛰어넘기)
 - 7) 물건 소지(아령을 사용하여 뛰어가서 물품 수취 지시에 따라 행한다)

제6장 공통의 실시요령

제10조 (작업 전의 신고) 훈련시험 . 경기대회 때에 각 지도사는 작업개시 전 훈련시험 위원 및 심사위원(혹은 스텐더드)에게 경기과목 . 견명 . 지도사명, 경기대회에서는 출전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본동작) 각 작업은 애견을 앉게 하고, 지시에 따라 시작하며 그 각 작업 종료 때마다 다시 앉게 하여 끝낸다.

제12조 (끈 부착 작업) 모든 과목에서 '끈 부착 작업을 명기하고 있는 과목' 혹은 'CD' 이외는 모두 끈 부착하지 않고 행할 것.

제13조 (장애물 높이뛰기) 각종 높이뛰기 작업의 높이는 소형견은 대략 몸의 높이로 하고, 중형견은 40cm를 상한, 대형견은 70cm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4조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훈련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4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2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제5조 1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어질리티 경기대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어질리티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어질리티 개최

제2조 (개최자 . 개최횟수 . 개최시기) 어질리티 경기대회는 본 연맹 주최로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단, 개최를 희망하는 본 연맹 산하 조직은 본 연맹의 사전 승인 하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KKF 내셔널 어질리티 경기대회만 가능하다.

제3조 (개최의 신청)

1. 어질리티 경기대회 개최는 본 연맹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산하조직 주관 행사의 경우 본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연맹 산하 조직이 어질리티 경기대회 개최를 희망할 경우 개최 희망일 기준 최소 6개월 전에 '행사 개최 신청 요청서'를 본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개최의 승인) 어질리티 경기대회 개최는 총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5조 (개최의 공시) 본 연맹은 어질리티 경기대회의 명칭 . 개최 일시 . 개최 장소 . 참가 신청 방법 . 신청 마감 . 기타 확인사항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시한다.

제6조 (심사위원 선임 . 위촉) 어질리티 경기대회의 심사위원은 총재가 위촉한다.

제7조 (심사위원 초청) 본 연맹 산하조직이 어질리티 경기대회에서 해외 심사위원 초청할 경우, 해당 조직은 '해외 심사위원 초청 신청서'를 '행사개최 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본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보고서류) 산하조직은 어질리티 경기대회 또는 클럽 어질리티 경기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보조 인원의 비용) 대회 운영 보조인원의 일당 등 경비 일체는 주최 또는 주관 측이 부담한다.

제3장 출진의 신청

제10조 (출진 신청 및 비용의 납부)

1. 어질리티 경기대회 출진 신청은 출진 마감일까지 주최 측이 공지한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출진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어질리티 경기대회의 출진료는 본 연맹 요금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출진 신청 마감 및 환불)

1. 출진 신청은 개최일 기준 최소 14일전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 후 출진 및 당일 출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출진비의 환불은 대회 개최 3일 전까지만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이 후 환불은 불가하며, 출진비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4장 어질리티

제12조 (대회의 종류) 어질리티 경기대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경기대회
FCI에 의해 공인된 공식 어질리티 테스트로 FCI 국제 어질리티 규정에 의해 행한다.
'FCI Agility Certificate' 및 'CACIAg' 증서를 획득할 수 있다.
2. KKF 내셔널 어질리티 경기대회
KKF 어질리티 규정에 의해 행하며, 채점제도 및 클래스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출진건의 자격)

1.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경기대회
FCI가 인정한 혈통서(웨이팅 리스트 포함)를 갖고 있는 18개월 1일 이상의 모든 견종이 참가 가능하다. 단, 참가견은 색인이나 마이크로칩 시술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KKF 내셔널 어질리티 경기대회

혈통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18개월 이상의 모든 견이 참가 가능하다. 단, 참가견은 색인이나 마이크로칩 시술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어질리티 대회에는 임신 중인 견, 약물 복용 견, 심한 병중인 견은 참가가 불가하며, 공격적 성향이 있는 견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제14조 (경기 클래스 . 참가 조건 . 경기 내용)

1. 경기 클래스 및 참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비기너 (BEGINNER)

(1) 비기너 I·II·III : 모든 견이 참가 가능하다.

2) 노비스 (NOVICE)

(1) 노비스 I·II·III : 모든 견이 참가 가능하다.

3) 비기너와 노비스 클래스의 모든 경기는 중복 참가가 가능하다. 단, 시상은 가장 높은 성적, 높은 클래스 순으로 적용하여 수상되며, 중복 수상 되지 않는다.

4) 점핑 (JUMPING)

(1) 점핑 I

가. KKF 내셔널 : 18개월 1일 이상 모든 견이 참가 가능하다. 단, 어질리티II 클래스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은 어질리티I 과 점핑 I 클래스는 번외 경기로만 참가 가능하다. 단, 세계 어질리티 선수권 대회(AWC) 등 출진을 위한 상력은 혈통 등록 이후의 상력만 적용되며, 이전 상력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나. FCI 인터내셔널 : FCI가 인정한 혈통서를 가진 18개월 1일 이상의 모든 견종이 참가 가능하다. 단, 어질리티II 클래스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은 어질리티I 과 점핑 I 클래스는 번외 경기로만 참가 가능하다.

(2) 점핑II

가. KKF 내셔널 : KKF 내셔널 어질리티 I 경기에서 'EXCELLENT' 성적을 3회 획득한 견 또는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II 클래스의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이 참가 가능하다. 단, 어질리티III 클래스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은 어질리티II와 점핑II 클래스는 번외 경기로만 참가 가능하고, 세계 어질리티 선수권 대회(AWC) 등 출진을 위한 상력은 혈통 등록 이후의 상력만 적용되며, 이전 상력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나. FCI 인터내셔널 : FCI AGILITY CERTIFICATE를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I 경기에서 2명의 다른 심사위원에게 'EXCELLENT' 등급을 3회 획득한 견에게 수여) 획득한 견 또는 KKF 내셔널 어질리티II 클래스의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이 참가 가능하다. 단, 어질리티III 클래스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은 어질리티II와 점핑II 클래스는 번외 경기로만 참가 가능

(3) 점핑Ⅲ

가. KKF 내셔널 : KKF 내셔널 어질리티Ⅱ 경기에서 TOP 1위~3위 성적을 3번 획득한 견 또는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Ⅲ 클래스의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이 참가 가능하다.

나. FCI 인터내셔널 :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Ⅱ 경기에서 TOP 1위~3위 성적을 3번 획득한 견 또는 KKF 내셔널 어질리티Ⅲ 클래스의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이 참가 가능하다.

5) 어질리티 (AGILITY)

(1) 어질리티 I

가. KKF 내셔널 : 18개월 1일 이상 모든 견이 참가 가능하다. 단, 어질리티Ⅱ 클래스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은 어질리티 I 과 점핑 I 클래스는 번외 경기로만 참가 가능하다. 단, 세계 어질리티 선수권 대회(AWC) 등 출진을 위한 상력은 혈통 등록 이후의 상력만 적용되며, 이전 상력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나. FCI 인터내셔널 : FCI가 인정한 혈통서를 가진 18개월 1일 이상의 모든 견종이 참가 가능하다. 단, 어질리티Ⅱ 클래스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은 어질리티 I 과 점핑 I 클래스는 번외 경기로만 참가 가능하다.

(2) 어질리티Ⅱ

가. KKF 내셔널 : KKF 내셔널 어질리티 I 경기에서 'EXCELLENT' 성적을 3회 획득한 견 또는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Ⅱ 클래스의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이 참가 가능하다. 단, 어질리티Ⅲ 클래스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은 어질리티Ⅱ와 점핑Ⅱ 클래스는 번외 경기로만 참가 가능하고, 세계 어질리티 선수권 대회(AWC) 등 출진을 위한 상력은 혈통 등록 이후의 상력만 적용되며, 이전 상력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나. FCI 인터내셔널 : FCI AGILITY CERTIFICATE를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I 경기에서 2명의 다른 심사위원에게 'EXCELLENT' 등급을 3회 획득한 견에게 수여) 획득한 견 또는 KKF 내셔널 어질리티Ⅱ 클래스의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이 참가 가능하다. 단, 어질리티Ⅲ 클래스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은 어질리티Ⅱ와 점핑Ⅱ 클래스는 번외 경기로만 참가 가능

(3) 어질리티Ⅲ

가. KKF 내셔널 : KKF 내셔널 어질리티Ⅱ 경기에서 TOP 1위~3위 성적을 3번 획득한 견 또는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Ⅲ 클래스의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이 참가 가능하다.

나. FCI 인터내셔널 :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Ⅱ 경기에서 TOP 1위~3위 성적을 3번 획득한 견 또는 KKF 내셔널 어질리티Ⅲ 클래스의 출진 자격을 획득한 견이 참가 가능하다.

2. 각 클래스의 경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전 항 1)~2) 은 KKF 내셔널 어질리티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다.
 - 2) 전 항 4)~5) 는 FCI 어질리티 규정을 준용하여 행한다.
3. 어질리티 경기대회의 클래스 운영은 주최 측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제15조 (체고에 따른 분류) 어질리티 경기대회는 참가견의 체고에 따라 아래의 체급으로 분류 된다.

1. 스몰 S(small) : 참가견의 체고가 35cm 미만일 경우.
2. 미디엄 M(Medium) : 참가견의 체고가 35cm~ 43cm 미만일 경우.
3. 라지 L(Large) : 참가견의 체고가 43cm 이상일 경우.
4. 비기너, 노비스 클래스의 경우 타이니(tiny) 체급을 분류 하여 운영할 수 있다.
타이니(tiny) : 참가견의 체고가 28cm 미만일 경우.

제16조 (코스 설정)

1. 코스에는 가능한 여러 타입의 장애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설치되는 방법은 난이도와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개는 미리 정해진 시간(MCT) 이내에 코스를 완주해야 하고 장애물을 올바른 순서로 넘어야 한다.
2. 코스 디자인은 전적으로 어질리티 심사위원의 구상에 달려 있으며, 심사위원은 코스를 검사하고 정확하게 측정된 코스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참가자는 경기 시작 전에 참가견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코스를 걸어볼 수 있다.
4. 스탠다드 코스 타임(SCT)의 설정
내셔널 경기에서 SCT는 코스 길이(미터 단위)를 선택한 속도(m/s 단위)로 나누어 SCT를 설정할 수 있다. 선택한 속도는 경기 기준, 코스의 난이도, 개가 뛰어야 하는 표면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설정한다.
단, 세계 어질리티 경기(AWC, EO, JAEO, CACIAg 포함)에서 SCT는 코스 실점이 가장 적은 개 중 가장 빠른 개의 시간에 15%를 더하고 1/100초로 반올림하여 설정하며, 국내 경기에서의 도입 여부는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5. 최대 코스 타임(MCT)의 설정
MCT는 코스의 길이를 어질리티 클래스에서는 2.0m/s로, 점핑 클래스에서는 2.5m/s로 나누어 결정한다.

제17조 (경기의 진행)

1. 참가자는 출진견의 리드줄이나 목걸이를 벗긴 후 출발선 뒤에 대기 시킨다.
2. 참가자는 코스 중 어느 곳에 있어도 무관하며, 참가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3.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신호 후에 출진건을 출발 시켜야 한다.
4. 타임은 출진건이 출발선을 넘으면 시작되고 참가자는 코스 진행 동안 여러 형태의 명령과 신호가 허용 된다.
5. 참가자는 출진건이나 장애물을 건드려서는 안되고, 장애물을 직접 넘거나 지나갈 수 없다.
6. 참가자는 출진건이 올바른 순서로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7. 출진건이 종료선을 통과하면 타임과 심사는 종료 된다.

제18조 (실점) 모든 실책과 거부는 횡수 당 5점의 코스 실점으로 계산되며, SCT를 초과할 경우 1초당 1점의 시간 실점을 받는다.

1. 총 실점은 코스실점과 시간실점을 합한 값으로 한다.
2. 총 실점이 같은 경우 빠른(코스 시간이 적은) 건이 우선순위가 된다.
3. 총 실점과 코스 시간이 모두 같다면 심사위원은 동점 참가건들의 재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실점에 따른 등급) 어질리티 경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이 주어진다.

- | | | | |
|----|------------|------------|------------------|
| 1. | 0 ~ 5.99 | 총실점 | EXCELLENT |
| 2. | 6 ~ 15.99 | 총실점 | VERY GOOD |
| 3. | 16 ~ 25.99 | 총실점 | GOOD |
| | | 총실점 26점 이상 | NO QUALIFICATION |

제20조 (실격) 실격은 출진건의 출진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심사위원은 참가자에게 실격 여부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심사위원으로부터 실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심사위원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참가자와 출진건은 가능한 빨리 링을 나가야 한다.

실격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2. 거친 핸들링
3. 최대 코스 타임(MCT) 초과
4. 거부 3회 (refusals)
5. 장애물 연속이탈 및 코스 망각
6. 잘못된 방향으로의 장애물 통과
7. 참가자가 출진건이나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건드릴 경우
8. 참가자가 직접 장애물 밑을 지나가거나 넘었을 경우

9. 참가자가 별도로 초시계를 사용할 경우
10. 참가자 손에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1. 출발선을 통과한 후에 출진건을 교체할 경우
12. 출진건이 목걸이(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13. 코스에서 멈췄을 경우 (심사위원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
14. 출진건의 규칙 위반, 링 이탈 또는 통제 불능 상태일 때
15. 출진건이 공격적 성향을 보일 경우
16. 심사위원이 출발 신호 전 출발하는 경우
17. 기타 심사위원이 인정한 경우

제21조 (불가항력조항)

1. 바람에 넘어진 장애물, 꼬여버린 플랫 터널 등 불가항력에 의해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은 시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장애물이 다시 설치되면 심사위원은 출진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2. 경기가 정지되기 전의 모든 실점은 계속 적용된다. 정지된 시점까지 다른 실점은 부여되지 않을 것이나 참가자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코스를 수행해야 한다. 추가적인 실점은 경기가 정지되었던 시점 이후부터 부여된다.

제22조 (증서의 교부)

1. FCI 어질리티 증서(FCI AGILITY CERTIFICATE)
 - 1)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I 경기에서 18개월 1일 이상의 출진건에게 주어지며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II 및 점핑 II 경기에 출진할 수 있는 자격과 혈통서 상에 FCI AGI 마스터(MST)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 2)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I 경기에서 2명의 다른 심사위원에게 'EXCELLENT'를 3회 획득한 견에게 수여된다.
2. CACIAG(Certificate of Aptitude to the International Agility Competitions)
 - 1) FCI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경기에서 18개월 1일 이상의 출진건에게 주어지며 FCI 어질리티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 2) 어질리티 II 또는 어질리티 III 경기의 각 체급(스몰S-미디엄M-라지L) 우승견에게 수여된다.
단, 어질리티 II의 경우는 어질리티 III 경기가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 3) CACIAG를 한번 획득했다고 해서 FCI 어질리티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3. R.CACIAG(Reserve Certificate of Aptitude to the International Agility Competitions)
 - 1) 어질리티 II 또는 어질리티 III 경기의 각 체급(스몰S-미디엄M-라지L) 준우승견에게 수

여된다.

단, 어질리티 Ⅱ의 경우는 어질리티 Ⅲ 경기가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 2) CACIAG를 획득한 출진건이 이미 FCI 어질리티 챔피언이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CACIAG 승인이 거부될 때에는 R.CACIAG을 획득한 출진건이 CACIAG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어질리티 챔피언 · 마스터

제23조 (어질리티 챔피언 자격의 종류) 어질리티 챔피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챔피언(INT.AG.CH)
2. 코리아 어질리티 챔피언(KOR.AG.CH)

제24조 (어질리티 챔피언 등록자격의 취득)

1. 인터내셔널 어질리티 챔피언(이하'INT.AG.CH'라 한다) 등록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애견에게 주어진다.
 - 1) 출진건은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2) 2개국에서 서로 다른 심사위원에게 2장의 CACIAG을 획득해야 한다.
 - 3) 두 번째 CACIAG는 첫 번째 CACIAG를 획득한 후 최소 1년 1일이 경과해야 한다.
2. 코리아 어질리티 챔피언(이하'KOR.AG.CH'라 한다) 등록 자격은 점핑Ⅱ 이상 또는 어질리티Ⅱ 이상 경기에서 'EXCELLENT' 성적을 4회 획득한 건은 '코리아 어질리티 챔피언' 등록 자격을 가진다.

제25조 (어질리티 챔피언 등록)

1. AG.CH 자격은 소유자가 본 연맹에 통지하여 AG.CH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맹에서는 신청건의 AG.CH자격이 충족한지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3. AG.CH 신청은 마지막 AG.CAC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신청 건 소유자는 신청 후 2주 이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 (어질리티 마스터의 종류와 등록)

1. 어질리티 마스터는 어질리티 클래스의 상위단계로 참가 조건이 충족 되었음을 의미하며, KKF 혈통서 상에 표기할 수 있다.
2. 어질리티 마스터의 종류 및 표기법은 아래 항과 같다.
 - 1) 어질리티 I 마스터 (AG I .MST)
 - 2) 어질리티Ⅱ 마스터 (AGⅡ.MST)

3. 어질리티 I 마스터는 어질리티 I 경기에서 2명의 다른 심사위원에게 'EXCELLENT' 등급을 3회 획득해야 하며,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 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 KKF 혈통서 상에 표기할 수 있다.
4. 어질리티II 마스터는 어질리티II 경기에서 TOP 1위~3위 성적을 3번 획득해야 하며,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 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 KKF 혈통서 상에 표기할 수 있다.
5. 어질리티 마스터 등록은 사무처에서 정한 신청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아래 항과 같다.
 - 1) 어질리티 마스터 표기 신청서
 - 2) 혈통서 원본
 - 3) 상력이 기재 된 어질리티 수첩
6. 어질리티 마스터는 KKF 혈통 등록이 완료된 이후 상기 3항~4항의 조건을 충족한 견에 한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상력의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제6장 경기대회장에 입장제한

제27조 (경기대회장에 입장제한) 본 연맹 및 주최측은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경기대회 회장의 규율, 평온을 깨트릴 우려가 있는 자의 경기대회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2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훈련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지정기관(업소) 설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지정기관(업소) 설치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지정기관(업소) 설치

제2조 (설치 목적) 본 연맹은 정관 목적의 원활한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견종 관련 전문기관 및 업소를 본 연맹 예하로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지정 범위) 견종 관련 전문 기관 및 업소의 지정 지역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애견미용학원, 훈련소, 동물병원, 애견센터, 번식장, 기타 애견 관련 업소 등이 해당된다.

제4조 (의무) 지정받은 기관 및 업소의 대표자는 본 연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연맹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구비서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및 업소의 대표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총재의 재가를 득하여야 한다.

1. 관할 교육청 인가증 사본 1부(학원에 해당)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인적사항 (이력서) 1부.
4. -삭 제-
5. 증명사진 2매(3×4)
6. 서약서 1통.

제6조 (현판설치 및 가입회비) 본 연맹 지정기관 및 업소로 승인받는 대표자는 연맹 평생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연맹 소정의 지정 현판을 설치하여야한다. 단, 지정 애견미용학원 및 지정 훈련소로 등록 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용은 본 연맹 요금규정에 의거한다.

제7조 (홍보) 지정된 기관 및 업소는 본 연맹의 모든 사업에 협조하고, 연맹홍보와 계몽을 활발히 하여 연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취소) 다음 행위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지정 사항에 대해 취소될 수 있다.

1.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지 않고 회원 및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2. 지정기관 등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편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3. 애견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연맹에 피해를 입혔을 때.
4. 본 연맹의 명예 또는 신뢰성의 실추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야기된 때.
5. 연맹 사무처의 사전 허가 없이 타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단, 인명구조, 동물매개치료 등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신고 의무) 지정기관 및 업소를 매매,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맹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문책과 동시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부칙

제10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년 9월 16일(제6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5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0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8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6조)

훈련소 인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훈련소 인정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 공인훈련소

제2조 (지정훈련소의 요건) 지정훈련소는 다음에 기재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훈련시험과목 . 훈련경기과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 . 경기과목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한쪽 다리로 끈을 달고 행진 및 끈 없이 한쪽 다리로 행진)이 있으며 동시에 그 설비가 있을 것.
2. 견사(犬舍)는 5마리 이상의 개를 각각 1마리마다 수용할 수 있을 것.
3. 견사의 배수는 적정하게 처리되는 동시에 견사내의 벽, 바닥은 위생상 양호할 것.
4. 모기 등 흡혈 곤충을 방지하는 대책을 행하고, 애견의 건강유지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5. 훈련시험의 관계자가 합의하여 적당한 설비가 있을 것.
6. 훈련소의 소장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자로, 훈련교사의 경험이 2년 이상일 것.

제3장 신청과 인정

제3조 (신청 자격) 지정훈련소의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제2장 2조의 각종별마다 요건을 충족할 것
2. 훈련소의 소장 또는 직원의 지도에 따라 훈련시험에 등록된 것이 신청 전 2년간 이상에 걸쳐서 매년 5마리 이상일 것.

제4조 (인정의 신청) 인정 신청은 지정기관 인정 신청서를 본 연맹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인정의 순서)

1. 총재는 신청이 있었던 훈련소에 대해 실시조사를 행하고, 훈련사위원회의 답신을 거쳐 인정한다.
2. 전항에서 실시조사를 행한 자는 총재가 지명한다.

제6조 (인정과 등록) 인정된 훈련소는 본 연맹에서 통지 후 10일 이내에 인정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7조

1. 지정훈련소의 인정은 수시로 하며 최초 지정훈련소 인정 시 지정기관 간판을 교부한다.
2. 지정훈련소로 인정된 훈련소는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4장 인정의 취소

제8조 (인정의 취소) 지정훈련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장 2조의 요건이 결격되었을 때.
2. 지정훈련소 및 훈련소 소장에게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이 경우 징계규정 해당자의 행위와 보유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인정 취소가 행해진다)
3. 인정 반납되었을 때.

제9조

1. 지정훈련소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 총재는 당해 훈련소에 통지한다.
2. 인정을 취소당한 훈련소는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0조 인정을 취소당한 훈련소는 본 연맹에서 부여받은 지정 훈련소인정서 및 공인 간판을 본 연맹에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신청

제11조 (재신청) 인정이 취소된 훈련소가 다시 지정 훈련소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도 모두 제3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2조 이 규정의 개폐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년 7월 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2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산학협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에 근거 산학협력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자격인증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과, 연맹의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 간에 전문지식 및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연맹과 학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에 공헌함과 동시에 산·학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쌍방간 발전 도모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산학협력 협정체결

제3조 (산학협력학교 선정) 산학협력 학교는 본 연맹의 사업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관련학과 개설학교를 우선으로 하여, 산학협력학교의 적절성 여부를 연맹 기술사업부에서 검토한 후, 그 대상을 본부 사무처에서 선정한다.

제4조 (절차) 애완동물 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중 본 연맹에 산학협력을 희망하는 대학은 본 연맹에 산학협력신청서 1부, 학교법인증명서 1부, 산학협력 협약서 2부를 정식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산학협력 위원회

제5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상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본 연맹 총재와 해당 대학의 학과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 1) 관련학과 교수 및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2) 애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
 - 3) 본 연맹 애견 미용사, 훈련사, 핸들러 교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4) 연맹 총재 또는 산학협력 해당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득 한자.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애견미용사, 훈련사, 핸들러, 교육과정 공동개발.
2.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학생의 현장 실습 및 취업에 관한 사항.
4. 관련 정보 교류 및 교재의 공동개발.
5. 기자재 공동 활용.
6. 기타 산학협동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1. 산학협력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산학협력위원회 간담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연맹 기술 사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 사업부에서는 관련내용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1. 위원회의 소집은 본 연맹 총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선임한다.
2. 간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연맹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하부조직)

1. 위원회는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 및 사업팀별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및 사업팀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2조 (소요경비)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맹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기타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산학협력 활동

제14조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 체결을 위한 해당 학교 방문.
2. 현장실습 및 취업의뢰를 위한 관련 업체 방문.
3. 재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취업의식의 고취를 위한 관련 인사 초청 특강.
4. 산학협력 위원의 특강 및 정기 직업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 및 명예사범 임명.
5. 애견미용사, 훈련사, 핸들러 시험의 필기 및 실기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위촉.
6. 기타 산학협동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5조 (산학협력과 관련된 혜택)

1. 연맹 및 대학에 대한 특혜.
 - 1) 상호간 운영편의 제공 및 기술 · 교육 정보 교류.
 - 2) 소장도서 및 자료의 이용.
 - 3) 산학협동 교수제를 통한 인적교류.
 - 4) 학생 현장실습 지원 및 세미나 개최.
 - 5) 실무위주의 전공 교육과정 개발.
2. 교수에 대한 특혜
 - 1) 본 연맹이 정한 일정교육에 대해 이수한 교수는 한국애견연맹 명예 사범 자격증서 발급 (도그쇼 규정 교육, 심사규정 교육, 창업에 대한 교육, 기타교육)
 - 2) 명예 사범자격 교육이수기간은 2개월이며 1회에 4시간씩 월 2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별도의 요금 책정에 의하며 명예사범자격인증서 발급, 비용은 200,000원으로 한다.

3. 학생에 대한 특혜

- 1) 재학생 임상실습(실비 본인 부담)
- 2) 졸업생 실무적응 연수(실비 본인 부담)
- 3) 졸업생 인턴사원제 및 취업알선 기회 제공.
- 4) 직업직무교육(졸업생 재교육) 및 교직원 세미나 개최.
- 5) 연맹 회원 가입시 입회비 면제.
- 6) 3회 이상 연맹 행사 자원봉사자에 한해 스튜어드 무료 등록(희망자)
- 7) 대학 6개월 수료 후 일정학점 취득자중 학과장 추천에 의해 3급 응시자격 부여.
- 8) 애완동물관련대학 1년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2급 응시 자격 부여.
- 9) 애완동물관련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1급 응시 자격 부여.

제16조 (산학협력신청서 제출) 산학협력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행위발생 1주일 전에 연맹 사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비지원) 산학협력 활동을 위하여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장 교육장소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제18조 (용어의 정의) 교육장소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이란 연맹 혹은 산학협력을 체결한 대학이 보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교육장소 및 교육 기자재에 관한 일체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사용 및 비용) 연맹 혹은 대학에서는 상호 간에 협력하여, 교육장소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에 적극 협력하며, 교육 장소 및 기자재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용료는 임차인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신청) 장소나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사용 개시일 1주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15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보조비 지원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에 근거 보조비 지원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적 용) 정관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 연맹 예하 각종 기구에 대한 보조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 (보조비 지원)

1.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요금은 본 연맹에 납부하되, 다음 제5조에 규정된 각 종 요금 일부를 협회, 지부, 지회, 건중연합회, 클럽, 협력기관 등에 보조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본 연맹 산하 조직에 대한 보조비 지원은 장 또는 총무에 한하여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보조비는 보조비 금액 공제 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4조 (보조비의 사용) 산하조직은 보조비를 산하조직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비 지급 기준표)

별첨 1, 2 참조

제6조 종견인정검사, 훈련자격시험으로 심사위원이 공적으로 파견될 때에는 출장 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비 지급의 중단) 산하 조직이 연맹의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 항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산하 조직이 최초 가입시 제출한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요금을 미납하였을 때.
3. 보조비 신청 시점에 유효회원 20명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4. 산하조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비의 연간 결산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5. 보조비 신청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보조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제8조 (감 사) 본 연맹으로부터 보조비를 지원받은 연맹 예하 조직에서는 연초에 결산 내용을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맹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5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보조비 지급 기준표)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보조비 지급 기준표)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보조비 지급 기준표)

일부개정 2015년 12월 16일(제3조 1항, 제3조 2항, 제4조, 제5조, 제7조)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별첨1] 보조비 지급 기준표

보조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정규요금	보조비 지급액
		지부/지회/건종연합회/클럽
입 회 비	30,000	15,000
연 회 비	1년 30,000	15,000
	2년 50,000	20,000
	3년 60,000	25,000
평 생 회 비	1,000,000	100,000
일태자건 등록료	20,000	7,000
단독건(내산) 등록료	20,000	5,000
단독건(외산) 등록료	40,000	15,000
국제견사호 등록료	60,000	15,000
혈통서 재발행료	20,000	5,000
수출입 혈통서 발행료	30,000	5,000
챔피언 등록료	70,000	보조비 지급 안함
소유자 변경 등록료	20,000	5,000

[별첨 2] 진도건 협회 보조비 지급 기준

진도건 협회 보조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정규요금	보조비 지급액
입 회 비	30,000	20,000
연 회 비	30,000	25,000
평 생 회 비	400,000	100,000
단독건(내산) 등록료	20,000	12,000
단독건(외산) 등록료	40,000	25,000
수출입 혈통서 발행료	30,000	20,000
일태자건 등록료	18,000	14,000
혈통서 재발행 수수료	20,000	14,000
소유자 변경 등록료	20,000	10,000
국제견사호 등록료	60,000	30,000
챔피언 등록료	70,000	35,000

* 기타 각종 검사료 지원 혜택

각종 검사료(종건 검사, CD, IGP 등)에 대해서는 항목별 요금규정에 따라 협회에서 연맹 규정 요금에 의거 요금을 수납한 후, 연맹에 검사료 1건당 수수료(5,000원)만 납입한 후, 연맹에서 발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협회에 검사료 수입을 지원함(단, 마이크로칩 인증은 검사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관 및 제 규정 (2020년도)

발행일 2020년 2월 20일

발행인	박 상 우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주 소	(우02587)〒130-070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9길 21 영한빌딩 5층
홈페이지	www.thekkf.or.kr
전 화	02-2278-0661~2
팩 스	02-2277-4073